

# 2020 보령시 여성통계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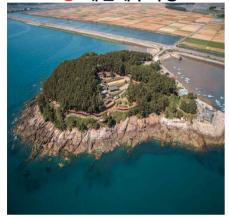
2020. 12.



## 보령 9景 플러스



1경 대천해수욕장



**2경** 죽도(상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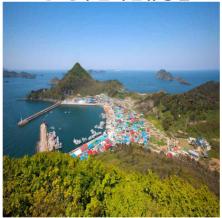
3경 성주산자연휴양림



4경 개화예술공원



5경 무창포해수욕장



6경 외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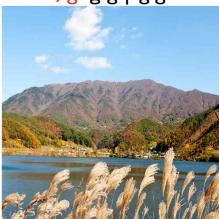
7경 충청수영성



8경 냉풍욕장



9경 보령호



9경 플러스 오서산





「건강한 도시 행복한 보령」을 만들기 위해 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대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은 점차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13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이후,

여성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 개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여성의 힘이 국가와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우리 시 여성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여성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올해 처음으로 **『보령시 여성통계』**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4월 기준, 우리 시 인구 10만 646명 중 여성은 4만 9,175명으로 인구의 절반(49.4%)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번 통계집 발간으로 보다 나은 정책과 사업을 발굴하여 여성이 행복한 보령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 시대, 사회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이 결혼과 출산, 육아와 동시에 자신의 일과 삶을 가꿔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여성만을 위한 도시가 아니라,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고루 참여하며, 양성이 함께 조화를 이루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번 통계집이 우리 지역 여성의 건강, 일자리, 복지, 출산 등 각 분야의 정책 수립에 좋은 자양분이 되어, 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여성정책 수립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유용한 자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정에 관심 가져 주시는 시민 여러분과 『보령시 여성통계』가 발간되기까지 자료제공과 작성에 협조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2020년 12월 보령시장 김 동 일

# 이용자를 위하여

- 1. 「보령시 여성통계」는 보령시 각 실·과, 소속기관, 통계청을 포함한 정부 각 부처 및 국내 주요기관에서 보유한 행정자료를 연계하여 작성한 것으로 각 통계표마다 자료 출처를 표기하였음
- 2. 지표 중 지역생활 만족도 부문은 「2019 충남 사회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작성하였음
- 3. 각 통계표는 지표의 성격 및 행정자료 입수 사정에 따라 시점(기간) 등에 차이가 있음
- 4. 통계표에 수록된 각 자료(숫자)는 반올림되었으므로, 하위 항목의 합이 그 총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5. 통계표에 사용된 부호의 뜻은 다음과 같음 「-」: "0"이나 해당숫자 없음 「0.0」: 단위 미만
- 6.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일부 지표에 한해 5 미만의 수치를 「\*」로 표기함
- 7. 이 보고서에 수록된 자료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보령시 문화 새마을과 새마을팀(☎041-930-34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목 차

I . 통계 개요 ···································
1. 통계작성 개요 2
2. 통계 작성기준 및 대상 2
3. 활용자료 및 작성항목 3
4. 통계 생산방법 3
Ⅱ. 작성 결과
1. 인구와 가족
1-1. 연도별 인구
1-2. 연령별 인구7
1-3. 읍·면·동별 인구 ······8
1-4. 1년 내 여성 전입이동 인구9
1-5. 3년 내 여성 전입이동 인구
1-6. 여성 전입사유 (1년 내 전입인구)11
1-7. 여성 순이동
1-8. 가구주 현황
1-9. 혼인 건수
1-10. 평균 초혼 연령15
1-11. 혼인 형태별 혼인 건수
1-12. 연령별 출산율17
1-13. 이혼 건수
1-14. 동거기간별 이혼 건수

2. 경제 현황 및 일자리 20
2-1. 고용보험 피보험자 20
2-2. 가입기간별 여성 고용보험 피보험자 21
2-3. 산업별 고용보험 피보험자 22
2-4. 고용보험 자격 취득·상실자 ······ 23
2-5. 고용보험 자격 상실사유 24
2-6. 구직신청 현황 25
2-7. 학력별 여성 구직신청 26
2-8. 구직희망 고용형태
2-9. 여성 구직희망 직종 28
2-10. 여성 구직희망 직종 경력유무 29
2-11. 여성 구직자 희망 근무지역 30
2-12. 여성 구직자 희망 월평균 임금31
3. 주거와 복지32
3-1. 주택 소유자
3-1. 주택 소유자 32 3-2. 읍·면·동별 주택 소유자 33
3-1. 주택 소유자
3-1. 주택 소유자       32         3-2. 읍·면·동별 주택 소유자       33         3-3. 소유건수별 여성 주택 소유자       34         3-4. 주택유형별 여성 소유 주택수       35         3-5.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36         3-6. 읍·면·동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37
3-1. 주택 소유자       32         3-2. 읍·면·동별 주택 소유자       33         3-3. 소유건수별 여성 주택 소유자       34         3-4. 주택유형별 여성 소유 주택수       35         3-5.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36         3-6. 읍·면·동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37         3-7. 수급자구분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38
3-1. 주택 소유자       32         3-2. 읍·면·동별 주택 소유자       33         3-3. 소유건수별 여성 주택 소유자       34         3-4. 주택유형별 여성 소유 주택수       35         3-5.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36         3-6. 읍·면·동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37         3-7. 수급자구분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38         3-8. 장애인등록 인구       39
3-1. 주택 소유자       32         3-2. 읍·면·동별 주택 소유자       33         3-3. 소유건수별 여성 주택 소유자       34         3-4. 주택유형별 여성 소유 주택수       35         3-5.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36         3-6. 읍·면·동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37         3-7. 수급자구분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38         3-8. 장애인등록 인구       39         3-9. 읍·면·동별 장애인등록 인구       40
3-1. 주택 소유자       32         3-2. 읍·면·동별 주택 소유자       33         3-3. 소유건수별 여성 주택 소유자       34         3-4. 주택유형별 여성 소유 주택수       35         3-5.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36         3-6. 읍·면·동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37         3-7. 수급자구분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38         3-8. 장애인등록 인구       39         3-9. 읍·면·동별 장애인등록 인구       40         3-10. 장애유형별 여성 장애인등록 인구       41

4. 건 강 45	ı
4-1. 사망자수45	1
4-2. 주요 사망원인별 사망자수 46	
4-3. 건강보험 적용인구47	
4-4. 건강보험 요양급여실적 48	i
4-5. 주요 만성질환 진료인원49	,
4-6. 주요 만성질환 1인당 진료비 50	ĺ
4-7. 주요 암 진료인원51	
4-8. 주요 암 1인당 진료비 52	
5. 지역생활 만족도 53	
5-1. 의료시설 및 서비스 만족도53	i
5-2. 가족관계 만족도 54	
5-3. 자녀 교육환경(공교육) 만족도55	ı
5-4. 자녀 교육환경(사교육) 만족도56	,
5-5. 직장 만족도 57	
5-6. 주거환경 만족도 58	i
5-7. 환경 체감도 59	ı
5-8.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60	ĺ
5-9. 문화 및 여가활동 만족도61	
5-10. 삶에 대한 만족감62	
5-11. 주관적 귀속계층(경제)63	1
5-12. 주관적 귀속계층(정치)64	
5-13. 여성에 대한 인권의식 65	1
5-14. 지역 정주의사 66	1
5-15. 보령해양머드박람회 활성화 67	
5-16. 연육에 따른 해양관광 활성화 68	i

5-17. 안전도 제고 방안69 5-18. 인구시책70
Ⅲ. 통계표 ···································
<ul><li>◎ 통계표 목차 ···································</li></ul>
№. 주요 용어 및 해설
◎ 주요 용어 및 해설114
V. 행정자료 서식 ······· 123
◎ 행정자료 서식 124

# 통계개요

## 「보령시 여성통계」개요

#### 1. 통계작성 개요

#### 가. 작성목적

○ 보령시 여성(20세 이상 인구)을 대상으로 인구와 가족, 경제 현황 및 일자리, 주거 와 복지, 건강 등에 대한 자료를 연계하여 성별, 연령별, 읍·면·동별 여성의 통계를 생산·분석함으로써, 여성 관련 정책수립 및 의사결정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나. 법적근거

- 통계법 제18조에 의한 국가승인통계(일반·가공통계)
- 승인번호 제693002호(2020.12.18.)

#### 다. 작성연혁

○ 2020년 11월 최초 작성

#### **라. (작성주기)** 2년

#### 2. 통계 작성기준 및 대상

가. (작성 기준시점) 2020년 4월 30일 기준

※ 단, 일부자료는 제공기관 및 지표의 성격에 따라 대상 기간(시점)의 차이가 있음

#### 나. 작성대상

○ 2020년 4월 30일 기준 보령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 20세 이상의 **여성인구** 

#### **다. (통계 작성 단위)** 여성 개인

### 3. 활용자료 및 작성항목

#### □ 행정자료

행정자료	제공기관	주요 작성항목		
<b>주민등록인구 자료</b> 보령시		성별, 연령별 여성 인구		
재산세 자료	보령시	여성 주택소유자 현황, 유형별 주택수		
<b>국민기초생활보장 자료</b> 보령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여성 수급인구		
<b>장애인등록 자료</b> 보령시		장애유형별, 정도별 여성 장애인등록 인구		
고용보험 자료 고용노동부		여성 고용보험 피보험자, 피보험 자격 취득:상실자		
구직자 자료 고용노동부		여성 구직자의 근무희망 직종, 근무희망 지역		
<b>국민연금 자료</b> 국민연금공단		여성 국민연금 가입인구		
건강보험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여성 건강보험 적용인구, 주요 질병별 진료인원		

#### □ 기타 통계자료

통계자료	제공기관	주요 작성항목	
인구동향조사	통계청	여성 혼인 건수, 이혼 건수, 출산율	
국내인구이동통계	통계청	여성 순이동	
<b>사망원인통계</b> 통계청		주요 사망원인별 여성 사망자수	
2019 충청남도 사회조사	통계청 MDIS	교육환경 만족도, 주거환경 만족도, 직장 만족도	

#### 4. 통계 생산방법

□ **행정자료 연계 및 가공** 개인별 대체식별코드(성명+생년월일+성별 등)를 생성하여 행정자료를 연계하고, 에디팅(editing) 등 자료처리 과정을 거쳐 통계분석 기초자료 (microdata)를 구축한 뒤 통계 작성

(예시)

행정자료 입수				
주민등록 자료 장애인등록 자료				
주민등록 정보 <입수>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등	재산세 정보 <입수>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등			

	통계작성용 원시자료 생성 (raw data)
•	주민등록- 장애인등록 통합 <연계>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등

	통계적 처리		
•	에디팅(Editing) (중복검사, 비매칭 자료 제거 등)	통계분석 기초자료 (Microdata) 생성	

# $\prod$

# 작성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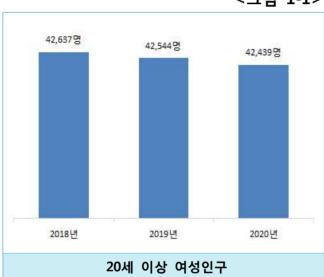
## 1. 인구와 가족

#### 1-1. 연도별 인구1)

#### 20세 이상 인구 중 여성은 42,439명으로 전체의 49.5%를 차지함

- □ (여성인구) 보령시 20세 이상 전체 인구 85,754명 중 여성인구는 42,439명임
- □ (여성 비율) 20세 이상 인구 중 여성은 49.5%를 차지하며, 최근 3년간 20세 이상 인구 중 여성인구 구성비는 큰 변화가 없음

<그림 1-1> 연도별 인구





<표 1-1> 연도별 인구

(단위: 명, %)

구분	전체 인구	20세 이상 인구 (A)	20세 이상 여성인구 (B)	여성 비율 (B/A×100)
2020년	100,646	85,754	42,439	49.5
2019년	101,114	85,909	42,544	49.5
2018년	101,990	85,997	42,637	49.6

Ⅰ. 별도 표기가 없는 경우 2020년 4월 30일 기준 자료임

<sup>1)</sup>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거주자, 거주불명자, 재외국인을 포함한 수치(외국인 제외)이며, 연령은 만 20세 이상을 대상으로 작성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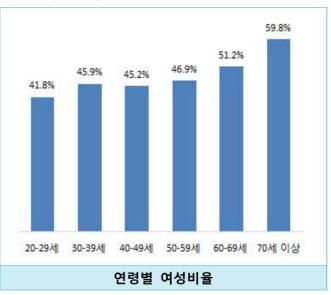
#### 1-2. 연령별 인구

# 연령별로 $\lceil 70$ 세 이상」의 여성인구가 10,913명으로 가장 많고, 비율도 59.8%로 가장 높음

- □ **(연령대별)** 20세 이상 인구 중 「70세 이상」의 여성이 10,913명으로 가장 많고, 「20-29세」의 여성이 4,041명으로 가장 적음
- □ (여성비율) 인구 중 여성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70세 이상」 59.8%이며, 여성비율이 가장 낮은 연령대는 「20-29세」 41.8%임

<그림 1-2> 연령별 여성인구





<표 1-2> 연령별 인구

(단위: 명, %)

						(E11: 87 70)
구분	전체 (A)	여성 (B)	구성비	남성	구성비	여성 비율 (B/A×100)
계	85,754	42,439	100.0	43,315	100.0	49.5
20-29세	9,660	4,041	9.5	5,619	13.0	41.8
30-39세	9,786	4,487	10.6	5,299	12.2	45.9
40-49세	14,177	6,403	15.1	7,774	18.0	45.2
50-59세	17,430	8,172	19.3	9,258	21.4	46.9
60-69세	16,461	8,423	19.9	8,038	18.6	51.2
70세 이상	18,240	10,913	25.7	7,327	16.9	5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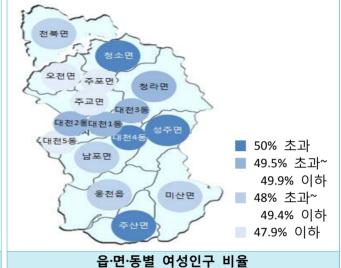
#### 1-3. 읍·면·동별 인구

여성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 「대천3동」8,379명이며, 여성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청소면」50.6%임

- □ (읍·면·동별) 여성인구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대천3동」8,379명이며, 「주포면」이 780명으로 가장 적음
- □ (여성비율) 여성인구 비율은 「청소면」이 50.6%로 가장 높고, 「오천면」이 46.8%로 가장 낮음

<그림 1-3> 읍·면·동별 여성인구





<표 1-3> 읍·면·동별 여성인구

(단위: 명, %)

						(단취, 명, 70)
구분	전체 (A)	여성 (B)	구성비	남성	구성비	여성 비율 (B/A×100)
계	100,646	49,715	100	50,931	100	49.4
웅천읍	6,382	3,136	6.3	3,246	6.4	49.1
주포면	1,633	780	1.6	853	1.7	47.8
주교면	5,381	2,569	5.2	2,812	5.5	47.7
오천면	5,011	2,347	4.7	2,664	5.2	46.8
천북면	3,632	1,757	3.5	1,875	3.7	48.4
청소면	2,672	1,352	2.7	1,320	2.6	50.6
청라면	3,966	1,966	4.0	2,000	3.9	49.6
남포면	5,177	2,563	5.2	2,614	5.1	49.5
주산면	2,483	1,271	2.6	1,212	2.4	51.2
미산면	1,787	865	1.7	922	1.8	48.4
성주면	2,314	1,161	2.3	1,153	2.3	50.2
대천1 <del>동</del>	14,763	7,329	14.7	7,434	14.6	49.6
대천2 <del>동</del>	7,026	3,503	7.0	3,523	6.9	49.9
대천3동	16,797	8,379	16.9	8,418	16.5	49.9
대천4동	15,029	7,579	15.2	7,450	14.6	50.4
대천5동	6,593	3,158	6.4	3,435	6.7	47.9

#### 1-4. 1년 내 여성 전입이동1) 인구

# 최근 1년 내 보령시로 전입한 여성은 5,720명이며, 그 중 「20-29세」이동률이 26.2%(1,058명)로 가장 높음

- □ (전입인구) 최근 1년 내 보령시로 전입한 여성인구 5,720명 중에서 「보령시 내」에서 전입은 3,760명으로 「보령시 외」에서의 전입 1,960명보다 많음
- □ (연령별) 1년 내 전입여성의 연령별 전입 비율은 「20-29세」가 26.2%로 가장 높고, 전입인구 수는 「30-39세」가 1,166명으로 가장 많음

<그림 1-4> 1년 내 전입이동 인구





<표 1-4> 1년 내 전입이동 인구

(단위: 명, %)

						(ピカ・6, 79)	
7	년분	1년 내 전입 여성인구			20세 이상 여성인구	전입인구 비율	
•	_	(A)	보령시 내 <sup>2)</sup>	보령시 외	(B)	(A/B×100)	
	계	5,720	3,760	1,960	42,439	13.5	
	구성비	100.0	65.7	34.3	42,439	15.5	
20-	29세	1,058	550	508	4,041	26.2	
	구성비	100.0	52.0	48.0	4,041		
30-	39세	1,166	788	378	1 107	26.0	
	구성비	100.0	67.6	32.4	4,487		
40-	49세	1,119	814	305	6,403	17.5	
	구성비	100.0	72.7	27.3	0,403		
50-	59세	1,038	715	323	0.170	12.7	
	구성비	100.0	68.9	31.1	8,172	12.7	
60-	69세	740	500	240	9.422	8.8	
	구성비	100.0	67.6	32.4	8,423	8.8	
70세	이상	599	393	206	10,913		
	구성비	100.0	65.6	34.4	10,913	5.5	

<sup>1)</sup> 전입시기: 2019.5.1. ~ 2020.4.30.

<sup>2)</sup> 보령시 내에서의 전입은 이동전후 행정 읍면동이 다른 전입을 의미하고, 보령시 외에서의 전입은 이동전후 시군구 또는 시도가 다른 전입을 의미함

#### 1-5. 3년 내 여성 전입이동1) 인구

#### 최근 3년 내 보령시로 전입한 여성은 12,661명이며, 그 중「30-39세」이동률이 20.1%(2,548명)로 가장 높음

- □ (전입인구 구성비) 최근 3년 내 전입 여성인구 중 「30-39세」의 비율이 20.1%로 가장 뉴고, 「70세 이상」의 비율이 11.3%로 가장 낮음
- □ (연령별) 「30-39세」의 전입 여성인구가 2,548명으로 가장 많고, 전입인구 비율도 56.8%로 가장 높음

<그림 1-5> 3년 내 전입이동 인구





연령별 여성인구 대비 3년 내 전입인구 및 비율

<표 1-5> 3년 내 전입이동 인구

(단위: 명, %)

						(단귀: 8, 70)
구	·분	3년 내 전입 여성인구 (A)			20세 이상 여성인구 (B)	전입인구 비율 (A/B×100)
		(A)	보령시 내	보령시 외	(B)	(A) D × 100)
7	4	12,661	8,439	4,222	42,439	29.8
	구성비	100.0	66.7	33.3	42,439	25.0
20-2	29세	2,014	1,083	931	4.041	49.8
	구성비	100.0	53.8	46.2	4,041	49.0
30-3	39세	2,548	1,720	828	4,487	56.8
	구성비	100.0	67.5	32.5	5 4,487	
40-4	49세	2,508	1,882	626	6,403	39.2
	구성비	100.0	75.0	25.0	0,403	
50-	59세	2,440	1,702	738	8,172	29.9
	구성비	100.0	69.8	30.2	0,172	29.9
60-0	69세	1,724	1,121	603	0 422	20.5
[	 구성비	100.0	65.0	35.0	8,423	20.5
70세	이상	1,427	931	496	10.012	12.1
	 구성비	100.0	65.2	34.8	10,913	1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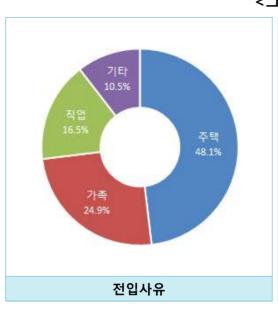
<sup>1)</sup> 전입시기: 2017.5.1. ~ 2020.4.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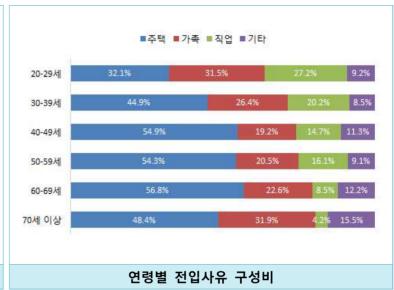
#### 1-6. 여성 전입사유 (1년 내 전입인구)

#### 보령시 여성의 1년 내 주된 전입사유는 「주택」이 2,752명으로 가장 많음

- □ (전입사유) 최근 1년간 여성의 주된 전입사유는 「주택」이 48.1%로 가장 높고, 「직업」이 16.5%로 가장 낮음
- □ (연령별) 여성 전 연령대에서 전입사유 중 「주택」이 가장 높고 「직업」이 가장 낮음

<그림 1-6> 전입사유





<표 1-6> 전입사유

(단위: 명, %)

					(E11: 87 70)
구분	1년 내 전입 여성인구	주택	가족	직업	기타 <sup>1)</sup>
계	5,720	2,752	1,427	942	599
구성비	100.0	48.1	24.9	16.5	10.5
20-29세	1,058	340	333	288	97
구성비	100.0	32.1	31.5	27.2	9.2
30-39세	1,166	524	308	235	99
구성비	100.0	44.9	26.4	20.2	8.5
40-49세	1,119	614	215	164	126
구성비	100.0	54.9	19.2	14.7	11.3
50-59세	1,038	564	213	167	94
구성비	100.0	54.3	20.5	16.1	9.1
60-69세	740	420	167	63	90
구성비	100.0	56.8	22.6	8.5	12.2
70세 이상	599	290	191	25	93
구성비	100.0	48.4	31.9	4.2	15.5

<sup>1)</sup> 기타는 교육, 교통, 건강, 귀농, 그 밖의 사유 등이 포함됨

#### 1-7. 여성 순이동

#### 2019년 보령시 여성 순이동자수는 '18년 -260명에서 -152명으로 감소

- □ **(순이동자수)** 여성의 순이동자수는 '18년 -260명에서 '19년 -152명으로 감소
- □ (연령별) 연령별 순이동자는 「50-59세」에서 56명으로 가장 많이 순유입 되었고, 「20-29세」에서 -239명으로 가장 많이 순유출 되었음

<그림 1-7> 여성 순이동





<표 1-7> 여성 순이동

(단위: 명, %)

		순이동자수 <sup>1)</sup>		순이동률 <sup>2)</sup>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17년	2018년	2019년	
계	-132	-260	-152	-0.3	-0.5	-0.3	
20-29세	-215	-234	-239	-9.4	-10.9	-11.2	
30-39세	36	-16	-33	1.5	-0.7	-1.3	
40-49세	-10	-56	40	-0.3	-1.7	1.1	
50-59세	85	51	56	1.9	1.2	1.4	
60-69세	25	6	53	0.7	0.1	1.2	
70세 이상	-53	-11	-29	-1.5	-0.2	-0.6	

자료: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sup>1)</sup> 순이동자수(명) = 전입자 수-전출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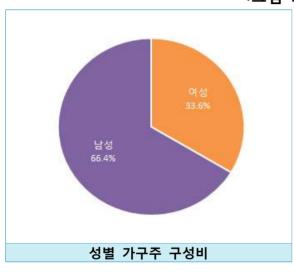
<sup>2)</sup> 순이동률(%) = 순이동자수/주민등록 연앙인구×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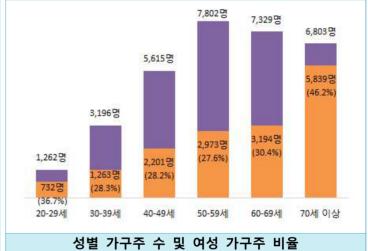
#### 1-8. 가구주 현황

전체 가구주 48,209명 중 여성 가구주는 16,202명이며, 「70세 이상」에서 여성 가구주 비율이 46.2%로 가장 높음

- □ (가구주) 전체 가구주 48,209명 중 여성은 16,202명, 남성은 32,007명으로 남성 가구주보다 여성 가구주가 적음
- □ (연령별) 「70세 이상」에서 여성 가구주 비율이 46.2%로 가장 높고, 「50-59세」에서 27.6%로 가장 낮음

<그림 1-8> 가구주 현황





<표 1-8> 가구주 현황

(단위: 명, %)

구분	전체 (A)	여성 (B)		남성		여성 비율 (B/A×100)
	(~)	(6)	구성비		구성비	(D/A^100)
계	48,209	16,202	100.0	32,007	100.0	33.6
20-29세	1,994	732	   4.5	1,262	3.9	36.7
30-39세	4,459	1,263	7.8	3,196	10.0	28.3
40-49세	7,816	2,201	13.6	5,615	17.5	28.2
50-59세	10,775	2,973	18.3	7,802	24.4	27.6
60-69세	10,523	3,194	19.7	7,329	22.9	30.4
70세 이상	12,642	5,839	36.0	6,803	21.3	46.2

#### 1-9. 혼인 건수1)

#### 여성의 혼인 건수는 337건이며 혼인율2)은 7.3건임

- □ (혼인 건수) 여성의 혼인 건수는 337건이며, 연령대별로는 「20-29세」 여성의 혼인 건수가 95건으로 가장 많음
- □ (혼인율) 여성의 혼인율은 7.3건이며, 연령대별로는 「20-29세」 여성의 혼인율이 51.6건으로 가장 높음

<그림 1-9> 연령별 여성 혼인 건수 및 혼인율



<표 1-9> 혼인 건수

(단위: 건. %. 천명당 건)

					(11)	1, 70, 1.00 1.7
구분	여성	구성비	여성 혼인율	남성	구성비	남성 혼인율
계	337	100.0	7.3	408	100.0	8.4
20-24세	29	8.6	12.5	12	2.9	3.9
25-29세	95	28.2	51.6	71	17.4	26.9
30-34세	93	27.6	46.9	121	29.7	51.2
35-39세	42	12.5	15.5	72	17.6	22.4
40-44세	26	7.7	9.0	42	10.3	12.1
45-49세	14	4.2	4.0	30	7.4	7.0
50-54세	18	5.3	4.8	20	4.9	4.6
55-59세	9	2.7	2.0	19	4.7	3.9
60세 이상	11	3.3	0.4	21	5.1	1.2

<sup>1)</sup> 성별 혼인 건수는 남녀 각각의 주소지 기준

<sup>2)</sup> 혼인율(건) = 혼인건수/주민등록 연앙인구×1,000

#### 1-10. 평균 초혼 연령

2019년 평균 초혼 연령은 여성 30.2세이고 남성 33.6세이며, 남녀 모두 평균 초혼 연령이 높아지고 있음

- □ (초혼 연령) 2019년 평균 초혼 연령은 여성 30.2세이고 남성 33.6세로 여성의 초혼 연령이 낮게 나타났으며, 남녀간 차이는 3.4세임
- □ **(연도별)** 여성의 평균 초혼 연령은 28.0세('09년), 29.1세('14년), 30.2세('19년)로 점차 높아지고 있음



<그림 1-10> 평균 초혼 연령

<표 1-10> 평균 초혼 연령

(단위: 세,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여성	28.0	27.9	28.5	28.5	28.8	29.1	29.6	29.6	29.7	29.3	30.2
남성	31.7	32.0	32.4	32.2	32.0	32.6	32.7	33.2	32.8	33.3	3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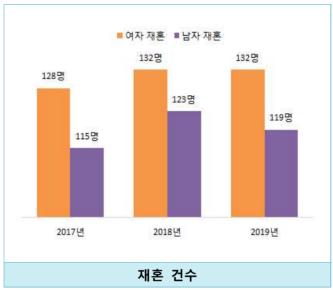
#### 1-11. 혼인 형태별 혼인 건수1)

'19년 기준 초혼건수는 여성이 276건으로 남성 289건보다 적으나, 재혼건수는 여성이 132건으로 남성 119건보다 많음

- □ (초혼) 여성의 경우 전체 혼인 중 초혼이 276건으로 남성 289건보다 적음
- □ (재혼) 여성의 경우 전체 혼인 중 재혼이 132건으로 남성 119건보다 많음

<그림 1-11> 혼인 형태별 혼인 건수





<표 1-6> 혼인 형태별 혼인 건수

(단위: 건, %)

구분		2017년	 구성비	2018년	구성비	2019년	구성비
계		443	100.0	430	100.0	408	100.0
여성	초혼	315	71.1	298	69.3	276	67.6
	재혼	128	28.9	132	30.7	132	1     32.4
남성	초혼	328	74.0	307	71.4	289	70.8
	재혼	115	26.0	123	28.6	119	29.2

<sup>1)</sup> 아내의 주소지 기준, 미상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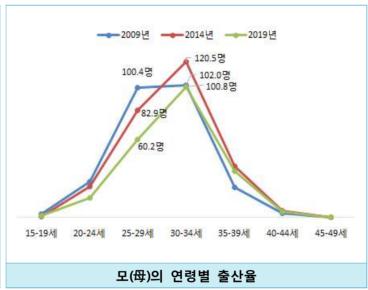
#### 1-12. 연령별 출산율1)

### 2019년 합계 출산율은 1.1명이며 모(母)의 연령별 출산율은 「30-34세」가 100.8명으로 가장 높음

- □ (**합계 출산율**) 합계 출산율은 '19년 1.1명으로 '09년(1.3명), '14년(1.4명)에 비해 낮아짐
- □ **(연령별)** '09년(102.0명), '14년(120.5명), '19년(100.8명) 모두「30-34세」에서 연령별 출산율이 가장 높음

<그림 1-12> 연령별 출산율





<표 1-12> 연령별 출산율

(단위: 명)

								(211, 0)
구분	합계 출산율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2009년	1.3	2.7	27.6	100.4	102.0	23.7	3.1	0.2
2010년	1.4	2.7	23.5	113.9	108.1	26.9	2.5	0.0
2011년	1.5	3.3	32.2	103.0	112.9	35.2	3.9	0.3
2012년	1.4	2.0	27.6	91.2	115.2	34.5	3.3	0.3
2013년	1.2	1.3	22.2	84.5	103.1	30.9	4.1	0.0
2014년	1.4	1.0	24.2	82.9	120.5	39.4	5.1	0.0
2015년	1.3	2.1	23.6	83.8	99.9	43.7	5.7	0.6
2016년	1.3	2.2	22.7	81.3	105.9	46.5	4.4	0.0
2017년	1.2	1.1	12.6	62.1	98.7	51.9	5.2	0.0
2018년	1.0	0.0	10.1	56.4	91.2	39.0	7.8	0.0
2019년	1.1	1.7	15.1	60.2	100.8	35.8	4.8	0.0

<sup>1)</sup> 연령별 출산율(명) = 산모의 해당 연령집단별 출생아수/해당 연령집단의 여성인구×1,000

#### 1-13. 이혼 건수1)

#### 여성의 이혼 건수는 167건이고 이혼율2)은 3.6건임

- □ (이혼 건수) 20세 이상 여성의 이혼 건수 167건 중「35-39세」의 이혼 건수가 29건으로 가장 많음
- □ (연령별) 이혼 여성 중「35-39세」의 이혼율이 9.0건으로 가장 높고 이혼 건수도 29명으로 가장 많음

<그림 1-13> 여성의 이혼 건수 및 이혼율



<표 1-13> 이혼 건수

(단위: 건, %, 천명당 건)

구분	여성	구성비	여성 이혼율	남성	구성비	남성 이혼율
계	167	100.0	3.6	220	100.0	4.5
20-24세	*	   *	0.3	*	   *	0.9
25-29세	*	   * 	4.2	*	   * 	2.7
30-34세	12	7.2	5.1	12	5.5	6.0
35-39세	29	17.4	9.0	24	10.9	8.9
40-44세	24	14.4	6.9	33	15.0	11.4
45-49세	27	16.2	6.3	36	16.4	10.2
50-54세	27	16.2	6.2	36	16.4	9.7
55-59세	16	9.6	3.3	38	17.3	8.3
60세 이상	20	12.0	1.1	34	   15.5	1.4

<sup>1)</sup> 성별 이혼 건수는 남녀 각각의 주소지 기준

<sup>2)</sup> 이혼율(건) = 이혼 건수/주민등록 연앙인구×1,000

#### 1-14. 동거기간별 이혼 건수

동거기간별 여성의 이혼 건수는 「20년 이상」이 34.7%로 가장 높고, 여성의 평균 혼인지속기간은 16.2년임

- □ (동거기간 비율) 이혼 부부의 동거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여성의 이혼율 34.7%, 남성은 32.3%로 이혼율이 가장 높음
- □ (연령별) 이혼 부부의 평균 혼인지속기간은 여성의 경우 16.2년이고, 남성의 경우 15.6년임

<그림 1-14> 동거기간별 이혼 건수





<표 1-14> 동거기간별 이혼 건수

(단위: 건, %)

				(27, 2, 70)
구분	여성		남성	
1 4	918	구성비	0	구성비
계	167	100.0	220	100.0   100.0
4년 이하	21	12.6	40	18.2
5~9년	39	23.4	47	i   21.4 
10~14년	27	16.2	31	14.1
15~19년	22	13.2	31	   14.1 
20년 이상	58	34.7	71	 
평균혼인지속기간	16.	2년	15.	6년

## 2. 경제 현황 및 일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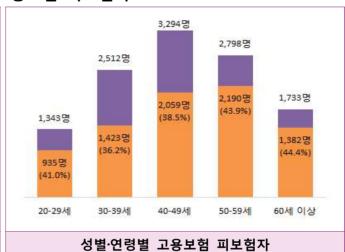
### 2-1. 고용보험 피보험자11

#### 고용보험 피보험자 중 여성은 7,989명으로 그 중 「50-59세」가 2,190명으로 가장 많음

- □ (**피보험자**) 고용보험 피보험자 19,669명 중 여성이 7,989명, 남성이 11,680명임
- □ (연령별) 여성 고용보험 연령별 피보험자 수는 「50-59세」가 2,190명으로 가장 많고, 「20-29세」가 935명으로 가장 적음

<그림 2-1> 고용보험 피보험자





<표 2-1> 고용보험 피보험자

(단위: 명, %)

구분	피보험자 (A)	여성 (B)	 구성비	남성	 구성비	여성비율 (B/A×100)
계	19,669	7,989	100.0	11,680	100.0	40.6
20-29세	2,278	935	   11.7	1,343	11.5	41.0
30-39세	3,935	1,423	17.8	2,512	21.5	36.2
40-49세	5,353	2,059	25.8	3,294	28.2	38.5
50-59세	4,988	2,190	27.4	2,798	24.0	43.9
60세 이상	3,115	1,382	17.3	1,733	14.8	44.4

Ⅱ. 별도 표기가 없는 경우, 2017년 12월 31일 기준 자료임

<sup>1)</sup> 고용보험자료는 중복자 제외된 자료이며 피보험자 대상에는 외국인도 포함되어 있고, 지역분류는 사업장(최종근무지) 주소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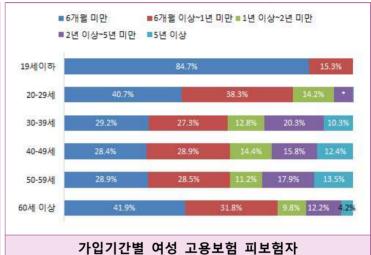
#### 2-2. 가입기간별 여성 고용보험 피보험자

#### 여성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6개월 미만」이 32.8%로 가장 높음

- □ (가입기간별) 여성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6개월 미만」이 32.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6개월 이상~1년 미만」30.0%순임
- □ (연령별) 가입기간「5년 이상」에서는「50-59세」가 가장 높음

#### <그림 2-2> 가입기간별 여성 고용보험 피보험자





<표 2-2> 가입기간별 여성 고용보험 피보험자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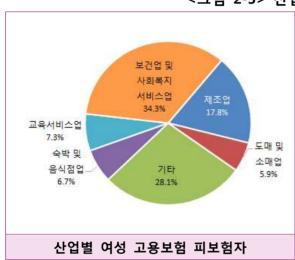
							(단위: 명, %)
ā	구분	여성 피보험자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계	8,048	2,643	2,416	993	1,238	758
	구성비	100.0	32.8	30.0	12.3	15.4	9.4
19 <i>k</i>	네이하	59	50	9	-	-	-
	구성비	100.0	84.7	15.3			-
20-	-29세	935	381	358	133	*	*
	구성비	100.0	40.7	38.3	14.2	*	*
30-	-39세	1,423	415	389	182	290	147
	구성비	100.0	29.2	27.3	12.8	20.3	10.3
40-	-49세	2,059	585	595	297	326	256
	구성비	100.0	28.4	28.9	14.4	15.8	12.4
50-	-59세	2,190	633	625	245	392	295
	구성비	100.0	28.9	28.5	11.2	17.9	13.5
60서	l 이상	1,382	579	440	136	169	58
	구성비	100.0	41.9	31.8	9.8	12.2	4.2

#### 2-3. 산업별1) 고용보험 피보험자

#### 여성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가장 많은 산업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으로, 34.3%임

- □ (산업별) 산업별 여성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34.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제조업」 17.8%순임
- □ (성별 피보험자수) 산업별 여성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남성보다 많음

<그림 2-3> 산업별 여성 고용보험 피보험자





<표 2-3-1> 산업별 여성 고용보험 피보험자

(단위: 명, %)

구분	여성 피보험자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기타
계	8,048	1,433	472	537	587	2,760	2,259
구성비	100.0	17.8	5.9	6.7	7.3	34.3	28.0

<표 2-3-2> 성별·산업별 여성 고용보험 피보험자

(단위 : 명, %)

구분	피보	험자	제3	조업	도마 소미	l 및 #업	숙 <sup>브</sup> 음식	† 및 점업	교육서	비스업	보건' 사회 서비		기	<b>=</b> ├ <sup>2)</sup>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계	19,798	100.0	4,433	100.0	1,141	100.0	833	100.0	803	100.0	3,196	100.0	9,392	100.0
여성	8,048	40.7	1,433	32.3	472	41.4	537	64.5	587	73.1	2,760	86.4	2,259	24.1
남성	11,750	59.3	3,000	67.7	669	58.6	296	35.5	216	26.9	436	13.6	7,133	75.9

<sup>1)</sup> 산업분류는 최종근무지 기준이며 20세 미만 피보험자는 포함, 결측치는 제외하였음

<sup>2)</sup> 기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을 제외한 나머지 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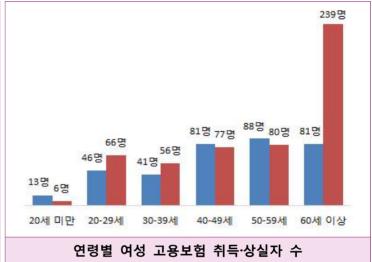
#### 2-4. 고용보험 자격 취득 · 상실자1)

#### 여성 고용보험 자격 취득자 수는 350명, 상실자 수는 524명임

- □ (취득자 수) 여성 피보험자 8,048명 중 여성 고용보험 자격 취득자 수는 350명임
- □ (연령별) 여성 고용보험 자격 취득자 중「50-59세」가 88명으로 가장 많고, 고용 보험 자격 상실자 수는「60세 이상」이 239명으로 가장 많음

<그림 2-4> 고용보험 자격 취득·상실자





<표 2-4> 고용보험 자격 취득·상실자

(단위: 명, %)

	(단위:							
구분	피보	피보험자		<b>특</b> 자	상실자			
계		19,798		753	1,006			
남성		11,750		403		482		
여성	8,048	100.0	350		524	100.0		
20세 미만	59	0.7	13	3.7	6	1.1		
20-29세	935	11.6	46	13.1	66	12.6		
30-39세	1,423	17.7	41	11.7	56	10.7		
40-49세	2,059	25.6	81	23.1	77	14.7		
50-59세	2,190	l 1 27.2	88	l l 25.1	80	l l 15.3		
60세 이상	1,382	17.2	81	23.1	239	l 45.6		

<sup>1)</sup> 고용보험 취득자수와 상실자수는 2019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1년간)을 대상으로 함

#### 2-5. 고용보험 자격 상실사유

#### 여성의 자격 상실 사유 중 「계약만료」가 233명으로 가장 많음

- □ (**상실 사유**) 여성 고용보험 자격 상실 사유 중 「계약만료」가 233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개인사정」이 165명순임
- □ (성별) 고용보험 자격 상실자는 여성이 524명으로 남성 482명보다 많음

<그림 2-5> 고용보험 자격 상실사유



<표 2-5> 고용보험 자격 상실사유

(단위: 명, %)

				(린用, 경, 70)
구분	여성	구성비	남성	구성비
계 _	524	100.0	482	100.0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165	31.5	199	41.3
계약만료, 공사종료	233	44.5	198	41.1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	35	6.7	44	9.1
폐업, 도산	40	7.6	*	   * 
기타	51	9.7	*	   * 

#### 2-6. 구직신청 현황1)

#### '19년 여성의 구직신청은 3,416건이며, 「40-49세」의 신청 건수가 839건으로 가장 많음

- □ (성별) '17년 이후 여성의 구직신청은 계속 감소하며, '19년 여성의 구직신청은 3,416건으로 남성 2,837건보다 많음
- □ (연령별) 「40-49세」의 구직신청 건수가 839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30-39세」가 772건순임

<그림 2-6> 구직신청 현황





<표 2-6> 구직신청 현황

(단위: 건)

구분	201	7년	201	8년	2019년			
계		7,855		6,421	6,253			
남성		3,362		2,666		2,837		
여성	4,493		3,755	100.0	3,416	100.0		
20-29세	826	18.4	737	19.6	698	20.4		
30-39세	864	19.2	806	21.5	772	22.6		
40-49세	975	21.7	935	24.9	839	24.6		
50-59세	664	14.8	658	17.5	646	18.9		
60세 이상	1,164	25.9	619	16.5	461	13.5		

자료: 고용노동부「구직자 신청」

<sup>1)</sup> 각 년도별 1월 1일 ~ 12월 31일(1년간) 신규 구직인원 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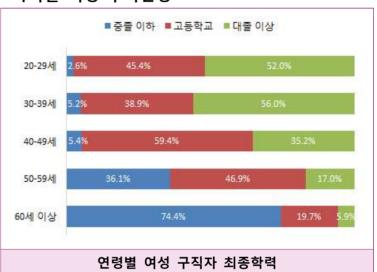
#### 2-7. 학력별1) 여성 구직신청

#### 「고등학교」가 최종학력인 여성 구직자의 비율이 44.2%로 가장 높음

- □ (학력별 구직자 비율) 여성 구직자의 최종학력은 「고등학교」가 44.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대졸 이상」 35.9%순임
- □ (연령별) 「20-39세」에서의 최종학력은 「대졸 이상」이 가장 높고, 「40-59세」에서는 「고등학교」가 가장 높음

<그림 2-7> 학력별 여성 구직신청





<표 2-7> 학력별 여성 구직신청

(단위: 건, %)

				(단위: 건, %)
구분	여성 구직신청	중졸 이하	고등학교	대졸 이상
계	3,416	679	1,509	1,228
구성비	100.0	19.9	44.2	35.9
20-29세	698	18	317	363
구성비	100.0	2.6	45.4	52.0
30-39세	772	40	300	432
구성비	100.0	5.2	38.9	56.0
40-49세	839	45	498	296
구성비	100.0	5.4	59.4	35.2
50-59세	646	233	303	110
구성비	100.0	36.1	46.9	17.0
60세 이상	461	343	91	27
구성비	100.0	74.4	19.7	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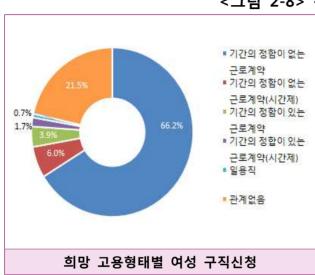
<sup>1) &#</sup>x27;중졸 이하'에는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중퇴, 검정고시, 독학사, 미입력이 포함되고, '고등학교'에는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중퇴, 검정고시가 포함되며, '대졸 이상'에는 대학교 재학, 휴학, 졸업, 졸업예정, 전문대학, 대학원수료, 졸업이 포함되어 있음

# 2-8. 구직희망 고용형태

#### 구직 희망 고용형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66.2%(2,261건)로 가장 높음

- □ (희망 고용형태) 여성 구직자의 희망 고용형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66.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관계없음」 21.5%순임
- □ (연령별) 모든 연령대에서 희망 고용형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가장 높음

<그림 2-8> 구직희망 고용형태





<표 2-8> 구직희망 고용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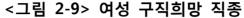
(단위: 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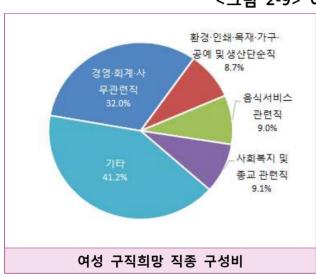
								(단위. 건, %)
	구분	여성 구직신청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시간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기간의 정합이 있는 근로계약 (시간제)	일용직	관계없음
	계	3,416	2,261	205	133	59	23	735
	구성비	100.0	66.2	6.0	3.9	1.7	0.7	21.5
2	20-29세	698	407	29	28	*	*	225
	구성비	100.0	58.3	4.2	4.0	*	*	32.2
3	80-39세	772	435	61	19	*	*	235
	구성비	100.0	56.3	7.9	2.5	*	*	30.4
4	0-49세	839	614	48	20	13	7	137
	구성비	100.0	73.2	5.7	2.4	1.5	0.8	16.3
5	60-59세	646	470	42	30	15	6	83
	구성비	100.0	72.8	6.5	4.6	2.3	0.9	12.8
60	에 이상	461	335	25	36	*	*	55
	구성비	100.0	72.7	5.4	7.8	*	*	11.9

#### 2-9. 여성 구직희망 직종

#### 구직 희망 직종은 「경영·회계·사무관련직」이 32.0%(1,092건)로 가장 높음

- □ (희망 직종) 여성 구직자의 구직희망 직종은 「경영·회계·사무관련직」이 32.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9.1%순임
- □ (연령별) 여성 구직자 「20-49세」에서의 희망 직종은 「경영·회계·사무관리직」이 가장 높음







<표 2-9> 여성 구직희망 직종

(단위: 건, %)

							(근표: 근, 70)
	구분	여성 구직신청	경영·회계·사무 관련직	환경·인쇄· 목재·가구· 공예 및 생산 단순직	음식서비스 관련직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기타 <sup>1)</sup>
	계	3,416	1,092	297	309	310	1,408
	구성비	100.0	32.0	8.7	9.0	9.1	41.2
2	0-29세	698	363	44	32	44	215
	구성비	100.0	52.0	6.3	4.6	6.3	30.8
3	0-39세	772	333	74	24	90	251
	구성비	100.0	43.1	9.6	3.1	11.7	32.5
4	0-49세	839	314	91	48	102	284
	구성비	100.0	37.4	10.8	5.7	12.2	33.8
5	0-59세	646	78	46	118	59	345
	구성비	100.0	12.1	7.1	18.3	9.1	53.4
60	세 이상	461	*	42	87	*	313
	구성비	100.0	*	9.1	18.9	*	6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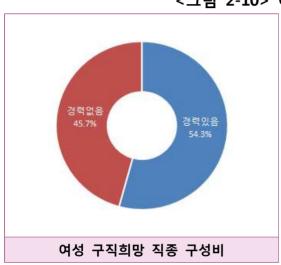
<sup>1)</sup> 기타는 보건·의료 관련직, 영업 및 판매 관련직, 단순노무직(경비 및 청소), 기계 관련직, 전기·전자 관련직 등이 해당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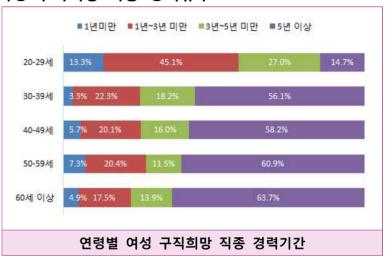
# 2-10. 여성 구직희망 직종 경력유무

여성 구직자 중 54.3%가 구직희망 직종에 대한 경력이 있으며, 경력이 있는 경우 5년 이상의 경력자가 52.0%임

- □ (경력 유무) 여성 구직 신청자 중 54.3%가 구직희망 직종에 대한 경력이 있고 45.7%는 경력이 없음
- □ (연령별)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구직자의 비율은 「60세 이상」이 63.7%로 가장 높고, 「20-29세」가 14.7%로 가장 낮음

<그림 2-10> 여성 구직희망 직종 경력유무





<표 2-10-1> 여성 구직희망 직종 경력유무

(단위: 건, %)

구분	여성 구직신청	경력있음	경력없음	
계	3,416	1,855	1,561	
구성비	100.0	54.3	45.7	

<표 2-10-2> 여성 구직희망 직종 경력기간

(단위: 건, %)

구	분	경력있음	1년미만	1년~3년 미만	3년~5년 미만	5년 이상
7	ᅨ	1,855	120	452	319	964
	구성비	100.0	6.5	24.4	17.2	52.0
20-2	29세	293	39	132	79	43
	구성비	100.0	13.3	45.1	27.0	14.7
30-	39세	488	16	109	89	274
	구성비	100.0	3.3	22.3	18.2	56.1
40-4	49세	493	28	99	79	287
	구성비	100.0	5.7	20.1	16.0	58.2
50-	59세	358	26	73	41	218
	구성비	100.0	7.3	20.4	11.5	60.9
60세	이상	223	11	39	31	142
	구성비	100.0	4.9	17.5	13.9	63.7
-1		-1-1 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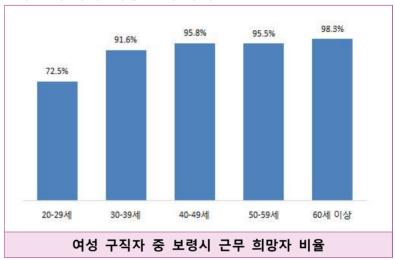
# 2-11. 여성 구직자 희망 근무지역

# 여성 구직자의 90.4%는 보령시에 근무하기를 희망하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보령시 근무를 희망함

- □ (희망 근무지역) 여성 구직자의 90.4%는 보령시에서 근무하기를 희망하며 9.6%는 보령시 외의 지역에서 근무하기를 희망함
- □ (연령별) 연령대가 높을수록 보령시에서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비율이 높음

<그림 2-11> 여성 구직자 희망 근무지역





<표 2-11> 여성 구직자 희망 근무지역

(단위: 건, %)

-			(한 기 : 신 : /0)
구분	여성 구직신청	보령시	보령시 외
계	3,416	3,087	329
구성비	100.0	90.4	9.6
20-29세	698	506	192
구성비	100.0	72.5	27.5
30-39세	772	707	65
구성비	100.0	91.6	8.4
40-49세	839	804	35
구성비	100.0	95.8	4.2
50-59세	646	617	29
구성비	100.0	95.5	4.5
60세 이상	461	453	8
구성비	100.0	98.3	1.7

# 2-12. 여성 구직자 희망 월평균 임금

# 여성 구직자의 67.9%는 월평군 「150~20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기를 희망하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희망 월평균 임금이 낮게 나타남

- □ (희망 임금) 여성 구직자의 희망 월평균 임금은 「150~200만원 미만」이 67.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200만원~250만원 미만」 20.7%순임
- □ (연령별) 연령대가 높을수록 저임금을 희망하는 여성 구직자의 비율이 높음

#### <그림 2-12> 여성 구직자 희망 월평균 임금





<표 2-12> 여성 구직자 희망 월평균 임금

(단위: 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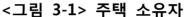
								(단위: 건, %)
	구분	여성 구직신청	100만원 미만	100만원~ 150만원 미만	150만원~ 200만원 미만	200만원~ 250만원 미만	250만원 이상	기타 (무응답)
	계	3,416	12	46	2,330	698	223	107
	구성비	100.0	0.3	1.3	67.9	20.7	6.6	3.2
2	:0-29세	698	*	*	401	179	45	63
	구성비	100.0	*	*	57.4	25.6	6.4	9.0
3	80-39세	772	6	11	483	175	72	25
	구성비	100.0	0.8	1.4	62.6	22.7	9.3	3.2
4	0-49세	839	*	*	608	152	57	10
	구성비	100.0	*	*	72.5	18.1	6.8	1.2
5	60-59세	646	*	11	446	144	38	*
	구성비	100.0	*	1.7	69.0	22.3	5.9	*
60	에 이상	461	*	6	392	48	11	*
	구성비	100.0	*	1.3	85.0	10.4	2.4	*

# 3. 주거와 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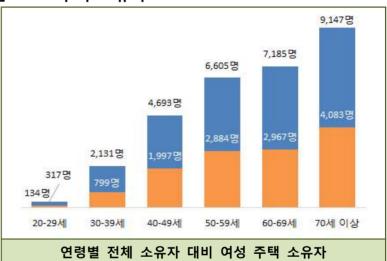
#### 3-1. 주택 소유자

#### 전체 주택 소유자 30,078명 중 여성은 12,864명임

- □ **(주택 소유자)** 주택 소유자 30,078명 중 여성은 12,864명이고, 여성 소유비율은 42.8%임
- □ **(연령별)** 여성 주택 소유자 중 「70세 이상」이 4,083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60-69세」 2,967명순임







<표 3-1> 주택 소유자

(단위: 명, %)

구분	주택 소유자 <sup>1)</sup> (A)	구성비	여성 주택 소유자 (B)	구성비	남성 주택 소유자	구성비	어녕 비율 (B/A×100)
계	30,078	100.0	12,864	100.0	17,214	100.0	42.8
20-29세	317	1.1	134	1.0	183	1.1	42.3
30-39세	2,131	7.1	799	6.2	1,332	7.7	37.5
40-49세	4,693	15.6	1,997	15.5	2,696	15.7	42.6
50-59세	6,605	22.0	2,884	22.4	3,721	21.6	43.7
60-69세	7,185	23.9	2,967	23.1	4,218	24.5	41.3
70세 이상	9,147	30.4	4,083	31.7	5,064	29.4	44.6

Ⅲ. 재산세자료는 2020년 6월 1일 기준이며, 그 외에는 별도 표기가 없는 경우 2019년 12월 31일 기준 자료임

<sup>1)</sup> 개인이 소유한 주택으로 국가, 법인, 종중 등의 단체가 소유한 주택, 창고, 기숙사, 사원아파트는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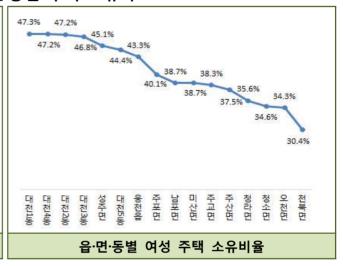
# 3-2. 읍·면·동별 주택 소유자

여성 주택 소유자는 「대천3동」이 2,152명으로 가장 많고, 주택 소유자 여성 비율은 「대천1동」이 47.3%로 가장 높음

- □ (읍·면·동별) 여성 주택 소유자는 「대천3동」이 2,152명으로 가장 많고, 「주포면」이 210명으로 가장 적음
- □ (여성 비율) 주택 소유자 여성비율은 「대천1동」이 47.3%로 가장 높고, 「천북면」이 30.4%로 가장 낮음

<그림 3-2> 읍·면·동별 주택 소유자





<표 3-2> 읍·면·동별 주택 소유자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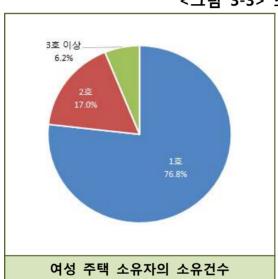
구분	주택 소유자		여성 주택 소유자		남성		여성 비율
. –	(A)	구성비	(B)	구성비	주택 소유자	구성비	(B/A×100)
계	30,078	100.0	12,864	100.0	17,214	100.0	42.8
웅천읍	2,157	7.2	933	7.3	1,224	7.1	43.3
주포면	524	1.7	210	1.6	314	1.8	40.1
주교면	1,526	5.1	584	4.5	942	5.5	38.3
오천면	1,586	5.3	544	4.2	1,042	6.1	34.3
천북면	1,121	3.7	341	2.7	780	4.5	30.4
청소면	1,003	3.3	347	2.7	656	3.8	34.6
청라면	1,417	4.7	504	3.9	913	5.3	35.6
남포면	1,852	6.2	716	5.6	1,136	6.6	38.7
주산면	973	3.2	365	2.8	608	3.5	37.5
미산면	652	2.2	252	2.0	400	2.3	38.7
성주면	740	2.5	334	2.6	406	2.4	45.1
대천1동	3,669	12.2	1,735	13.5	1,934	11.2	47.3
대천2동	1,965	6.5	927	7.2	1,038	6.0	47.2
대천3동	4,601	15.3	2,152	16.7	2,449	14.2	46.8
대천4동	4,439	14.8	2,097	16.3	2,342	13.6	47.2
대천5동	1,853	6.2	823	6.4	1,030	6.0	4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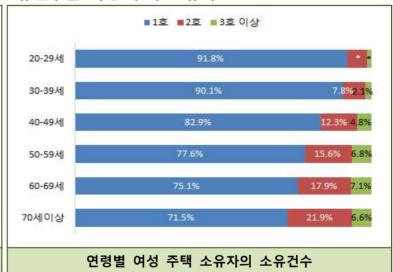
# 3-3. 소유건수1)별 여성 주택 소유자

#### 여성 주택 소유자 중 「1호 소유자」가 76.8%로 가장 높음

- □ **(소유건수별)** 여성 주택 소유자 중「1호 소유자」가 76.8%로 가장 높고,「2호 소유자」는 17.0%,「3호 이상 소유자」는 6.2%임
- □ (연령별) 여성 주택 소유자 중「1호 소유자」비율은「20-29세」에서 가장 높고, 연령대가 높을수록「2호 소유자」비율이 높음

<그림 3-3> 소유건수별 여성 주택 소유자





<표 3-3> 소유건수별 여성 주택 소유자

(단위: 명, %)

		(단취, 경, 70)		
구분	여성 주택 소유자	1호	2호	3호 이상
계	12,864	9,880	2,192	792
구성비	100.0	76.8	17.0	6.2
20-29세	134	123	*	*
구성비	100.0	91.8	*	*
30-39세	799	720	62	17
구성비	100.0	90.1	7.8	2.1
40-49세	1,997	1,655	246	96
구성비	100.0	82.9	12.3	4.8
50-59세	2,884	2,237	451	196
구성비	100.0	77.6	15.6	6.8
60-69세	2,967	2,227	530	210
구성비	100.0	75.1	17.9	7.1
70세이상	4,083	2,918	894	271
구성비	100.0	71.5	21.9	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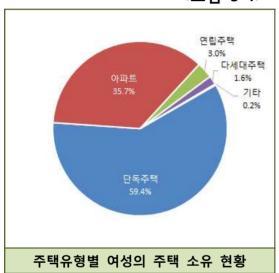
<sup>1)</sup> 각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소유 지분을 고려하지 않음. 예를 들어, 어느 개인이 단독으로 1호를 소유하고 공동으로 다른 1호를 소유한 경우 2호로 계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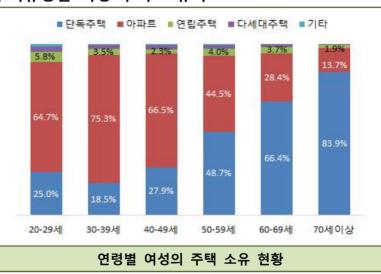
#### 3-4. 주택유형별 여성 소유 주택수

여성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유형은 「단독주택」이 59.4%로 가장 높고, 소유주택 중 「30-39세」의 아파트 소유 비율이 75.3%로 가장 높음

- □ (주택 유형) 여성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유형은 「단독주택」이 59.48%, 「아파트」 35.7%순임
- □ (연령별)「30-39세」에서는「아파트」가 75.3%로 가장 높으며, 연령이 높을수록「단독주택」 소유비율이 높음

<그림 3-4> 주택유형별 여성 주택 소유자





<표 3-4> 주택유형별 여성 주택 소유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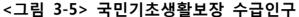
(단위: 호, %)

							(한지, 호, 70)
	구분	여성 소유 주택수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타
	계	17,408	10,346	6,223	520	287	32
	구성비	100.0	59.4	35.7	3.0	1.6	0.2
2	0-29세	156	39	101	9	*	*
	구성비	100.0	25.0	64.7	5.8	*	*
3	0-39세	922	171	694	32	*	*
	구성비	100.0	18.5	75.3	3.5	*	*
4	0-49세	2,553	713	1,699	59	71	11
	구성비	100.0	27.9	66.5	2.3	2.8	0.4
5	0-59세	4,012	1,955	1,785	162	96	14
	구성비	100.0	48.7	44.5	4.0	2.4	0.3
6	0-69세	4,125	2,738	1,170	152	*	*
	구성비	100.0	66.4	28.4	3.7	*	*
70	)세이상	5,640	4,730	774	106	30	0
	구성비	100.0	83.9	13.7	1.9	0.5	0.0

# 3-5.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1)

#### 여성 기초생활보장 수급인구는 2,363명으로 남성 1,798명보다 많음

- □ (수급인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인구는 4,161명으로, 그 중 여성이 2,363명, 남성이 1,798명임
- □ (연령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여성 수급인구 중 「70세 이상」이 1,071명으로 가장 많음







<표 3-5>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인구

(단위 명 %)

						(단위: 명, %)
구분	총 수급인구 (A)	여성 (B)	구성비	남성	구성비	여성 비율 (B/A×100)
계	4,161	2,363	100.0	1,798	100.0	56.8
20-29세	161	82	3.5	79	4.4	50.9
30-39세	225	113	4.8	112	6.2	50.2
40-49세	580	297	12.6	283	15.7	51.2
50-59세	804	331	14.0	473	26.3	41.2
60-69세	883	469	19.8	414	23.0	53.1
70세 이상	1,508	1,071	     45.3	437	24.3	71.0

자료: 보령시「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료」,「주민등록인구자료」

<sup>1)</sup>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료는 2020년 4월 30일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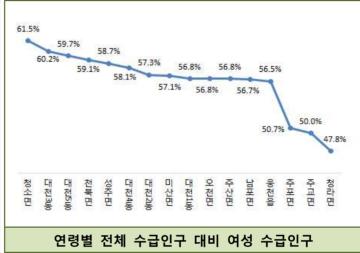
#### 3-6. 읍·면·동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여성 수급인구는 「대천4동」이 529명으로 가장 많고, 수급자 중 여성 비율은 「청소면」이 61.5%로 가장 많음

- □ (읍·면·동별) 여성 수급자는 「대천4동」이 529명으로 가장 많고, 「미산면」이 36명으로 가장 적음
- □ (수급자 비율) 수급자 중 여성비율은 「청소면」이 61.5%로 가장 높고, 「청라면」이 47.8%로 가장 낮음

<그림 3-6> 읍·면·동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인구





<표 3-6> 읍·면·동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인구

(단위: 명, %)

		(E11: 87 %)				
구분	총 수급인구 (A)	여성 (B)	구성비	남성	구성비	여성 비율 (B/A×100)
계	4,161	2,363	100.0	1,798	100.0	56.8
웅천읍	278	157	6.6	121	6.7	56.5
주포면	71	36	1.5	35	1.9	50.7
주교면	388	194	8.2	194	10.8	50.0
오천면	132	75	3.2	57	3.2	56.8
천북면	137	81	3.4	56	3.1	59.1
청소면	117	72	3.0	45	2.5	61.5
청라면	159	76	3.2	83	4.6	47.8
남포면	245	139	5.9	106	5.9	56.7
주산면	132	75	3.2	57	3.2	56.8
미산면	63	36	1.5	27	1.5	57.1
성주면	155	91	3.9	64	3.6	58.7
대천1동	542	308	13.0	234	13.0	56.8
대천2동	199	114	4.8	85	4.7	57.3
대천3동	442	266	11.3	176	9.8	60.2
대천4동	910	529	22.4	381	21.2	58.1
대천5동	191	114	4.8	77	4.3	5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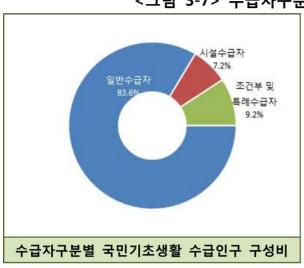
자료: 보령시「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료」,「주민등록인구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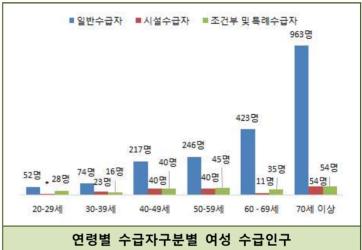
#### 3-7. 수급자구분별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여성 수급인구의 83.6%는 「일반수급자」임

- □ (수급자구분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여성 수급인구의 83.6%는「일반수급자」임
- □ (연령별) 연령대가 높을수록 수급인구 중「일반수급자」가 많아지고,「시설수급자」,「조건부 및 특례수급자」의 수는 큰 차이가 없음

<그림 3-7> 수급자구분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인구





<표 3-7> 수급자구분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인구

(단위:명%)

					(단위: 명, %)
7	·분	여성 수급인구	일반수급자	시설수급자	조건부 및 특례수급자
7	계	2,363	1,975	170	218
	구성비	100.0	83.6	7.2	9.2
20-	29세	82	52	*	28
	구성비	100.0	63.4	*	34.1
30-	39세	113	74	23	16
	구성비	100.0	65.5	20.4	14.2
40-	49세	297	217	40	40
	구성비	100.0	73.1	13.5	13.5
50-	59세	331	246	40	45
	구성비	100.0	74.3	12.1	13.6
60 -	69세	469	423	11	35
	구성비	100.0	90.2	2.3	7.5
70세	이상	1,071	963	54	54
	구성비	100.0	89.9	5.0	5.0

자료: 보령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료」, 「주민등록인구자료」

<sup>1) &#</sup>x27;시설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32조(보장시설), 동별 시행령 제38조(보장시설),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의 2(보장 시설)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에 입소한 수급자이며, '조건부수급자'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중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이고, '특례수급자'는 의료, 교육, 자활특례 수급자를 나타내며, 이 외의 수급자는 '일반 수급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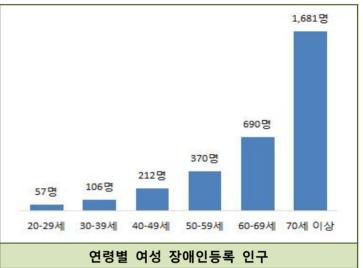
# 3-8. 장애인등록 인구1)

#### 장애인등록 인구 8,045명 중 여성 장애인등록 인구는 3,116명이고, 여성비율은 38,7%임

- □ (장애인등록 인구) 장애인등록 인구 8,045명 중 여성은 3,116명이고 남성은 4,929명으로 남성보다 적으며 여성비율은 38.7%임
- □ (연령별) 여성 장애인등록 인구 중 「70세 이상」이 1,681명으로 가장 많고, 「20-29세」가 57명으로 가장 적음

<그림 3-8> 장애인등록 인구





<표 3-8> 장애인등록 인구

(단위: 명, %)

구분	총 등록인구 (A)	여성 (B)	   구성비	남성	   구성비	여성 비율 (B/A×100)
			ТЭЧ		Тёч	
계	8,045	3,116	100.0	4,929	100.0	38.7
20-29세	184	57	1.8	127	2.6	31.0
30-39세	346	106	3.4	240	   4.9 	30.6
40-49세	773	212	6.8	561	11.4	27.4
50-59세	1,335	370	11.9	965	19.6	27.7
60-69세	1,935	690	22.1	1,245	25.3	35.7
70세 이상	3,472	1,681	53.9	1,791	   36.3	48.4

<sup>1)</sup> 장애인등록자료는 2020년 4월 30일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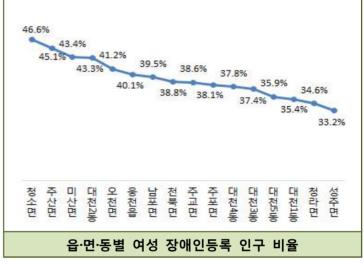
#### 3-9. 읍 · 면 · 동별 장애인등록 인구

여성 장애인등록 인구는 「대천4동」이 365명으로 가장 많고, 여성의 장애인등록 비율은 「청소면」이 46.6%로 가장 높음

- □ (읍·면·동별) 여성 장애인등록 인구는 「대천4동」이 365명으로 가장 많고, 「주포면」이 56명으로 가장 적음
- □ (여성비율) 장애인등록 인구 여성비율은 「청소면」이 46.6%로 가장 높고, 「성주면」이 33.2%로 가장 낮음

<그림 3-9> 읍·면·동별 장애인등록 인구





<표 3-9> 읍·면·동별 장애인등록 인구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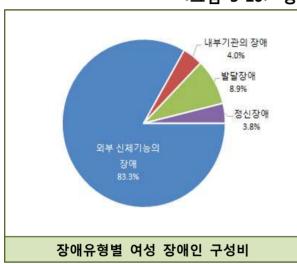
구분	총 등록인구 (A)	여성 (B)	 구성비	남성	 구성비	여성 비율 (B/A×100)
계	8,045	3,116	100.0	4,929	100.0	38.7
웅천읍	631	253	8.1	378	7.7	40.1
주포면	147	56	1.8	91	1.8	38.1
주교면	700	270	8.7	430	8.7	38.6
오천면	459	189	6.1	270	5.5	41.2
천북면	369	143	4.6	226	4.6	38.8
청소면	356	166	5.3	190	3.9	46.6
청라면	439	152	4.9	287	5.8	34.6
남포면	521	206	6.6	315	6.4	39.5
주산면	284	128	4.1	156	3.2	45.1
미산면	219	95	3.0	124	2.5	43.4
성주면	355	118	3.8	237	4.8	33.2
대천1동	814	288	9.2	526	10.7	35.4
대천2동	467	202	6.5	265	5.4	43.3
대천3동	775	290	9.3	485	9.8	37.4
대천4 <del>동</del>	966	365	11.7	601	12.2	37.8
대천5동	543	195	6.3	348	7.1	3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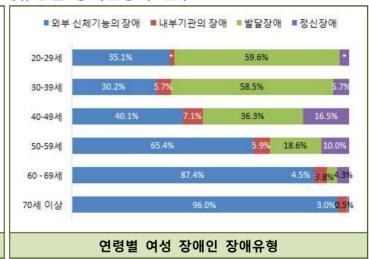
# 3-10. 장애유형별1) 여성 장애인등록 인구

#### 장애유형별 여성 장애인등록 인구는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가 83.3%로 가장 높음

- □ (장애유형) 여성 장애인등록 인구의 장애유형은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가 83.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발달장애」 8.9%순임
- □ (연령별) 연령대가 높아질수록「외부 신체기능의 장애」가 많음

#### <그림 3-10> 장애유형별 장애인등록 인구





<표 3-10> 장애유형별 장애인등록 인구

(단위: 명, %)

		(E 11: 8/ /*/				
7	분	여성 등록인구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발달장애	정신장애
	계	3,116	2,595	125	277	119
	구성비	100.0	83.3	4.0	8.9	3.8
20-	29세	57	20	*	34	*
	구성비	100.0	35.1	*	59.6	*
30-	39세	106	32	6	62	6
	구성비	100.0	30.2	5.7	58.5	5.7
40-	49세	212	85	15	77	35
	구성비	100.0	40.1	7.1	36.3	16.5
50-	59세	370	242	22	69	37
	구성비	100.0	65.4	5.9	18.6	10.0
60 -	69세	690	603	31	26	30
	구성비	100.0	87.4	4.5	3.8	4.3
70세	이상	1,681	1,613	50	9	9
	구성비	100.0	96.0	3.0	0.5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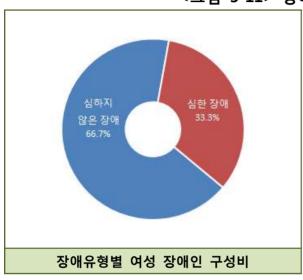
<sup>1)</sup> 장애유형은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8-151호)의 중분류에 따라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지체, 뇌병변 등), 내부기관의 장애(신장, 심장 등), 발달장애(지적, 자폐성), 정신장애로 구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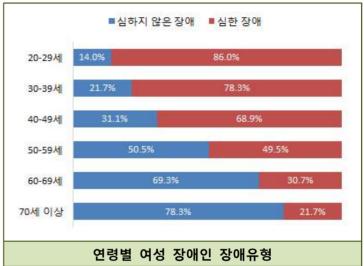
# 3-11. 장애정도별1) 여성 장애인등록 인구

#### 여성 장애인등록 인구의 장애정도 중 「심하지 않은 장애」가 66.7%로 더 많음

- □ (**장애정도**) 여성 장애인등록 인구의 장애정도 중 「심하지 않은 장애」가 66.7%로 더 많음
- □ (연령별) 연령대가 높아질수록「심하지 않은 장애」비율이 높아짐

<그림 3-11> 장애정도별 장애인등록 인구





<표 3-11> 장애정도별 장애인등록 인구

(단위: 명, %)

			(E11: 87 %)
구분	여성 등록인구	심하지 않은 장애	심한 장애
<u></u>	3,116	2,078	1,038
구성비	100.0	66.7	33.3
20-29세	57	8	49
구성비	100.0	14.0	86.0
30-39세	106	23	83
구성비	100.0	21.7	78.3
40-49세	212	66	146
구성비	100.0	31.1	68.9
50-59세	370	187	183
구성비	100.0	50.5	49.5
60-69세	690	478	212
구성비	100.0	69.3	30.7
70세 이상	1,681	1,316	365
구성비	100.0	78.3	21.7

<sup>1)</sup> 장애정도는 「장애인복지법」제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개정[시행 2019. 7. 1.]에 의해 '장애 등급'용어를 '장애 정도'로 정비하고, 장애인을 장애 정도에 따라 '심하지 않은 장애', '심한 장애'로 구분함

#### 3-12. 국민연금 가입인구1)

#### 여성 국민연금 가입인구 15,397명 중「직장가입자」는 7,528명으로 48.9%임

- □ (**가입인구**) 20세 이상 여성인구 42,439명 중 국민연금 가입인구는 15,397명으로, 36.3%임
- □ (가입자 유형) 국민연금 여성 가입인구 15,397명 중「직장가입자」가 48.9%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지역가입자」 43.1%순임

<그림 3-12> 국민연금 가입인구



<표 3-12> 국민연금 가입인구

(단위: 명, %)

				(L III 0/ /*/			
구분	여성 국민연금 가입인구 (A)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임의 가입자 <sup>2)</sup>	임의계속 가입자 <sup>3)</sup>	20세 이상 여성인구 (B)	국민연금 가입률 (A/B×100)
	15,397	7,528	6,640	148	1,081	42.420	26.2
구성비	100.0	48.9	43.1	1.0	7.0	42,439	36.3
20-29세	1,856	999	852	5	-	4.041	45.9
구성비	100.0	53.8	45.9	0.3		4,041	43.9
30-39세	2,570	1,586	964	20	-	4.407	57.3
구성비	100.0	61.7	37.5	0.8		4,487 	
40-49세	4,065	2,395	1,624	46	-	6.402	62.5
구성비	100.0	58.9	40.0	1.1		6,403	63.5
50-59세	5,825	2,548	3,200	77	-	8,172	71.2
구성비	100.0	43.7	54.9	1.3		0,1/2	71.3
60세 이상	1,081	-	-	-	1,081	10.226	Г.6
구성비	100.0		-	-	100.0	19,336	5.6

자료: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 가입자 자료」, 보령시「주민등록인구자료」

<sup>1)</sup> 국민연금 가입자 자료는 2019년 12월 31일 기준임

<sup>2)</sup> 임의가입자는 국민연금법」적용을 받지 않지만 임의로 국민연금 가입 신청자이며, 대상자는 가입자 또는 연금수급자의 무소득배우자,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기초수급자 등임

<sup>3)</sup> 임의계속가입자는 60세 이후에도 신청에 의하여 계속하여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는 자이며, 임의계속가입 신청은 65세 전까지 가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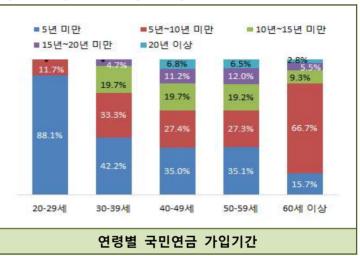
# 3-13. 가입기간별 국민연금 가입인구

「20-29세」에서는 「5년 미만」 비율이 88.1%로 가장 높고, 「60세 이상」에서는 「5년~10년 미만」 비율이 66.7%로 가장 높음

- □ (연령대) 「60세 이상」을 제외하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국민연금 여성 가입인구도 많아짐
- □ **(가입기간별)** 「20-29세」에서는「5년 미만」비율이 88.1%로 가장 높고,「60세 이상」에서는「5~10년 미만」비율이 66.7%로 가장 높음

<그림 3-13> 가입기간별 국민연금 가입인구





<표 3-13> 가입기간별 국민연금 가입인구

(단위: 명, %)

							(근귀, 경, /0)
Ŧ	구분	여성 가입인구	5년 미만	5년~ 10년 미만	10년~ 15년 미만	15년~ 20년 미만	20년 이상
	계	15,397	6,357	4,497	2,524	1,333	686
	구성비	100.0	41.3	29.2	16.4	8.7	4.5
20-	-29세	1,856	1,636	218	*	-	-
	구성비	100.0	88.1	11.7	*		
30-	·39세	2,570	1,084	856	506	121	*
	구성비	100.0	42.2	33.3	19.7	4.7	*
40-	-49세	4,065	1,421	1,114	799	456	275
 	구성비	100.0	35.0	27.4	19.7	11.2	6.8
50-	·59세	5,825	2,046	1,588	1,116	697	378
	구성비	100.0	35.1	27.3	19.2	12.0	6.5
60시	이상	1,081	170	721	101	59	30
	구성비	100.0	15.7	66.7	9.3	5.5	2.8

자료: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 가입자 자료」

# 4. 건 강♡

# 4-1. 사망자수

'19년도 여성 사망자수는 423명이고 여성 사망률은 850.4명으로 남성 사망률 993.0명보다 낮음

- □ (성별) 여성 사망자수 423명은 남성 사망자수 506명보다 적으며, 여성 사망률은 850.4명으로 남성 사망률 993.0명보다 낮음
- □ **(연도별)** '19년 사망률 850.4명은 '12년 사망률 747.0명에 비해 103.4명 높아짐

#### <그림 4-1> 사망자수





<표 4-1> 사망자수

(단위: 명, 십만명당 명)

(인기: 경, 입인경영									
구분	여	성	남성						
T世	사망자수	사망률 <sup>1)</sup>	사망자수	사망률					
2019년	423	850.4	506	993.0					
2018년	464	923.4	530	1,029.4					
2017년	427	841.7	511	983.3					
2016년	437	854.6	501	957.1					
2015년	434	846.0	523	997.8					
2014년	409	796.2	560	1,067.8					
2013년	376	727.5	487	923.4					
2012년	389	747.0	498	938.4					

자료: 통계청「사망원인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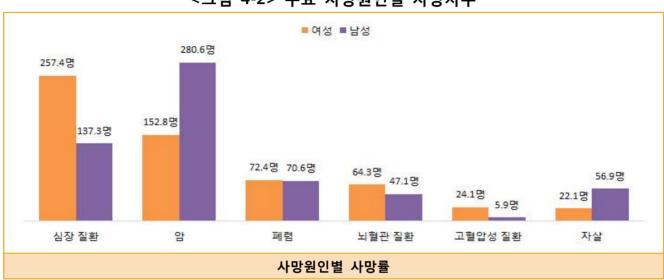
Ⅳ. 별도 표기가 없는 경우, 2019년 12월 31일 기준 자료임

<sup>1)</sup> 사망률(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 = 해당연도 사망자 수/해당연도 주민등록 연앙인구×100,000

# 4-2. 주요 사망원인별 사망자수

여성 사망률이 가장 높은 사망원인은 「심장질환」으로 257.4명이며, 사망원인 중「심장질환」,「폐렴」,「뇌혈관질환」등의 경우 여성의 사망률이 남성보다 높음

- □ (사망원인) 여성 사망원인 중「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257.4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암」152.8명,「폐렴」72.4명순임
- □ (사망원인)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고혈압성 질환」의 경우 여성 사망자수가 남성보다 많음



<그림 4-2> 주요 사망원인별 사망자수

<표 4-2> 주요 사망원인별 사망자수

(단위: 명, %, 십만명당 명)

		여성		남성			
구분	사망자수	구성비	사망률 <sup>1)</sup>	사망자수	구성비	사망률	
계	423	100.0	850.4	506	100.0	993.0	
암	76	18.0	152.8	143	28.3	280.6	
심장 질환	128	30.3	257.4	70	13.8	137.3	
뇌혈관 질환	32	7.6	64.3	24	4.7	47.1	
폐렴	36	8.5	72.4	36	7.1	70.6	
고혈압성 질환	12	2.8	24.1	*	*	5.9	
자살	11	2.6	22.1	29	5.7	56.9	
기타	128	30.3	257.3	201	39.7	394.6	

자료: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sup>1) 10</sup>만명당 사망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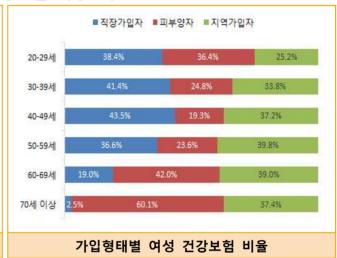
# 4-3. 건강보험 적용인구1)

여성 건강보험 적용인구 37,330명 중 「지역가입자」가 13,652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피부양자」 13,613명순임

- □ (적용인구) 여성 건강보험 적용인구 37,330명 중「지역가입자」는 13,652명, 「피부양자」는 13,613명, 「직장가입자」는 10,065명임
- □ (연령별)「직장가입자」는「20-49세」에서,「피부양자」는「60세 이상」에서 건강보험 적용인구가 가장 많음

<그림 4-3> 건강보험 적용인구





<표 4-3> 건강보험 적용인구

(단위: 명. %

					(단위: 명, %)	
_	н	741	직	장	지역	
Ť	분	계	가입자	피부양자		
7	계	37,330	10,065	13,613	13,652	
	구성비	100.0	27.0	36.5	36.5	
20-2	29세	3,630	1,395	1,322	913	
	구성비	100.0	38.4	36.4	25.2	
30-3	39세	4,161	1,721	1,034	1,406	
	구성비	100.0	41.4	24.8	33.8	
40-4	49세	5,843	2,543	1,125	2,175	
	구성비	100.0	43.5	19.3	37.2	
50-!	59세	7,575	2,769	1,790	3,016	
	구성비	100.0	36.6	23.6	39.8	
60-6	69세	7,502	1,424	3,157	2,921	
	구성비	100.0	19.0	42.0	39.0	
70세	이상	8,619	213	5,185	3,221	
	구성비	100.0	2.5	60.1	37.4	

<sup>1)</sup> 건강보험 적용인구 및 주민등록 거주지 기준이며, 의료급여 제외

# 4-4. 건강보험 요양급여실적1)

# 여성의 건강보험 요양급여실적 중 「진료비」는 1,040억원, 「급여비」는 787억원임

- □ (진료비) 여성 건강보험 요양급여실적 중「진료비」는 1,040억원이며, 그 중에서 「입원」이 410억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함
- □ (급여비) 여성 건강보험 요양급여실적 중「급여비」는 787억원이며, 그 중에서 「입원」이 330억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함

<그림 4-4> 건강보험 요양급여실적





<표 4-4> 건강보험 요양급여실적

(단위: 백만원)

	78	7.	11	입	원	외	래	약	국
	구분	진료비	급여비	진료비	급여비	진료비	급여비	진료비	급여비
	계	193,266	146,882	76,692	62,376	74,526	54,154	42,048	30,352
	남성	89,219	68,089	35,644	29,361	33,762	24,411	19,813	14,317
_	여성	104,047	78,793	41,048	33,015	40,764	29,743	22,235	16,035
	20-29세	2,950	2,200	982	834	1,563	1,080	405	286
	30-39세	5,189	4,005	2,042	1,750	2,481	1,776	666	479
	40-49세	6,954	5,153	2,130	1,764	3,508	2,447	1,316	942
	50-59세	14,697	10,775	4,227	3,424	6,822	4,744	3,648	2,607
	60-69세	23,807	17,891	7,233	5,908	10,512	7,610	6,062	4,373
	70세 이상	50,450	38,769	24,434	19,335	15,878	12,086	10,138	7,348

<sup>1)</sup> 수진자 주소지 기준이며, 의료급여 및 비급여는 제외(2020년 6월 청구분까지 반영)

#### 4-5. 주요 만성질환1) 진료인원

건강보험 만성질환(6종) 여성 진료인원은 「고혈압」이 10,412명으로 가장 많고, 「심장질환」이 1,858명으로 가장 적음

- □ (진료인원) 만성질환(6종) 여성 진료인원 중「고혈압」이 10,412명으로 가장 많고, 「정신질환」5,473명순임
- □ (성별) 진료인원 중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많은 만성질환은 「고혈압」、「신경계질환」、 「정신질환」임



<그림 4-5> 주요 만성질환 진료인원

<표 4-5> 주요 만성질환 진료인원

(단위: 명)

						(E 11: 0)
구분	고혈압	당뇨	신경계질환	심장질환	정신질환	간질환
계	19,541	9,045	8,146	4,014	8,795	4,545
남성	9,129	4,780	3,212	2,156	3,322	2,595
여성	10,412	4,265	4,934	1,858	5,473	1,950
20-29세	8	20	154	12	238	84
30-39세	64	67	239	17	272	141
40-49세	456	220	484	50	411	257
50-59세	1,770	744	976	189	645	501
60-69세	2,887	1,302	1,212	479	1,071	568
70세 이상	5,227	1,912	1,869	1,111	2,836	399

<sup>1)</sup> 주 질병통계자료는 요양기관에서 환자진료 중 진단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호소, 증세 등에 따라 일차 진단명을 부여하고 청구한 내역중 주 진단명 기준으로 발췌한 것이므로 최종 확정된 질병과는 다를 수 있음

# 4-6. 주요 만성질환 1인당 진료비1)

주요 만성질환 여성 1인당 진료비는 「심장질환」이 1,870천원으로 가장 높고, 다 음으로「정신질환」1,220천원,「신경계질환」847천원순임

- □ (1인당 진료비) 만성질환(6종) 여성 1인당 진료비는 「심장질환」이 1,870천원으로 가장 많고, 「정신질환」1,220천원, 「신경계질환」847천원순임
- □ (성별) 여성이 남성보다 1인당 진료비가 적은 만성질환은 「신경계질환」임

■여성 ■남성 (단위: 천원) 1,870 1,855 1.220 1,044 847 876 828 822 567 520 551 538 당뇨 고혈압 신경계질환 정신질환 간질환 심장질환 주요 만성질환 1인당 진료비

<그림 4-6> 주요 만성질환 1인당 진료비

<표 4-6> 주요 만성질환 1인당 진료비

(다의 면)

						(단위: 명)
구분	고혈압	넁	신경계질환	심장질환	정신질환	간질환
계	545	825	859	1,862	1,154	544
남성	520	822	876	1,855	1,044	538
여성	567	828	847	1,870	1,220	551
20-29세	176	572	125	97	1,397	195
30-39세	253	1,258	190	2,208	946	479
40-49세	429	724	239	815	593	403
50-59세	487	731	397	1,298	635	633
60-69세	557	831	484	1,870	434	620
70세 이상	615	862	1,619	2,029	1,752	5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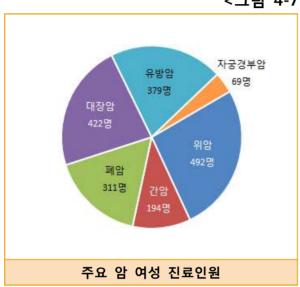
<sup>1) 1</sup>인당 진료비: 진료비/진료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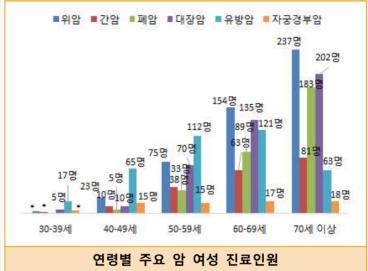
#### 4-7. 주요 암 진료인원

#### 주요 암 여성 진료인원은 「위암」이 492명으로 가장 많고, 「대장암」 422명순임

- □ (진료인원) 주요 암 여성 진료인원은 「위암」이 492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대장암」422명, 「유방암」379명순임
- □ **(연령별)** 진료인원이 가장 많은 「위암」의 경우에는 「70세 이상」의 진료인원이 가장 많음

<그림 4-7> 주요 암 진료인원





<표 4-7> 주요 암 진료인원

(단위: 명)

_							(단위: 명)
	구분	위암	간암	폐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계	492	194	311	422	379	69
	20-29세	-	-	*	-	*	-
	30-39세	*	*	-	5	17	*
	40-49세	23	10	5	10	65	15
	50-59세	75	38	33	70	112	15
	60-69세	154	63	89	135	121	17
	70세 이상	237	81	183	202	63	18

#### 4-8. 주요 암 1인당 진료비

#### 주요 암에 대한 여성 1인당 진료비는 「간암」 9,959천원, 「폐암」 9,514천원순임

- □ **(1인당 진료비)** 주요 암 여성 1인당 진료비는「간암」9,959천원,「폐암」9,514천원, 「대장암」5,932천원순임
- □ (연령별)「간암」은「40-49세」,「폐암」은「60-69세」,「대장암」은「50-59세」에서 1인당 진료비가 가장 많음

<그림 4-7> 주요 암 1인당 진료비





<표 4-7> 주요 암 1인당 진료비

(단위: 천원)

						(27) (22)
구분	위암	간암	폐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계	3,025	9,959	9,514	5,932	4,734	5,106
20-29세	-	-	3,190	-	356	-
30-39세	1,676	4,748	-	1,661	6,840	942
40-49세	3,056	21,591	4,211	5,377	4,842	6,187
50-59세	1,998	12,320	8,694	7,400	3,893	7,344
60-69세	3,316	9,435	10,521	7,294	5,133	3,442
70세 이상	3,175	7,952	9,352	4,647	4,854	4,8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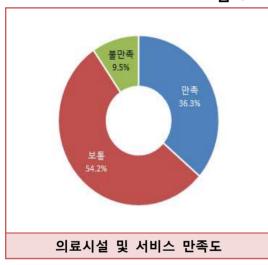
# 5. 지역생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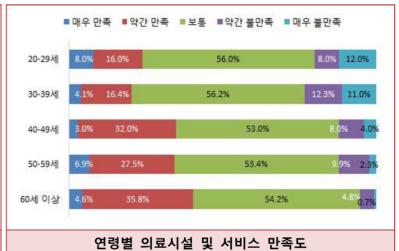
# 5-1. 의료시설 및 서비스 만족도1)

의료시설 및 서비스에 대해 36.3%가 「만족」한다고 응답했고, 「60세 이상」의 「만족」 응답 비율이 40.4%로 가장 높음

- □ (의료시설) 보령시 여성의 의료시설 및 서비스에 「만족」하는 비율은 36.3%, 「불만족」 비율은 9.5%로 「만족」 비율이 26.8% 높음
- □ (연령별)「만족」비율을 연령별로 보면「60세 이상」에서 40.4%로 가장 높고,「불만족」 비율은「30-39세」에서 23.3%로 가장 높음

<그림 5-1> 의료시설 및 서비스 만족도





<표 5-1> 의료시설 및 서비스 만족도

(단위: %)

구분	매우 만족 (A)	약간 만족 (B)	보통	약간 불만족 (C)	매우 불만족 (D)	만족 (A+B)	불만족 (C+D)
계	4.8	31.5	54.2	6.8	2.7	36.3	9.5
20-29세	8.0	16.0	56.0	8.0	12.0	24.0	20.0
30-39세	4.1	16.4	56.2	12.3	11.0	20.5	23.3
40-49세	3.0	32.0	53.0	8.0	4.0	35.0	12.0
50-59세	6.9	27.5	53.4	9.9	2.3	34.4	12.2
60세 이상	4.6	35.8	54.2	4.8	0.7	40.4	5.5

V. 「2019 충청남도 사회조사」는 표본조사라 여성인구 규모와 일치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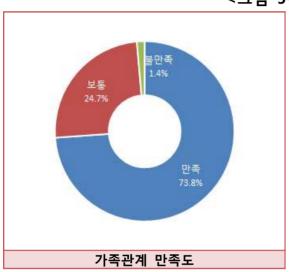
<sup>1)</sup> 의료시설의 서비스 및 접근성을 전반적으로 고려한 만족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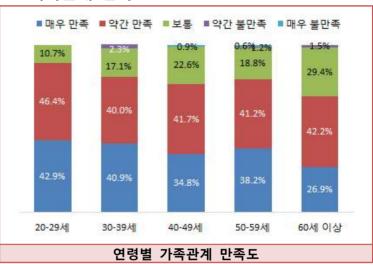
# 5-2. 가족관계 만족도1)

가족관계에 대해 73.8%가 「만족」한다고 응답했고, 「20-29세」의 「만족」 응답 비율이 89.3%로 가장 높음

- □ (가족관계) 보령시 여성의 가족관계에 「만족」하는 비율은 73.8%, 「불만족」비율은 1.4%로 「만족」비율이 72.4% 높음
- □ (연령별)「만족」비율을 연령별로 보면「20-29세」에서 89.3%로 가장 높고,「불만족」 비율은「30-39세」에서 2.3%로 가장 높음

<그림 5-2> 가족관계 만족도





<표 5-2> 가족관계 만족도

(단위: %)

							(단위: %)
구분	매우 만족 (A)	약간 만족 (B)	보통	약간 불만족 (C)	매우 불만족 (D)	만족 (A+B)	불만족 (C+D)
계	32.0	41.8	24.7	1.1	0.3	73.8	1.4
20-29세	42.9	46.4	10.7	0.0	0.0	89.3	0.0
30-39세	40.9	40.0	17.1	2.3	0.0	80.9	2.3
40-49세	34.8	41.7	22.6	0.0	0.9	76.5	0.9
50-59세	38.2	41.2	18.8	0.6	1.2	79.4	1.8
60세 이상	26.9	42.2	29.4	1.5	0.0	69.1	1.5

<sup>1)</sup> 가족 구성원들과의 관계, 하루 중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의 충분성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한 만족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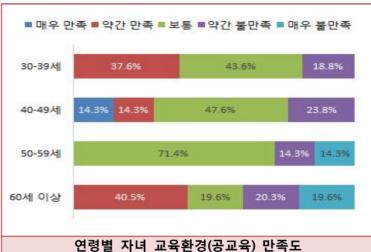
# 5-3. 자녀 교육환경(공교육) 만족도1)

자녀 교육환경(공교육)에 대해 28.6%가 「만족」한다고 응답했고, 「60세 이상」의 「만족」 응답 비율이 40.5%로 가장 높음

- □ (공교육) 보령시 여성의 자녀 교육환경(공교육)에 「만족」하는 비율은 28.6%, 「불만족」 비율은 24.5%로 「만족」 비율이 4.1% 높음
- □ (연령별)「만족」비율을 연령별로 보면「60세 이상」에서 40.5%로 가장 높고,「불만족」 비율 또한 39.9%로 가장 높음

<그림 5-3> 자녀 교육환경(공교육) 만족도





<표 5-3> 자녀 교육환경(공교육) 만족도

(다위: %)

							(단위: %)
구분	매우 만족 (A)	약간 만족 (B)	보통	약간 불만족 (C)	매우 불만족 (D)	만족 (A+B)	불만족 (C+D)
계 	6.1	22.5	46.9	20.5	4.0	28.6	24.5
20-29세	0.0	0.0	0.0	0.0	0.0	0.0	0.0
30-39세	0.0	37.6	43.6	18.8	0.0	37.6	18.8
40-49세	14.3	14.3	47.6	23.8	0.0	28.6	23.8
50-59세	0.0	0.0	71.4	14.3	14.3	0.0	28.6
60세 이상	0.0	40.5	19.6	20.3	19.6	40.5	39.9

<sup>1)</sup> 초·중·고 학부모의 공교육에 대한 교육환경을 전반적으로 고려한 만족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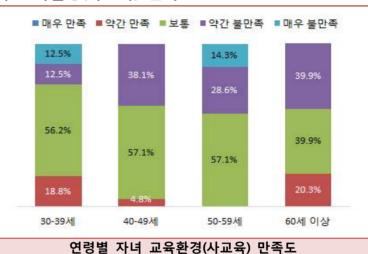
# 5-4. 자녀 교육환경(사교육) 만족도()

자녀 교육환경(사교육)에 대해 55.1%가 「만족」한다고 응답했고, 「60세 이상」의 「만족」응답 비율이 20.3%로 가장 높음

- □ (사교육) 보령시 여성의 자녀 교육환경(사교육)에「만족」하는 비율은 10.2%,「불만족」 비율은 34.7%로「불만족」비율이 24.5% 높음
- □ (연령별)「만족」비율을 연령별로 보면「60세 이상」에서 20.3%로 가장 높고,「불만족」 비율은 「50-59세」에서 42.9%로 가장 높음

<그림 5-4> 자녀 교육환경(사교육) 만족도





<표 5-4> 자녀 교육환경(사교육) 만족도

(CFOI: 0/1)

							(단위: %)
구분	매우 만족 (A)	약간 만족 (B)	보통	약간 불만족 (C)	매우 불만족 (D)	만족 (A+B)	불만족 (C+D)
계 	0.0	10.2	55.1	28.6	6.1	10.2	34.7
20-29세	0.0	0.0	0.0	0.0	0.0	0.0	0.0
30-39세	0.0	18.8	56.2	12.5	12.5	18.8	25.0
40-49세	0.0	4.8	57.1	38.1	0.0	4.8	38.1
50-59세	0.0	0.0	57.1	28.6	14.3	0.0	42.9
60세 이상	0.0	20.3	39.9	39.9	0.0	20.3	39.9

<sup>1)</sup> 초·중·고 학부모의 사교육에 대한 교육환경을 전반적으로 고려한 만족도임

# 5-5. 직장 만족도1)

직장 만족도에 대해 30.9%가 「만족」한다고 응답했고, 「20-29세」의 「만족」 응답 비율이 41.2%로 가장 높음

- □ (직장 만족도) 보령시 여성의 직장 만족도에 「만족」하는 비율은 30.9%, 「불만족」 비율은 5.6%로 「만족」 비율이 25.3% 높음
- □ (연령별) 「만족」 비율을 연령별로 보면「20-29세」에서 41.2%로 가장 높고, 「불만족」비율 또한 11.8%로 가장 높음

<그림 5-5> 직장 만족도





<표 5-5> 직장 만족도

(다위: %)

							(단위: %)
구분	매우 만족 (A)	약간 만족 (B)	보통	약간 불만족 (C)	매우 불만족 (D)	만족 (A+B)	불만족 (C+D)
계 	5.6	25.3	63.5	5.2	0.4	30.9	5.6
20-29세	11.8	29.4	47.1	11.8	0.0	41.2	11.8
30-39세	10.4	29.2	58.3	2.1	0.0	39.6	2.1
40-49세	3.2	33.3	58.1	5.4	0.0	36.5	5.4
50-59세	8.3	27.5	58.3	5.8	0.0	35.8	5.8
60세 이상	3.2	18.6	72.3	4.8	1.1	21.8	5.9

<sup>1)</sup> 일의 내용, 업무량, 일의 성격, 임금, 복리후생 등 여러 사항을 전반적으로 고려한 만족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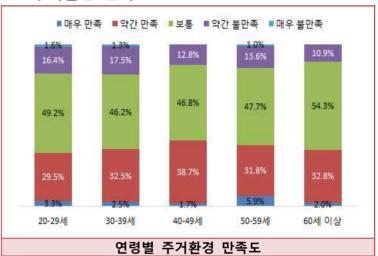
# 5-6. 주거환경 만족도1)

주거환경 만족도에 대해 36.1%가 「만족」한다고 응답했고, 「40-49세」의 「만족」 응답 비율이 40.4%로 가장 높음

- □ (주거환경) 보령시 여성의 주거환경에 「만족」하는 비율은 36.1%, 「불만족」 비율은 12.9%로「만족」 비율이 23.2% 높음
- □ (연령별) 「만족」 비율을 연령별로 보면 「40-49세」에서 40.4%로 가장 높고, 「불만족」 비율은 「30-39세」에서 18.8%로 가장 높음

<그림 5-6> 주거환경 만족도





<표 5-6> 주거환경 만족도

(단위: %)

							(단위: %)
구분	매우 만족 (A)	약간 만족 (B)	보통	약간 불만족 (C)	매우 불만족 (D)	만족 (A+B)	불만족 (C+D)
계 	2.8	33.3	51.0	12.5	0.4	36.1	12.9
20-29세	3.3	29.5	49.2	16.4	1.6	32.8	18.0
30-39세	2.5	32.5	46.2	17.5	1.3	35.0	18.8
40-49세	1.7	38.7	46.8	12.8	0.0	40.4	12.8
50-59세	5.9	31.8	47.7	13.6	1.0	37.7	14.6
60세 이상	2.0	32.8	54.3	10.9	0.0	34.8	10.9

<sup>1)</sup> 거주 주택, 쇼핑시설 이용, 의료시설 이용, 공공시설 이용 등 여러 사항을 전반적으로 고려한 만족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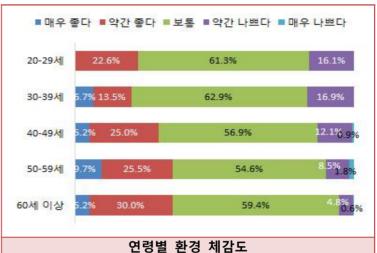
# 5-7. 환경 체감도1)

환경 체감도에 대해 32.6%가 「좋다」고 응답했고, 「50-59세」와 「60세 이상」의 「좋다」 응답 비율이 35.2%로 가장 높음

- □ (환경 체감도) 보령시 여성의 환경 체감도에 「좋다」고 응답한 비율은 32.6%, 「나쁘다」 비율은 8.8%로 「좋다」고 응답한 비율이 23.8% 높음
- □ (연령별)「좋다」는 비율을 연령별로 보면「50-59세」와「60세 이상」에서 35.2%로 가장 높고,「나쁘다」비율은「30-39세」에서 16.9%로 가장 높음

<그림 5-7> 환경 체감도





<표 5-7> 환경 체감도

(단위: %)

							(단위: %)
구분	매우 좋다 (A)	약간 좋다 (B)	보통	약간 나쁘다 (C)	매우 나쁘다 (D)	좋다 (A+B)	나쁘다 (C+D)
계	6.0	26.6	58.6	8.0	0.8	32.6	8.8
20-29세	0.0	22.6	61.3	16.1	0.0	22.6	16.1
30-39세	6.7	13.5	62.9	16.9	0.0	20.2	16.9
40-49세	5.2	25.0	56.9	12.1	0.9	30.2	13.0
50-59세	9.7	25.5	54.6	8.5	1.8	35.2	10.3
60세 이상	5.2	30.0	59.4	4.8	0.6	35.2	5.4

<sup>1)</sup> 대기, 수질, 토양 등 여러 사항을 전반적으로 고려한 체감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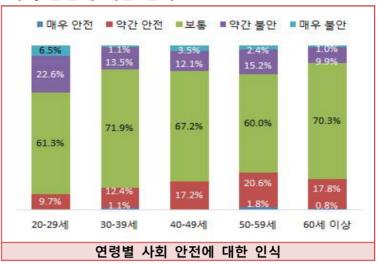
# 5-8.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1)

사회 안전에 대해 18.3%가 「안전」하다고 응답했고, 「50-59세」의 「안전」 응답 비율이 22.4%로 가장 높음

- □ (사회 안전) 보령시 여성의 사회 안전에 대해「안전」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18.3%,「불안」비율은 13.8%로「안전」비율이 4.5% 높음
- □ (연령별)「안전」비율은 연령별로 보면「50-59세」에서 22.4%로 가장 높고,「불안」 비율은「20-29세」에서 29.1%로 가장 높음

<그림 5-8>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표 5-8>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단위: %)

							(단위: %)
구분	매우 안전 (A)	약간 안전 (B)	보통	약간 불안 (C)	매우 불안 (D)	안전 (A+B)	불안 (C+D)
계	0.9	17.4	67.9	12.0	1.8	18.3	13.8
20-29세	0.0	9.7	61.3	22.6	6.5	9.7	29.1
30-39세	1.1	12.4	71.9	13.5	1.1	13.5	14.6
40-49세	0.0	17.2	67.2	12.1	3.5	17.2	15.6
50-59세	1.8	20.6	60.0	15.2	2.4	22.4	17.6
60세 이상	0.8	17.8	70.3	9.9	1.0	18.6	10.9

<sup>1)</sup> 국가 안보, 자연재해, 건축 및 시설물, 교통사고, 범죄위험 등 여러 사항을 전반적으로 고려한 체감도임

# 5-9. 문화 및 여가활동 만족도1)

문화 및 여가활동에 대해 57.8%가 「만족」한다고 응답했고, 「20-29세」의 「만족」 응답 비율이 64.5%로 가장 높음

- □ (문화·여가) 보령시 여성의 문화 및 여가활동에 「만족」하는 비율은 57.8%, 「불만족」 비율은 6.6%로 「만족」 비율이 51.2% 높음
- □ (연령별)「만족」비율은 연령별로 보면「20-29세」에서 64.5%로 가장 높고,「불만족」 비율은「30-39세」에서 8.1%로 가장 높음

<그림 5-9> 문화 및 여가활동 만족도





<표 5-9> 문화 및 여가활동 만족도

(단위: %)

구분	매우 만족 (A)	약간 만족 (B)	보통	약간 불만족 (C)	매우 불만족 (D)	만족 (A+B)	불만족 (C+D)
계 	2.3	55.5	35.7	6.4	0.2	57.8	6.6
20-29세	0.0	64.5	29.0	6.5	0.0	64.5	6.5
30-39세	3.5	60.5	27.9	8.1	0.0	64.0	8.1
40-49세	1.7	59.5	31.9	6.9	0.0	61.2	6.9
50-59세	0.6	60.0	35.2	3.6	0.6	60.6	4.2
60세 이상	2.9	51.5	38.6	6.8	0.2	54.4	7.0

<sup>1)</sup> 영화 관람, 스포츠 활동, 친목도모 활동 등에 참여했을 경우 그에 대한 만족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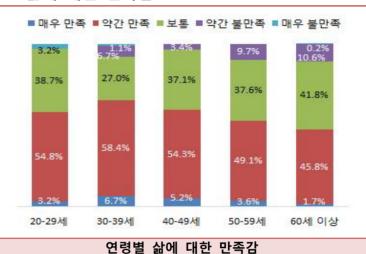
#### 5-10. 삶에 대한 만족감1)

삶에 대한 만족감에 대해 52.2%가 「만족」한다고 응답했고,  $\lceil 30-394 \rfloor$ 의 「만족」 응답 비율이 65.1%로 가장 높음

- □ (삶에 대한 만족감) 보령시 여성의 삶에 대한 만족감에 「만족」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52.2%, 「불만족」 비율은 9.0%로 「만족」 비율이 43.2% 높음
- □ (연령별)「만족」비율은 연령별로 보면「30-39세」에서 65.1%로 가장 높고,「불만족」 비율은「60세 이상」에서 10.8%로 가장 높음

<그림 5-10> 삶에 대한 만족감





<표 5-10> 삶에 대한 만족감

(다위: %)

							(단위: %)
구분	매우 만족 (A)	약간 만족 (B)	보통	약간 불만족 (C)	매우 불만족 (D)	만족 (A+B)	불만족 (C+D)
계	3.1	49.1	38.8	8.7	0.3	52.2	9.0
20-29세	3.2	54.8	38.7	0.0	3.2	58.0	3.2
30-39세	6.7	58.4	27.0	6.7	1.1	65.1	7.8
40-49세	5.2	54.3	37.1	3.4	0.0	59.5	3.4
50-59세	3.6	49.1	37.6	9.7	0.0	52.7	9.7
60세 이상	1.7	45.8	41.8	10.6	0.2	47.5	10.8

<sup>1) 「</sup>자신의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문항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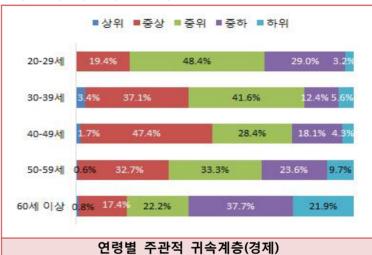
#### 5-11. 주관적 귀속계층(경제)1)

보령시 여성의 주관적 귀속계층(경제)은 「중상 이상」이 27.3%, 「중위」 27.9%, 「중하 이하」는 44.8%임

- □ (경제적 귀속계층) 경제적 귀속계층에 대한 질문에 「중상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7.3%, 「중하 이하」 비율은 44.8%임
- □ (연령별) 자신이「중상 이상」의 계층이라고 응답한 비율은「40-49세」에서 49.1%로 가장 높고,「중하 이하」의 계층 비율은「60세 이상」에서 59.6%로 가장 높음

<그림 5-11> 주관적 귀속계층(경제)





<표 5-11> 주관적 귀속계층(경제)

(단위: %)

							(11.70)
구분	상위 (A)	중상 (B)	중위	중하 (C)	하위 (D)	중상 이상 (A+B)	중하 이하 (C+D)
계	1.1	26.2	27.9	29.7	15.1	27.3	44.8
20-29세	0.0	19.4	48.4	29.0	3.2	19.4	32.2
30-39세	3.4	37.1	41.6	12.4	5.6	40.5	18.0
40-49세	1.7	47.4	28.4	18.1	4.3	49.1	22.4
50-59세	0.6	32.7	33.3	23.6	9.7	33.3	33.3
60세 이상	0.8	17.4	22.2	37.7	21.9	18.2	5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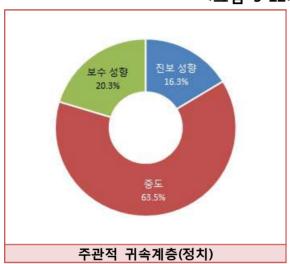
<sup>1)</sup> 응답자의 직업, 교육, 재산 등을 고려한 주관적인 소속 체감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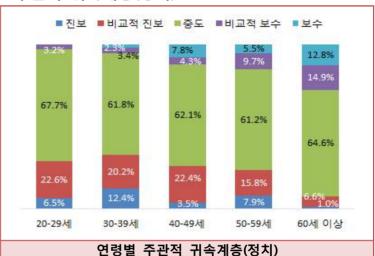
#### 5-12. 주관적 귀속계층(정치)1)

보령시 여성의 주관적 귀속계층(정치)은 「진보 성향」이 16.3%, 「중도」 63.5%, 「보수 성향」은 20.3%임

- □ (정치적 귀속계층) 정치적 귀속계층에 대한 질문에 「진보 성향」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6.3%, 「중도」 비율은 63.5%, 「보수 성향」은 20.3%임
- □ (연령별) 자신이 「진보 성향」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0-39세」에서 32.6%로 가장 높고, 「보수 성향」의 계층 비율은 「60세 이상」에서 27.7%로 가장 높음

<그림 5-12> 주관적 귀속계층(정치)





<표 5-12> 주관적 귀속계층(정치)

(단위: %)

							(단위: %)
구분	진보 (A)	비교적 진보 (B)	중도	비교적 보수 (C)	보수 (D)	진보 성향 (A+B)	보수 성향 (C+D)
계 	4.0	12.3	63.5	11.0	9.3	16.3	20.3
20-29세	6.5	22.6	67.7	3.2	0.0	29.1	3.2
30-39세	12.4	20.2	61.8	3.4	2.3	32.6	5.7
40-49세	3.5	22.4	62.1	4.3	7.8	25.9	12.1
50-59세	7.9	15.8	61.2	9.7	5.5	23.7	15.2
60세 이상	1.0	6.6	64.6	14.9	12.8	7.6	27.7

<sup>1)</sup> 응답자의 정치 성향을 고려한 주관적인 소속 체감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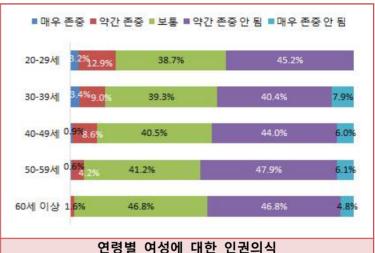
#### 5-13. 여성에 대한 인권의식1)

보령시 여성의 4.9%가 여성에 대해 「존중됨」이라고 응답했고, 「20-29세」의 「존중됨」 비율이 16.1%로 가장 높음

- □ (인권의식) 보령시 여성이 「존중됨」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4.9%, 「존중 안 됨」 비율은 51.2%로 「존중되지 않음」 비율이 46.3% 높음
- □ (연령별) 「존중됨」 비율을 연령별로 보면「20-29세」에서 16.1%로 가장 높고, 「존중 안 됨」 비율은「50-59세」에서 54.0%로 가장 높음

<그림 5-13> 여성에 대한 인권의식





<표 5-13> 여성에 대한 인권의식

(단위: %)

							(단취, 70)
구분	매우 존중 (A)	약간 존중 (B)	보통	약간 존중 안 됨 (C)	전혀 존중 안 됨 (D)	존중됨 (A+B)	존중 안 됨 (C+D)
계	0.7	4.2	43.9	45.9	5.3	4.9	51.2
20-29세	3.2	12.9	38.7	45.2	0.0	16.1	45.2
30-39세	3.4	9.0	39.3	40.4	7.9	12.4	48.3
40-49세	0.9	8.6	40.5	44.0	6.0	9.5	50.0
50-59세	0.6	4.2	41.2	47.9	6.1	4.8	54.0
60세 이상	0.0	1.6	46.8	46.8	4.8	1.6	5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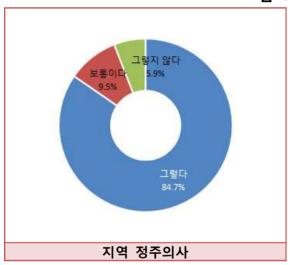
<sup>1) 「</sup>거주하는 지역에서 여성을 차별하지 않고 존중하고 있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문항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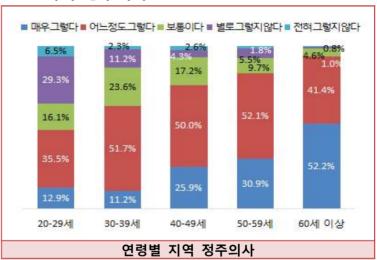
#### 5-14. 지역 정주의사1)

## 지역 정주의사에 대해 84.7%가 「그렇다」라고 응답했고, 「60세 이상」의 정주의사가 93.6%로 가장 높음

- □ (정주의사) 지역 정주의사에「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84.7%,「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5.9%로,「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78.8% 높음
- □ (연령별) 「그렇다」 비율을 연령별로 보면「60세 이상」에서 93.6%로 가장 높고, 「그렇지 않다」 비율은「20-29세」에서 35.8%로 가장 높음

<그림 5-14> 지역 정주의사





<표 5-14> 지역 정주의사

(단위: %)

							(단위, %)
구분	매우 그렇다 (A)	어느정도 그렇다 (B)	보통	별로 그렇지 않다 (C)	전혀 그렇지 않다 (D)	그렇다 (A+B)	그렇지 않다 (C+D)
계 	39.3	45.4	9.5	4.3	1.6	84.7	5.9
20-29세	12.9	35.5	16.1	29.3	6.5	48.4	35.8
30-39세	11.2	51.7	23.6	11.2	2.3	62.9	13.5
40-49세	25.9	50.0	17.2	4.3	2.6	75.9	6.9
50-59세	30.9	52.1	9.7	5.5	1.8	83.0	7.3
60세 이상	52.2	41.4	4.6	1.0	0.8	93.6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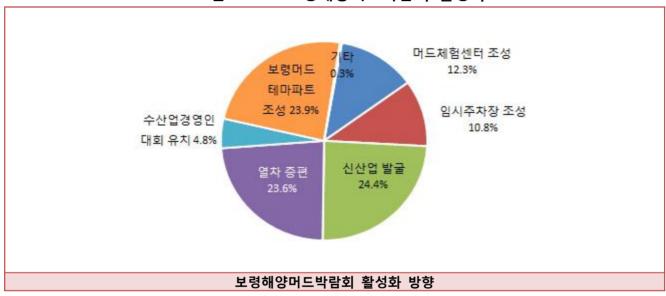
<sup>1) 「</sup>향후 10년 이후에도 보령시에 계속 거주하고 싶은가」에 대한 응답문항임

#### 5-15. 보령해양대드박람회 활성화1)

머드박람회 활성화를 위해 「머드를 활용한 다양한 신산업 발굴」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성은 24.4%이고, 그 중 「40-49세」 응답비율이 26.7%로 가장 높음

- □ (박람회 활성화) 보령해양머드박람회 활성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은 「머드를 활용한 다양한 신산업 발굴」이 24.4%, 「보령머드테마파크 조성」이 23.9%임
- □ (연령별) 「20-49세」의 경우「체험, 놀이, 전시 등 보령머드테마파크 조성」이라 응답한 비율이 높고, 「50세 이상」에서는 「장항선 복선 전철 조기 준공 및 열차 증편」 비율이 높음

<그림 5-15> 보령해양머드박람회 활성화



<표 5-15> 보령해양머드박람회 활성화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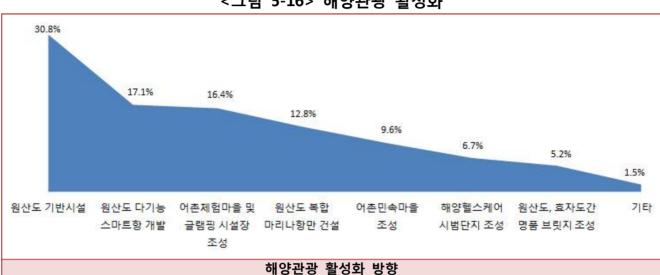
구분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체험을 통한 사계절 머드체험센터 조성	박람회 임시주차장 조성	머드를 활용한 다양한 신산업 발굴	장항선 복선전철 조기 준공 및 열차 증편	한국수산업경 영인 전국대회 유치	체험, 놀이, 전시 등 보령머드 테마파크 조성	기타
<u>계</u>	12.3	10.8	24.4	23.6	4.8	23.9	0.3
20-29세	19.4	6.5	25.8	9.7	0.0	38.7	0.0
30-39세	14.6	10.1	20.2	18.0	5.6	30.3	1.1
40-49세	12.1	12.1	26.7	18.1	4.3	26.7	0.0
50-59세	14.6	9.7	24.2	24.9	4.9	21.8	0.0
60세 이상	10.8	11.2	24.5	26.4	5.0	21.8	0.4

<sup>1)</sup> 보령시 특성문항으로, 「2022년 보령해양머드박람회의 역점 추진 연계사업은 무엇인가」에 대한 응답문항임

#### 5-16. 연육에 따른 해양관광 활성화1)

연육에 따른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 「원산도 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성은 30.8%이고, 그 중 「30-39세」가 22.5%로 응답비율이 가장 높음

- □ (해양관광 활성화)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은 「원산도 기반시설」이 30.8%, 「원산도 다기능 스마트항 개발」이 17.1%임
- □ (연령별) 「모든 연령대」에서 「원산도 기반 시설」이라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그림 5-16> 해양관광 활성화

<표 5-16> 해양관광 활성화

(단위: %)

구분	원산도 다기능 스마트항 개발	원산도 기반시설 (상하수도, 도로, 주차장 등)	원산도 복합 마리나항만 건설	해양 헬스케어 시범단지 조성	어촌 체험마을 및 글램핑 시설장 조성	원산도, 효자도간 명품 브릿지 조성	어촌 민속마을 조성	기타
계	17.1	30.8	12.8	6.7	16.4	5.2	9.6	1.5
20-29세	12.9	29.0	12.9	9.7	16.1	6.5	12.9	0.0
30-39세	22.5	22.5	13.5	4.5	20.2	6.7	9.0	1.1
40-49세	12.9	34.5	11.2	7.8	19.8	2.6	11.2	0.0
50-59세	14.0	32.3	11.0	9.1	18.3	4.9	10.4	0.0
60세 이상	18.4	31.0	13.6	5.9	14.2	5.7	8.8	2.5

<sup>1)</sup> 주 보령시 특성문항으로, 「보령시 연육에 따라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할 사항은 무엇인가」에 대한 응답문항임

#### 5-17. 안전도 제고 방안1)

안전도 제고를 위해「안전시설에 대한 점검 및 불법시설 단속 강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성은 35.9%이고, 그 중「50-59세」가 41.2%로 가장 높음

- □ (안전도 제고) 안전도 제고를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은 「안전시설에 대한 점검·단속 강화」가 35.9%, 「재난·안전 관련 자발적 주민 조직 구성 및 지원」이 18.9%임
- □ (연령별) 「모든 연령대」에서 「안전시설에 대한 점검 및 단속 강화」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그림 5-17> 안전도 제고 방안



<표 5-17> 안전도 제고 방안

(단위: %)

구분	재난대응 시민 안전교육 실시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인력 충원 및 전문 교육 이수 등 전문성 제고	재해취약지역 선정 및 정기점검	안전시설에 대한 점검 및 불법시설 단속 강화	재난·안전 관련 자발적 주민 조직 구성 및 지원	기타
계	11.0	15.3	16.9	35.9	18.9	2.0
20-29세	16.1	9.7	19.4	38.7	16.1	0.0
30-39세	9.0	19.1	14.7	34.8	21.3	1.1
40-49세	16.4	11.2	14.7	29.3	27.6	0.8
50-59세	10.9	11.5	14.0	41.2	20.6	1.8
60세 이상	9.7	17.4	18.6	35.6	16.0	2.7

<sup>1)</sup> 보령시 특성문항으로, 「안전한 보령을 위해 추진할 사항은 무엇인가」에 대한 응답문항임

#### 5-18. 인구시책1)

인구시책으로 「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성은 54.3%이고, 그 중 「50-59세」의 응답 비율이 60.6%로 가장 높음

- □ (인구시책)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인구시책에「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이라고 응답한 여성이 54.3%로 가장 높고, 「출산 장려 및 보육 지원」은 19.7%임
- □ (연령별) 「모든 연령대」에서 「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 <그림 5-18> 인구시책



<표 5-18> 인구시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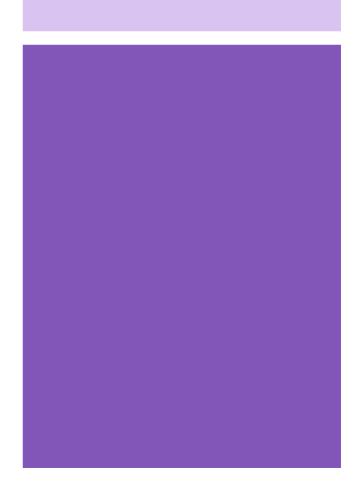
(단위: %)

						(ピカ・/の)
구분	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	출산 장려 및 보육 지원	정주 생활 여건 개선	귀농어,귀촌 유입을 위한 지원 확대	명품 행정 도시 건설	기타
계 	54.3	19.7	3.8	14.5	7.6	0.1
20-29세	54.8	12.9	6.5	9.7	16.1	0.0
30-39세	49.4	25.8	7.9	9.0	7.9	0.0
40-49세	53.5	22.4	1.7	13.8	8.6	0.0
50-59세	60.6	13.9	4.2	15.2	6.1	0.0
60세 이상	53.2	20.3	3.3	15.7	7.3	0.2

<sup>1)</sup> 보령시 특성문항으로, 「보령시 인구증가를 위해 추진할 사항은 무엇인가」에 대한 응답문항임

# $\prod$

## 통계표



### 통계표 목차

1. 인구와 가족 76
1-1. 인구 규모76
1-1-1. 연도별 인구 76
1-1-2. 연령별 인구 76
1-1-3. 읍·면·동별 인구 ······77
1-2. 여성 전입이동 인구 77
1-2-1. 1년 내 여성 전입이동 인구 77
1-2-2. 3년 내 전입이동 여성인구 78
1-2-3. 여성 전입사유 (1년 내 전입인구) 78
1-2-4. 여성 순이동 79
1-3. 가구주 현황 79
1-4. 혼인
1-4-1. 혼인 건수80
1-4-2. 평균 초혼 연령 80
1-4-3. 혼인 형태별 혼인 건수 80
1-5. 연령별 출산율 81
1-6. 이혼 ····· 81
1-6-1. 이혼 건수 81
1-6-2. 동거기간별 이혼 건수 82
2. 경제 현황 및 일자리 82
2-1. 고용보험 피보험자 82
2-2. 가입기간별 고용보험 피보험자 83
2-2-1. 성별 가입기간별 고용보험 피보험자 83

2-2-2. 연령별 가입기간별 여성 고용보험 피보험자 83
2-3. 산업별 고용보험 피보험자84
2-3-1. 성별 산업별 고용보험 피보험자 84
2-3-2. 연령별 산업별 여성 고용보험 피보험자 84
2-4. 고용보험 자격 취득·상실자 85
2-4-1. 고용보험 자격 상실사유 85
2-5. 구직신청 현황 86
2-6. 학력별 구직신청86
2-6-1. 성별 학력별 구직신청 86
2-6-2. 연령별 학력별 여성 구직신청 87
2-7. 희망 고용형태별 구직신청87
2-7-1. 성별 희망 고용형태별 구직신청 ······87
2-7-2. 연령별 희망 고용형태별 여성 구직신청 88
2-8. 연령별 여성 구직희망 직종88
2-9. 여성 구직희망 직종 경력유무 89
2-9-1. 연령별 여성 구직희망 직종 경력기간 89
2-10 구직자 희망 근무지역 89
2-10-1. 성별 구직자 희망 근무지역 89
2-10-2. 연령별 여성 구직자 희망 근무지역 90
2-11. 구직자 희망 월평균 임금90
2-11-1. 성별 구직자 희망 월평균 임금(20세 이하 포함) 90
2-11-2. 연령별 여성 구직자 희망 월평균 임금(20세 이하 포함) 91
3. 주거와 복지 91
3-1. 주택 소유자91
3-1-1. 읍·면·동별 주택 소유자 ······92
3-2. 소유건수별 주택 소유자92

3-2-1. 성별 소유건수별 주택 소유자 92
3-2-2. 연령별 소유건수별 여성 주택 소유자 93
3-3. 거처 유형별 소유 주택수 93
3-3-1. 성별 거처 유형별 소유 주택수 93
3-3-2. 연령별 거처 유형별 여성 소유 주택수 94
3-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인구 94
3-4-1. 읍·면·동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인구 ·······95
3-5. 수급자구분별 여성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인구 95
3-6. 장애인등록 인구 96
3-6-1. 읍·면·동별 장애인등록 인구96
3-7. 장애유형별 여성 장애등록 인구 97
3-8. 장애정도별 여성 장애등록 인구 97
3-9. 국민연금 가입인구 98
3-9-1. 가입기간별 국민연금 가입인구 98
3-9-1. 가입기간별 국민연금 가입인구 98
3-9-1. 가입기간별 국민연금 가입인구 98
3-9-1. 가입기간별 국민연금 가입인구       98         4. 건강       99
3-9-1. 가입기간별 국민연금 가입인구       98         4. 건강       99         4-1. 사망자수       99
3-9-1. 가입기간별 국민연금 가입인구       98         4. 건강       99         4-1. 사망자수       99         4-1-1. 주요 사망원인별 사망자수       99
3-9-1. 가입기간별 국민연금 가입인구       98         4. 건강       99         4-1. 사망자수       99         4-1-1. 주요 사망원인별 사망자수       99         4-2. 건강보험 적용인구       100
3-9-1. 가입기간별 국민연금 가입인구       98         4. 건강       99         4-1. 사망자수       99         4-1-1. 주요 사망원인별 사망자수       99         4-2. 건강보험 적용인구       100         4-2-1. 가입구분별 건강보험 적용인구       100
3-9-1. 가입기간별 국민연금 가입인구       98         4. 건강       99         4-1. 사망자수       99         4-1-1. 주요 사망원인별 사망자수       99         4-2. 건강보험 적용인구       100         4-2-1. 가입구분별 건강보험 적용인구       100         4-2-2. 연령별 가입구분별 여성 건강보험 적용인구       100
3-9-1. 가입기간별 국민연금 가입인구       98         4. 건강       99         4-1. 사망자수       99         4-1-1. 주요 사망원인별 사망자수       99         4-2. 건강보험 적용인구       100         4-2-1. 가입구분별 건강보험 적용인구       100         4-2-2. 연령별 가입구분별 여성 건강보험 적용인구       100         4-3. 건강보험 요양급여실적       101
3-9-1. 가입기간별 국민연금 가입인구       98         4. 건강       99         4-1. 사망자수       99         4-1-1. 주요 사망원인별 사망자수       99         4-2. 건강보험 적용인구       100         4-2-1. 가입구분별 건강보험 적용인구       100         4-2-2. 연령별 가입구분별 여성 건강보험 적용인구       100         4-3. 건강보험 요양급여실적       101         4-4. 주요 만성질환 진료인원       101
3-9-1. 가입기간별 국민연금 가입인구       98         4. 건강       99         4-1. 사망자수       99         4-1-1. 주요 사망원인별 사망자수       99         4-2. 건강보험 적용인구       100         4-2-1. 가입구분별 건강보험 적용인구       100         4-2-2. 연령별 가입구분별 여성 건강보험 적용인구       100         4-3. 건강보험 요양급여실적       101         4-4. 주요 만성질환 진료인원       101         4-5. 주요 만성질환 1인당 진료비       102

5. 지역생활 만족도 103
5-1. 의료시설 및 서비스 만족도 103
5-2. 가족관계 만족도 104
5-3. 자녀 교육환경(공교육) 만족도104
5-4. 자녀 교육환경(사교육) 만족도105
5-5. 직장 만족도 105
5-6. 주거환경 만족도 106
5-7. 환경 체감도
5-8.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5-9. 문화 및 여가활동 만족도 107
5-10. 삶에 대한 만족감108
5-11. 주관적 귀속계층(경제) 108
5-12. 주관적 귀속계층(정치) 109
5-13. 여성에 대한 인권의식
5-14. 지역 정주 의사 110
5-15. 보령해양머드박람회 활성화 방향
5-16. 연육에 따른 해양관광 활성화 방향
5-17. 안전도 제고 방안111
5-18. 인구시책

#### 보령시 여성통계 통계표

#### 1. 인구와 가족<sup>I</sup>

1-1. 인구 규모1)

1-1-1. 연도별 인구

(단위: 명, %)

구분	전체 인구	20세 이상 인구 (A)	20세 이상 여성인구 (B)	여성 비율 (B/A×100)
2020년	100,646	85,754	42,439	49.5
2019년	101,114	85,909	42,544	49.5
2018년	101,990	85,997	42,637	49.6

자료: 보령시「주민등록인구자료」

#### 1-1-2. 연령별 인구

(단위: 명, %)

						(E11: 87 %)
구분	전체 (A)	여성 (B)	구성비	남성	구성비	여성 비율 (B/A×100)
계	85,754	42,439	100.0	43,315	100.0	49.5
20-29세	9,660	4,041	9.5	5,619	13.0	41.8
30-39세	9,786	4,487	10.6	5,299	12.2	45.9
40-49세	14,177	6,403	15.1	7,774	18.0	45.2
50-59세	17,430	8,172	19.3	9,258	21.4	46.9
60-69세	16,461	8,423	19.9	8,038	18.6	51.2
70세 이상	18,240	10,913	25.7	7,327	16.9	59.8

I. 별도 표기가 없는 경우 2020년 4월 30일 기준 자료임

<sup>1)</sup>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거주자, 거주불명자, 재외국인을 포함한 수치(외국인 제외)이며, 연령은 만 20세 이상을 대상으로 작성하였음

1-1-3. 읍·면·동별 인구

(단위: 명, %)

구분	전체	여성		남성		여성 비율
I E	(A)	(B)	구성비		구성비	(B/A×100)
계	100,646	49,715	100	50,931	100	49.4
웅천읍	6,382	3,136	6.3	3,246	6.4	49.1
주포면	1,633	780	1.6	853	1.7	47.8
주교면	5,381	2,569	5.2	2,812	5.5	47.7
오천면	5,011	2,347	4.7	2,664	5.2	46.8
천북면	3,632	1,757	3.5	1,875	3.7	48.4
청소면	2,672	1,352	2.7	1,320	2.6	50.6
청라면	3,966	1,966	4.0	2,000	3.9	49.6
남포면	5,177	2,563	5.2	2,614	5.1	49.5
주산면	2,483	1,271	2.6	1,212	2.4	51.2
미산면	1,787	865	1.7	922	1.8	48.4
성주면	2,314	1,161	2.3	1,153	2.3	50.2
대천1동	14,763	7,329	14.7	7,434	14.6	49.6
대천2동	7,026	3,503	7.0	3,523	6.9	49.9
대천3동	16,797	8,379	16.9	8,418	16.5	49.9
대천4동	15,029	7,579	15.2	7,450	14.6	50.4
대천5동	6,593	3,158	6.4	3,435	6.7	47.9

자료: 보령시「주민등록인구자료」

#### 1-2. 여성 전입이동 인구

#### 1-2-1. 1년 내 여성 전입이동1) 인구

(단위: 명, %)

						(단위, 명, %)	
7	·분	1년 내 전입 여성인구			20세 이상 여성인구	전입인구 비율	
•		(A)	보령시 내 <sup>2)</sup>	보령시 외	(B)	(A/B×100)	
7	계	5,720	3,760	1,960	42,439	13.5	
	구성비	100.0	65.7	34.3	42,433	13.3	
20-	29세	1,058	550	508	4,041	26.2	
	구성비	100.0	52.0	48.0	4,041	20.2	
30-	39세	1,166	788	378	4,487	26.0	
	구성비	100.0	67.6	32.4	4,487		
40-	49세	1,119	814	305	6,403	17.5	
	구성비	100.0	72.7	27.3	0,403	17.5	
50-	59세	1,038	715	323	8,172	12.7	
	구성비	100.0	68.9	31.1	0,172	12.7	
60-	69세	740	500	240	8,423	8.8	
	구성비	100.0	67.6	32.4	0,425	0.0	
70세	이상	599	393	206	10,913	5.5	
	구성비	100.0	65.6	34.4	10,915	5.5	

<sup>1)</sup> 전입시기: 2019.5.1. ~ 2020.4.30.

<sup>2)</sup> 보령시 내에서의 전입은 이동전후 행정 읍면동이 다른 전입을 의미하고, 보령시 외에서의 전입은 이동전후 시군구 또는 시도가 다른 전입을 의미함

#### 1-2-2. 3년 내 전입이동1) 여성인구

(단위: 명, %)

7	년	3년 내 전입 여성인구			20세 이상 여성인구	전입인구 비율 (A/B×100)
•	_	(A)	보령시 내	보령시 외	여성인구 (B)	(A/B×100)
	계	12,661	8,439	4,222	42,439	29.8
	구성비	100.0	66.7	33.3	42,439	29.0
20-	29세	2,014	1,083	931	4.041	40.9
	구성비	100.0	53.8	46.2	4,041	49.8
30-	39세	2,548	1,720	828	4.407	56.8
	구성비	100.0	67.5	32.5	4,487	
40-	49세	2,508	1,882	626	6,403	39.2
	구성비	100.0	75.0	25.0		39.2
50-	59세	2,440	1,702	738	0.170	20.0
	구성비	100.0	69.8	30.2	8,172	29.9
60-	69세	1,724	1,121	603	0.422	20.5
	구성비	100.0	65.0	35.0	8,423	20.5
70세	이상	1,427	931	496	10.012	12.1
	구성비	100.0	65.2	34.8	10,913	13.1

\_\_\_\_\_ 자료: 보령시「주민등록인구자료」

#### 1-2-3. 여성 전입사유 (1년 내 전입인구)

(단위: 명, %)

구분	1년 내 전입 여성인구	주택	가족	직업	기타 <sup>2)</sup>
계	5,720	2,752	1,427	942	599
구성비	100.0	48.1	24.9	16.5	10.5
20-29세	1,058	340	333	288	97
구성비	100.0	32.1	31.5	27.2	9.2
30-39세	1,166	524	308	235	99
구성비	100.0	44.9	26.4	20.2	8.5
40-49세	1,119	614	215	164	126
구성비	100.0	54.9	19.2	14.7	11.3
50-59세	1,038	564	213	167	94
구성비	100.0	54.3	20.5	16.1	9.1
60-69세	740	420	167	63	90
구성비	100.0	56.8	22.6	8.5	12.2
70세 이상	599	290	191	25	93
구성비	100.0	48.4	31.9	4.2	15.5

<sup>1)</sup> 전입시기: 2017.5.1. ~ 2020.4.30.

<sup>2)</sup> 기타는 교육, 교통, 건강, 귀농, 그 밖의 사유 등이 포함됨

#### 1-2-4. 여성 순이동

(단위: 명, %)

구분		순이동자수 <sup>1)</sup>			순이동률 <sup>2)</sup>	
<b>丁</b> 亚	2017년	2018년	2019년	2017년	2018년	2019년
계	-132	-260	-152	-0.3	-0.5	-0.3
20-29세	-215	-234	-239	-9.4	-10.9	-11.2
30-39세	36	-16	-33	1.5	-0.7	-1.3
40-49세	-10	-56	40	-0.3	-1.7	1.1
50-59세	85	51	56	1.9	1.2	1.4
60-69세	25	6	53	0.7	0.1	1.2
70세 이상	-53	-11	-29	-1.5	-0.2	-0.6

자료: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 1-3. 가구주 현황

(단위: 명, %)

						(E II: 87 %)
구분	전체 (A)	여성 (B)	구성비	남성	구성비	여성 비율 (B/A×100)
계	48,209	16,202	100.0	32,007	100.0	33.6
20-29세	1,994	732	4.5	1,262	3.9	36.7
30-39세	4,459	1,263	7.8	3,196	10.0	28.3
40-49세	7,816	2,201	13.6	5,615	17.5	28.2
50-59세	10,775	2,973	18.3	7,802	24.4	27.6
60-69세	10,523	3,194	19.7	7,329	   22.9	30.4
70세 이상	12,642	5,839	36.0	6,803	21.3	46.2

<sup>1)</sup> 순이동자수(명) = 전입자 수-전출자 수

<sup>2)</sup> 순이동률(%) = 순이동자수/주민등록 연앙인구×100

#### 1-4. 혼인

#### 1-4-1. 혼인 건수<sup>1)</sup>

(단위: 건, %, 천명당 건)

					(2.11)	
구분	여성	구성비	여성 혼인율 <sup>2)</sup>	남성	구성비	남성 혼인율
계	337	100.0	7.3	408	100.0	8.4
20-24세	29	8.6	12.5	12	2.9	3.9
25-29세	95	28.2	51.6	71	17.4	26.9
30-34세	93	27.6	46.9	121	29.7	51.2
35-39세	42	12.5	15.5	72	17.6	22.4
40-44세	26	7.7	9.0	42	10.3	12.1
45-49세	14	4.2	4.0	30	7.4	7.0
50-54세	18	5.3	4.8	20	4.9	4.6
55-59세	9	2.7	2.0	19	4.7	3.9
60세 이상	11	3.3	0.4	21	5.1	1.2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 1-4-2. 평균 초혼 연령

(단위: 세,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여성	28.0	27.9	28.5	28.5	28.8	29.1	29.6	29.6	29.7	29.3	30.2
남성	31.7	32.0	32.4	32.2	32.0	32.6	32.7	33.2	32.8	33.3	33.6

자료: 통계청「인구동향조사」

#### 1-4-3. 혼인 형태별 혼인 건수3)

(단위: 건, %)

구	구분 2017년 ┌───── 구성비		2018년 구성비		2019년	구성비	
<u></u>		443	100.0	430	100.0	408	100.0
여성	초혼	315	71.1	298	69.3	276	67.6
	재혼	128	28.9	132	30.7	132	32.4
남성	초혼	328	74.0	307	71.4	289	70.8
	재혼	115	26.0	123	28.6	119	29.2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sup>1)</sup> 성별 혼인 건수는 남녀 각각의 주소지 기준

<sup>2)</sup> 혼인율(건) = 혼인건수/주민등록 연앙인구×1,000

<sup>3)</sup> 아내의 주소지 기준, 미상 제외

#### 1-5. 연령별 출산율1)

(단위: 명)

구분	합계 출산율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2009년	1.3	2.7	27.6	100.4	102.0	23.7	3.1	0.2	
2010년	1.4	2.7	23.5	113.9	108.1	26.9	2.5	0.0	
2011년	1.5	3.3	32.2	103.0	112.9	35.2	3.9	0.3	
2012년	1.4	2.0	27.6	91.2	115.2	34.5	3.3	0.3	
2013년	1.2	1.3	22.2	84.5	103.1	30.9	4.1	0.0	
2014년	1.4	1.0	24.2	82.9	120.5	39.4	5.1	0.0	
2015년	1.3	2.1	23.6	83.8	99.9	43.7	5.7	0.6	
2016년	1.3	2.2	22.7	81.3	105.9	46.5	4.4	0.0	
2017년	1.2	1.1	12.6	62.1	98.7	51.9	5.2	0.0	
2018년	1.0	0.0	10.1	56.4	91.2	39.0	7.8	0.0	
2019년	1.1	1.7	15.1	60.2	100.8	35.8	4.8	0.0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 1-6. 이혼

#### 1-6-1. 이혼 건수2)

(단위: 건, %, 천명당 건)

					(2 11: 1	2, 7%, 1.00 1.7
구분	여성	구성비	여성 이혼율 <sup>3)</sup>	남성	구성비	남성 이혼율
계	167	100.0	3.6	220	100.0	4.5
20-24세	*	*	0.3	*	*	0.9
25-29세	*	   * 	4.2	*	   * 	2.7
30-34세	12	7.2	5.1	12	5.5	6.0
35-39세	29	l   17.4	9.0	24	l l 10.9	8.9
40-44세	24	14.4	6.9	33	15.0	11.4
45-49세	27	16.2	6.3	36	l l 16.4	10.2
50-54세	27	16.2	6.2	36	16.4	9.7
55-59세	16	9.6	3.3	38	17.3	8.3
60세 이상	20	12.0	1.1	34	15.5	1.4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sup>1)</sup> 연령별 출산율(명) = 산모의 해당 연령집단별 출생아수/해당 연령집단의 여성인구×1,000

<sup>2)</sup> 성별 이혼 건수는 남녀 각각의 주소지 기준

<sup>3)</sup> 이혼율(건) = 이혼 건수/주민등록 연앙인구×1,000

#### 1-6-2. 동거기간별 이혼 건수

(단위: 건, %)

구분	여성	   구성비	남성	   구성비		
<u></u> 계	167	100.0	220	100.0		
4년 이하	21	12.6	40	18.2		
5~9년	39	23.4	47	21.4		
10~14년	27	16.2	31	   14.1		
15~19년	22	     13.2	31	 		
20년 이상	58	     34.7	71	1     32.3		
평균혼인지속기간	16.	2년	15.6년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 2. 경제 현황 및 일자리<sup>표</sup>

#### 2-1. 고용보험 피보험자 $^{1)}$

(단위: 명, %)

구분	피보험자 (A)	여성 (B)	구성비	남성	구성비	여성비율 (B/A×100)
계	19,669	7,989	100.0	11,680	100.0	40.6
20-29세	2,278	935	11.7	1,343	11.5	41.0
30-39세	3,935	1,423	17.8	2,512	21.5	36.2
40-49세	5,353	2,059	25.8	3,294	28.2	38.5
50-59세	4,988	2,190	27.4	2,798	24.0	43.9
60세 이상	3,115	1,382	17.3	1,733	   14.8 	44.4

Ⅱ. 별도 표기가 없는 경우, 2019년 12월 31일 기준 자료임

<sup>1)</sup> 고용보험자료는 중복자 제외된 자료이며 피보험자 대상에는 외국인도 포함되어 있고, 지역분류는 사업장(최종근무지) 주소 기준임

#### 2-2. 가입기간별 고용보험 피보험자 2-2-1. 성별 가입기간별 고용보험 피보험자<sup>1)</sup>

(단위: 명, %)

구분	피보험자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계	19,798	100.0	5,530	100.0	5,465	100.0	2,457	100.0	3,144	100.0	3,202	100.0
여성	8,048	40.7	2,643	47.8	2,416	   44.2	993	40.4	1,238	39.4	758	23.7
남성	11,750	59.3	2,887	52.2	3,049	     55.8 	1,464	59.6	1,906	60.6	2,444	     76.3 

자료: 고용노동부「고용보험자료」

#### 2-2-2. 연령별 가입기간별 여성 고용보험 피보험자

(단위: 명, %)

٦	1분	여성 피보험자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계	8,048	2,643	2,416	993	1,238	758
	구성비	100.0	32.8	30.0	12.3	15.4	9.4
19서	이하	59	50	9	-	-	-
	 구성비	100.0	84.7	15.3			-
20-	29세	935	381	358	133	*	*
	구성비	100.0	40.7	38.3	14.2	*	*
30-	39세	1,423	415	389	182	290	147
	구성비	100.0	29.2	27.3	12.8	20.3	10.3
40-	49세	2,059	585	595	297	326	256
	구성비	100.0	28.4	28.9	14.4	15.8	12.4
50-	-59세	2,190	633	625	245	392	295
	구성비	100.0	28.9	28.5	11.2	17.9	13.5
60서	이상	1,382	579	440	136	169	58
	구성비	100.0	41.9	31.8	9.8	12.2	4.2

<sup>1)</sup> 가입기간 분류는 20세 미만 피보험자 포함한 수치임

#### 2-3. 산업별<sup>1)</sup> 고용보험 피보험자 2-3-1. 성별 산업별 고용보험 피보험자

(단위 : 명, %)

구분			제2	E업	도마 소미	l 및 #업	숙빅 음식	† 및 점업	교육서	비스업	보건 <sup>(</sup> 사회 서비	복지	기	<b>=</b> ├ <sup>2)</sup>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계	19,798	100.0	4,433	100.0	1,141	100.0	833	100.0	803	100.0	3,196	100.0	9,392	100.0
여성	8,048	40.7	1,433	32.3	472	41.4	537	64.5	587	73.1	2,760	86.4	2,259	24.1
남성	11,750	59.3	3,000	67.7	669	58.6	296	35.5	216	26.9	436	13.6	7,133	75.9

자료: 고용노동부「고용보험자료」

#### 2-3-2. 연령별 산업별 여성 고용보험 피보험자

(단위 : 명, %)

	구분	여성 피보험자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 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기타
	_계	8,048	1,433	472	537	587	2,760	2,259
	구성비	100.0	17.8	5.9	6.7	7.3	34.3	28.0
20	세 미만	59	21	7	12	*	*	14
	구성비	100.0	35.6	11.9	20.3	*	*	23.7
2	0-29세	935	167	72	74	51	263	308
	구성비	100.0	17.9	7.7	7.9	5.5	28.1	32.9
3	0-39세	1,423	267	98	58	92	440	468
	구성비	100.0	18.8	6.9	4.1	6.5	30.9	32.9
4	0-49세	2,059	337	135	87	208	655	637
	구성비	100.0	16.4	6.6	4.2	10.1	31.8	30.9
5	0-59세	2,190	441	120	198	184	757	490
	구성비	100.0	20.1	5.5	9.0	8.4	34.6	22.4
60	세 이상	1,382	200	40	108	51	641	342
	구성비	100.0	14.5	2.9	7.8	3.7	46.4	24.7

<sup>1)</sup> 산업분류는 최종근무지 기준이며 20세 미만 피보험자는 포함, 결측치는 제외하였음

<sup>2)</sup> 기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을 제외한 나머지 산업

#### 2-4. 고용보험 자격 취득·상실자<sup>1)</sup>

(단위: 명, %)

		(11, 6, 70)					
구분	피보	험자	취득	특자	상실자		
계		19,798		753	1,00		
남성		11,750		403		482	
여성	8,048	100.0	350	100.0	524	100.0	
20세 미만	59	0.7	13	3.7	6	1.1	
20-29세	935	11.6	46	13.1	66	12.6	
30-39세	1,423	17.7	41	11.7	56	10.7	
40-49세	2,059	25.6	81	23.1	77	14.7	
50-59세	2,190	27.2	88	25.1	80	15.3	
60세 이상	1,382	17.2	81	23.1	239	45.6	

자료: 고용노동부「고용보험자료」

#### 2-4-1. 고용보험 자격 상실사유

(단위: 명, %)

구분	여성	 구성비	남성	 구성비
계	524	100.0	482	100.0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165	31.5	199	41.3
계약만료, 공사종료	233	44.5	198	   41.1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	35	6.7	44	9.1
폐업, 도산	40	7.6	*	   * 
기타	51	     9.7	*	   * 

<sup>1)</sup> 고용보험 취득자수와 상실자수는 2019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1년간)을 대상으로 함

#### 2-5. 구직신청 현황1)

(단위: 건)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I Œ	합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합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합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계	7,855	1,888	2,231	1,682	2,054	6,421	1,959	1,679	1,285	1,498	6,253	1,888	1,483	1,288	1,594
남성	3,362	684	876	771	1,031	2,666	716	699	593	658	2,837	874	653	621	689
여성	4,493	1,204	1,355	911	1,023	3,755	1,243	980	692	840	3,416	1,014	830	667	905
20-29세	826	213	197	198	218	737	206	204	166	161	698	205	175	152	166
30-39세	864	251	214	200	199	806	251	209	160	186	772	213	199	151	209
40-49세	975	324	215	218	218	935	310	241	155	229	839	276	208	160	195
50-59세	664	188	151	152	173	658	190	173	119	176	646	189	157	122	178
 60세 이상	1,164	228	578	143	215	619	286	153	92	88	461	131	91	82	157

자료: 고용노동부「구직자 신청」

#### 2-6. 학력별 구직신청

#### 2-6-1. 성별 학력별2) 구직신청3)

(단위: 건, %)

구분	구직신청		중졸	이하	고등	학교	대졸 이상		
TE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계	6,253	100.0	1,273	100.0	2,820	100.0	2,160	100.0	
여성	3,416	54.6	679	53.3	1,509	53.5	1,228	56.9	
남성	2,837	45.4	594	46.7	1,311	46.5	932	43.1	

<sup>1)</sup> 각 년도별 1월 1일 ~ 12월 31일(1년간) 신규 구직인원 산정

<sup>2) &#</sup>x27;중졸 이하'에는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중퇴, 검정고시, 독학사, 미입력이 포함되고, '고등학교'에는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중퇴, 검정고시가 포함되며, '대졸 이상'에는 대학교 재학, 휴학, 졸업, 졸업예정, 전문대학, 대학원수료, 졸업이 포함되어 있음

<sup>3) 2019</sup>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1년간) 신규 구직인원 산정

#### 2-6-2. 연령별 학력별 여성 구직신청

(단위: 건, %)

구분	여성 구직신청	중졸 이하	고등학교	대졸 이상
계	3,416	679	1,509	1,228
구성비	100.0	19.9	44.2	35.9
20-29세	698	18	317	363
구성비	100.0	2.6	45.4	52.0
30-39세	772	40	300	432
구성비	100.0	5.2	38.9	56.0
40-49세	839	45	498	296
구성비	100.0	5.4	59.4	35.2
50-59세	646	233	303	110
구성비	100.0	36.1	46.9	17.0
60세 이상	461	343	91	27
구성비	100.0	74.4	19.7	5.9

자료: 고용노동부「구직자 신청」

#### 2-7. 희망 고용형태별 구직신청

#### 2-7-1. 성별 희망 고용형태별 구직신청

(단위: 건, %)

구분	구직신청		정 없	<sup>간의</sup> 함이 는 계약	기간 정함 없 근로 (시간	함이 는 계약	기간 정함 있 근로	함이 는	기간 정함 있 근로 (시간	함이 는 계약	일용	용직	관계	없음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계	6,253	100.0	4,141	100.0	265	100.0	318	100.0	78	100.0	32	100.0	1,419	100.0
여성	3,416	54.6	2,261	   54.6 	205	77.4	133	41.8	59	75.6	23	71.9	735	51.8
남성	2,837	     45.4 	1,880	     45.4 	60	22.6	185	58.2	19	24.4	9	28.1	684	48.2

#### 2-7-2. 연령별 희망 고용형태별 여성 구직신청

(단위: 건, %)

구분	여성 구직신청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시간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기간의 정합이 있는 근로계약 (시간제)	일용직	관계없음
계	3,416	2,261	205	133	59	23	735
구성비	100.0	66.2	6.0	3.9	1.7	0.7	21.5
20-29세	698	407	29	28	*	*	225
구성비	100.0	58.3	4.2	4.0	*	*	32.2
30-39세	772	435	61	19	*	*	235
구성비	100.0	56.3	7.9	2.5	*	*	30.4
40-49세	839	614	48	20	13	7	137
구성비	100.0	73.2	5.7	2.4	1.5	0.8	16.3
50-59세	646	470	42	30	15	6	83
구성비	100.0	72.8	6.5	4.6	2.3	0.9	12.8
60세 이상	461	335	25	36	*	*	55
구성비	100.0	72.7	5.4	7.8	*	*	11.9

자료: 고용노동부「구직자 신청」

#### 2-8. 연령별 여성 구직희망 직종

(단위: 건, %)

							(11. 11. 11. 70)
	구분	여성 구직신청	경영·회계·사무 관련직	환경·인쇄· 목재·가구· 공예 및 생산 단순직	음식서비스 관련직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기타 <sup>1)</sup>
	계	3,416	1,092	297	309	310	1,408
	구성비	100.0	32.0	8.7	9.0	9.1	41.2
2	0-29세	698	363	44	32	44	215
	구성비	100.0	52.0	6.3	4.6	6.3	30.8
3	0-39세	772	333	74	24	90	251
	구성비	100.0	43.1	9.6	3.1	11.7	32.5
4	0-49세	839	314	91	48	102	284
	구성비	100.0	37.4	10.8	5.7	12.2	33.8
5	0-59세	646	78	46	118	59	345
	구성비	100.0	12.1	7.1	18.3	9.1	53.4
60	세 이상	461	*	42	87	*	313
	구성비	100.0	*	9.1	18.9	*	67.9

<sup>1)</sup> 기타는 보건·의료 관련직, 영업 및 판매 관련직, 단순노무직(경비 및 청소), 기계 관련직, 전기·전자 관련직 등이 해당됨

#### 2-9. 여성 구직희망 직종 경력유무

(단위: 건, %)

구분	여성 구직신청	경력있음	경력없음
계	3,416	1,855	1,561
구성비	100.0	54.3	45.7

자료: 고용노동부「구직자 신청」

#### 2-9-1. 연령별 여성 구직희망 직종 경력기간

(단위: 건, %)

구분		경력있음	1년미만	1년~3년 미만	3년~5년 미만	5년 이상
계	계		120	452	319	964
구성	3 4 1	100.0	6.5	24.4	17.2	52.0
20-29세		293	39	132	79	43
구성	<del>ј</del> Ш	100.0	13.3	45.1	27.0	14.7
30-39세		488	16	109	89	274
구성	311	100.0	3.3	22.3	18.2	56.1
40-49세		493	28	99	79	287
구성	<del>ј</del> Ш	100.0	5.7	20.1	16.0	58.2
50-59세		358	26	73	41	218
구성	텔	100.0	7.3	20.4	11.5	60.9
60세 이상		223	11	39	31	142
구성	3 4 1	100.0	4.9	17.5	13.9	63.7

자료: 고용노동부「구직자 신청」

#### 2-10 구직자 희망 근무지역 2-10-1. 성별 구직자 희망 근무지역

(단위: 건, %)

구분	구직	신청	보형	령시	보령시 외		
1 &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계	6,253	100.0	5,203	100.0	1,050	100.0	
여성	3,416	54.6	3,087	59.3	329	31.3	
남성	2,837	45.4	2,116	40.7	721	68.7	

2-10-2. 연령별 여성 구직자 희망 근무지역

(단위: 건, %)

구년	Ē	여성 구직신청	보령시	보령시 외
계		3,416	3,087	329
	구성비	100.0	90.4	9.6
20-29	9세	698	506	192
	구성비	100.0	72.5	27.5
30-39	9세	772	707	65
	구성비	100.0	91.6	8.4
40-49	9세	839	804	35
	구성비	100.0	95.8	4.2
50-59	9세	646	617	29
	구성비	100.0	95.5	4.5
60세	이상	461	453	8
	구성비	100.0	98.3	1.7

자료: 고용노동부「구직자 신청」

#### 2-11. 구직자 희망 월평균 임금

#### 2-11-1. 성별 구직자 희망 월평균 임금(20세 이하 포함)

(단위: 건, %)

구분	구직 신청		100	만원 만	100만 150만위		150만 200만위	반원~ 원 미만	200면 250만원		250만위	원 이상	기 (무용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계	6,443	100.0	17	100.0	52	100.0	3,265	100.0	1,445	100.0	1,395	100.0	269	100.0
여성	3,521	   54.6	12	70.6	46	88.5	2,389	73.2	730	50.5	232	16.6	112	41.6
남성	2,922	45.4	5	29.4	6	11.5	876	26.8	715	49.5	1,163	83.4	157	58.4

#### 2-11-2. 연령별 여성 구직자 희망 월평균 임금(20세 이하 포함)

(단위: 건, %)

	구분	여성 구직신청	100만원 미만	100만원~ 150만원 미만	150만원~ 200만원 미만	200만원~ 250만원 미만	250만원 이상	기타 (무응답)
	계	3,521	12	46	2,389	730	232	112
	구성비	100.0	0.3	1.3	67.9	20.7	6.6	3.2
19	세 이하	105	-	-	59	32	9	5
	구성비	100.0			56.2	30.5	8.6	4.7
2	0-29세	698	*	*	401	179	45	63
	구성비	100.0	*	*	57.4	25.6	6.4	9.0
3	0-39세	772	6	11	483	175	72	25
	구성비	100.0	0.8	1.4	62.6	22.7	9.3	3.2
4	0-49세	839	*	*	608	152	57	10
	구성비	100.0	*	*	72.5	18.1	6.8	1.2
5	0-59세	646	*	11	446	144	38	*
	구성비	100.0	*	1.7	69.0	22.3	5.9	*
60	세 이상	461	*	6	392	48	11	*
	구성비	100.0	*	1.3	85.0	10.4	2.4	*

자료: 고용노동부「구직자 신청」

#### 3. 주거와 복지<sup>표</sup>

#### 3-1. 주택 소유자

(단위: 명, %)

구분	주택 소유자 <sup>1)</sup>		여성 주택 소유자		남성		어셩 비율
1 4	(A)	구성비	(B)	구성비	주택 소유자	구성비	(B/A×100)
계	30,078	100.0	12,864	100.0	17,214	100.0	42.8
20-29세	317	1.1	134	1.0	183	1.1	42.3
30-39세	2,131	7.1	799	6.2	1,332	7.7	37.5
40-49세	4,693	15.6	1,997	15.5	2,696	15.7	42.6
50-59세	6,605	22.0	2,884	22.4	3,721	21.6	43.7
60-69세	7,185	23.9	2,967	23.1	4,218	24.5	41.3
70세 이상	9,147	30.4	4,083	31.7	5,064	29.4	44.6

자료: 보령시「재산세자료」

Ⅲ. 재산세자료는 2020년 6월 1일 기준이며, 그 외에는 별도 표기가 없는 경우 2019년 12월 31일 기준 자료임

<sup>1)</sup> 개인이 소유한 주택으로 국가, 법인, 종중 등의 단체가 소유한 주택, 창고, 기숙사, 사원아파트는 제외

#### 3-1-1. 읍·면·동별 주택 소유자

(단위: 명, %)

구분	주택 소유자 (A)	구성비	여성 주택 소유자 (B)	구성비	남성 주택 소유자	     구성비	여성 비율 (B/A×100)
계	30,078	100.0	12,864	100.0	17,214	100.0	42.8
웅천읍	2,157	7.2	933	7.3	1,224	7.1	43.3
주포면	524	1.7	210	1.6	314	1.8	40.1
주교면	1,526	5.1	584	4.5	942	5.5	38.3
오천면	1,586	5.3	544	4.2	1,042	6.1	34.3
천북면	1,121	3.7	341	2.7	780	4.5	30.4
청소면	1,003	3.3	347	2.7	656	3.8	34.6
청라면	1,417	4.7	504	3.9	913	5.3	35.6
남포면	1,852	6.2	716	5.6	1,136	6.6	38.7
주산면	973	3.2	365	2.8	608	3.5	37.5
미산면	652	2.2	252	2.0	400	2.3	38.7
성주면	740	2.5	334	2.6	406	2.4	45.1
대천1동	3,669	12.2	1,735	13.5	1,934	11.2	47.3
대천2동	1,965	6.5	927	7.2	1,038	6.0	47.2
대천3동	4,601	15.3	2,152	16.7	2,449	14.2	46.8
대천4동	4,439	14.8	2,097	16.3	2,342	13.6	47.2
대천5동	1,853	6.2	823	6.4	1,030	6.0	44.4

자료: 보령시「재산세자료」

#### 3-2. 소유건수1)별 주택 소유자

#### 3-2-1. 성별 소유건수별 주택 소유자

(단위: 명, %)

구분	주택 :	소유자	1호 2호		호	3호 이상		
, E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계	30,078	100.0	22,590	100.0	5,480	100.0	2,008	100.0
여성	12,864	42.8	9,880	43.7	2,192	40.0	792	39.4
남성	17,214	57.2	12,710	56.3	3,288	60.0	1,216	60.6

자료: 보령시「재산세자료」

<sup>1)</sup> 각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소유 지분을 고려하지 않음. 예를 들어, 어느 개인이 단독으로 1호를 소유하고 공동으로 다른 1호를 소유한 경우 2호로 계산함

#### 3-2-2. 연령별 소유건수별 여성 주택 소유자

(단위: 명, %)

구분	여성 주택 소유자	1호	2호	3호 이상
계	12,864	9,880	2,192	792
구성비	100.0	76.8	17.0	6.2
20-29세	134	123	*	*
구성비	100.0	91.8	*	*
30-39세	799	720	62	17
구성비	100.0	90.1	7.8	2.1
40-49세	1,997	1,655	246	96
구성비	100.0	82.9	12.3	4.8
50-59세	2,884	2,237	451	196
구성비	100.0	77.6	15.6	6.8
60-69세	2,967	2,227	530	210
구성비	100.0	75.1	17.9	7.1
70세이상	4,083	2,918	894	271
구성비	100.0	71.5	21.9	6.6

자료: 보령시「재산세자료」

#### 3-3. 거처 유형별 소유 주택수

#### 3-3-1. 성별 거처 유형별 소유 주택수

(단위: 호, %)

구분	소유 즉	주택수	단독	두택 <sup>1)</sup>	아피	트	연립	주택	다세다	내주택	기	<b>∔</b> ²)
1 🗠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계	41,462	100.0	26,962	100.0	12,840	100.0	1,009	100.0	571	100.0	80	100.0
여성	17,408	42.0	10,346	38.4	6,223	48.5	520	51.5	287	50.3	32	40.0
남성	24,054	58.0	16,616	61.6	6,617	51.5	489	48.5	284	49.7	48	60.0

자료: 보령시「재산세자료」

<sup>1)</sup>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전업농어가주택포함(창고제외)

<sup>2)</sup>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오피스텔 포함(기숙사 제외)

#### 3-3-2. 연령별 거처 유형별 여성 소유 주택수

(단위: 호, %)

	구분	여성 소유 주택수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타
	계	17,408	10,346	6,223	520	287	32
	구성비	100.0	59.4	35.7	3.0	1.6	0.2
2	0-29세	156	39	101	9	*	*
	구성비	100.0	25.0	64.7	5.8	*	*
3	0-39세	922	171	694	32	*	*
	구성비	100.0	18.5	75.3	3.5	*	*
4	0-49세	2,553	713	1,699	59	71	11
	구성비	100.0	27.9	66.5	2.3	2.8	0.4
5	0-59세	4,012	1,955	1,785	162	96	14
	구성비	100.0	48.7	44.5	4.0	2.4	0.3
6	0-69세	4,125	2,738	1,170	152	*	*
	구성비	100.0	66.4	28.4	3.7	*	*
70	· 에이상	5,640	4,730	774	106	30	0
	구성비	100.0	83.9	13.7	1.9	0.5	0.0

자료: 보령시「재산세자료」

#### 3-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인구1)

(단위: 명, %)

구분	총 수급인구 (A)	여성 (B)	구성비	남성	구성비	여성 비율 (B/A×100)
<u></u> 계	4,161	2,363	100.0	1,798	100.0	56.8
20-29세	161	82	3.5	79	4.4	50.9
30-39세	225	113	4.8	112	6.2	50.2
40-49세	580	297	12.6	283	   15.7 	51.2
50-59세	804	331	14.0	473	26.3	41.2
60-69세	883	469	19.8	414	23.0	53.1
70세 이상	1,508	1,071	     45.3 	437	 	71.0

자료: 보령시「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료」,「주민등록인구자료」

<sup>1)</sup>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료는 2020년 4월 30일 기준임

3-4-1. 읍·면·동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인구

(단위: 명, %)

구분	총 수급인구 (A)	여성 (B)	구성비	남성	구성비	여성 비율 (B/A×100)
계	4,161	2,363	100.0	1,798	100.0	56.8
웅천읍	278	157	6.6	121	6.7	56.5
주포면	71	36	1.5	35	1.9	50.7
주교면	388	194	8.2	194	10.8	50.0
오천면	132	75	3.2	57	3.2	56.8
천북면	137	81	3.4	56	3.1	59.1
청소면	117	72	3.0	45	2.5	61.5
청라면	159	76	3.2	83	4.6	47.8
남포면	245	139	5.9	106	5.9	56.7
주산면	132	75	3.2	57	3.2	56.8
미산면	63	36	1.5	27	1.5	57.1
성주면	155	91	3.9	64	3.6	58.7
대천1동	542	308	13.0	234	13.0	56.8
대천2동	199	114	4.8	85	4.7	57.3
대천3동	442	266	11.3	176	9.8	60.2
대천4동	910	529	22.4	381	21.2	58.1
대천5동	191	114	4.8	77	4.3	59.7

자료: 보령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료」, 「주민등록인구자료」

#### 3-5. 수급자구분별1) 여성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인구

(단위: 명, %)

구	·분	여성 수급인구	일반수급자	시설수급자	조건부 및 특례수급자		
7	계	2,363	1,975	170	218		
	구성비	100.0	83.6	7.2	9.2		
20-2	29세	82	52	*	28		
	구성비	100.0	63.4	*	34.1		
30-3	39세	113	74	23	16		
	구성비	100.0	65.5	20.4	14.2		
40-4	49세	297	217	40	40		
	구성비	100.0	73.1	13.5	13.5		
50-	59세	331	246	40	45		
	구성비	100.0	74.3	12.1	13.6		
60 -	69세	469	423	11	35		
	구성비	100.0	90.2	2.3	7.5		
70세	이상	1,071	963	54	54		
	구성비	100.0	89.9	5.0	5.0		

자료: 보령시「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료」,「주민등록인구자료」

<sup>1) &#</sup>x27;시설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32조(보장시설), 동별 시행령 제38조(보장시설),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의 2(보장 시설)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에 입소한 수급자이며, '조건부수급자'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중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이고, '특례수급자'는 의료, 교육, 자활특례 수급자를 나타내며, 이 외의 수급자는 '일반 수급자'임

#### 3-6. 장애인등록 인구1)

(단위: 명, %)

구분	총 등록인구 (A)	여성 (B)	   구성비	남성	   구성비	여성 비율 (B/A×100)
계	8,045	3,116	100.0	4,929	100.0	38.7
20-29세	184	57	1.8	127	2.6	31.0
30-39세	346	106	3.4	240	i I 4.9	30.6
40-49세	773	212	     6.8	561	   11.4	27.4
50-59세	1,335	370	11.9	965	19.6	27.7
60-69세	1,935	690	22.1	1,245	25.3	35.7
70세 이상	3,472	1,681	   53.9	1,791	   36.3	48.4

자료: 보령시「장애인등록자료」,「주민등록인구자료」

#### 3-6-1. 읍·면·동별 장애인등록 인구

(단위: 명, %)

구분	총 등록인구 (A)	여성 (B)	구성비	남성	구성비	여성 비율 (B/A×100)
계	8,045	3,116	100.0	4,929	100.0	38.7
웅천읍	631	253	8.1	378	7.7	40.1
주포면	147	56	1.8	91	1.8	38.1
주교면	700	270	8.7	430	8.7	38.6
오천면	459	189	6.1	270	5.5	41.2
천북면	369	143	4.6	226	4.6	38.8
청소면	356	166	5.3	190	3.9	46.6
청라면	439	152	4.9	287	5.8	34.6
남포면	521	206	6.6	315	6.4	39.5
주산면	284	128	4.1	156	3.2	45.1
미산면	219	95	3.0	124	2.5	43.4
성주면	355	118	3.8	237	4.8	33.2
대천1동	814	288	9.2	526	10.7	35.4
대천2동	467	202	6.5	265	5.4	43.3
대천3동	775	290	9.3	485	9.8	37.4
대천4동	966	365	11.7	601	12.2	37.8
대천5동	543	195	6.3	348	7.1	35.9

자료: 보령시「장애인등록자료」,「주민등록인구자료」

<sup>1)</sup> 장애인등록자료는 2020년 4월 30일 기준임

#### 3-7. 장애유형1)별 여성 장애등록 인구

(단위: 명, %)

7	·분	여성 등록인구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발달장애	정신장애
	계	3,116	2,595	125	277	119
	구성비	100.0	83.3	4.0	8.9	3.8
20-	29세	57	20	*	34	*
	구성비	100.0	35.1	*	59.6	*
30-	39세	106	32	6	62	6
	구성비	100.0	30.2	5.7	58.5	5.7
40-	49세	212	85	15	77	35
	구성비	100.0	40.1	7.1	36.3	16.5
50-	59세	370	242	22	69	37
	구성비	100.0	65.4	5.9	18.6	10.0
60 -	69세	690	603	31	26	30
	구성비	100.0	87.4	4.5	3.8	4.3
70세	이상	1,681	1,613	50	9	9
	구성비	100.0	96.0	3.0	0.5	0.5

자료: 보령시「장애인등록자료」,「주민등록인구자료」

#### 3-8. 장애정도2)별 여성 장애등록 인구

(단위: 명, %)

			(건커: 6, 70)
구분	여성 등록인구	심하지 않은 장애	심한 장애
계	3,116	2,078	1,038
구성비	100.0	66.7	33.3
20-29세	57	8	49
구성비	100.0	14.0	86.0
30-39세	106	23	83
구성비	100.0	21.7	78.3
40-49세	212	66	146
구성비	100.0	31.1	68.9
50-59세	370	187	183
구성비	100.0	50.5	49.5
60-69세	690	478	212
구성비	100.0	69.3	30.7
70세 이상	1,681	1,316	365
구성비	100.0	78.3	21.7

자료: 보령시「장애인등록자료」,「주민등록인구자료」

<sup>1)</sup> 장애유형은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8-151호)의 중분류에 따라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지체, 뇌병변 등), 내부기관의 장애(신장, 심장 등), 발달장애(지적, 자폐성), 정신장애로 구분됨

<sup>2)</sup> 장애정도는「장애인복지법」제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개정[시행 2019. 7. 1.]에 의해 '장애 등급'용어를 '장애 정도'로 정비하고, 장애인을 장애 정도에 따라 '심하지 않은 장애', '심한 장애'로 구분함

# 3-9. 국민연금 가입인구1)

(단위: 명, %)

	여성 국민연금					20세 이상	국민연금
구분	가입인구 (A)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임의 가입자 <sup>2)</sup>	임의계속 가입자 <sup>3)</sup>	여성인구 (B)	가입률 (A/B×100)
계	15,397	7,528	6,640	148	1,081	42.420	36.3
구성비	100.0	48.9	43.1	1.0	7.0	42,439	30.3
20-29세	1,856	999	852	5	-	4,041	45.9
구성비	100.0	53.8	45.9	0.3	-	4,041	45.9
30-39세	2,570	1,586	964	20	-	4,487	57.3
구성비	100.0	61.7	37.5	0.8	-		37.3
40-49세	4,065	2,395	1,624	46	-	6.402	63.5
구성비	100.0	58.9	40.0	1.1	-	6,403	05.5
50-59세	5,825	2,548	3,200	77	-	0 172	71.3
구성비	100.0	43.7	54.9	1.3		8,172	/1.5
60세 이상	1,081	-	-	-	1,081	10.220	
구성비	100.0		-	-	100.0	19,336	5.6

자료: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 가입자 자료」, 보령시「주민등록인구자료」

# 3-9-1. 가입기간별 국민연금 가입인구

(단위: 명, %)

						(단위: 명, %)
구분	여성 가입인구	5년 미만	5년~ 10년 미만	10년~ 15년 미만	15년~ 20년 미만	20년 이상
계	15,397	6,357	4,497	2,524	1,333	686
구성비	100.0	41.3	29.2	16.4	8.7	4.5
20-29세	1,856	1,636	218	*	-	-
구성비	100.0	88.1	11.7	*	-	-
30-39세	2,570	1,084	856	506	121	*
구성비	100.0	42.2	33.3	19.7	4.7	*
40-49세	4,065	1,421	1,114	799	456	275
구성비	100.0	35.0	27.4	19.7	11.2	6.8
50-59세	5,825	2,046	1,588	1,116	697	378
구성비	100.0	35.1	27.3	19.2	12.0	6.5
60세 이상	1,081	170	721	101	59	30
구성비	100.0	15.7	66.7	9.3	5.5	2.8

자료: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 가입자 자료」

<sup>1)</sup> 국민연금 가입자 자료는 2019년 12월 31일 기준임

<sup>2)</sup> 임의가입자는 국민연금법」적용을 받지 않지만 임의로 국민연금 가입 신청자이며, 대상자는 가입자 또는 연금수급자의 무소득배우자,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기초수급자 등임

<sup>3)</sup> 임의계속가입자는 60세 이후에도 신청에 의하여 계속하여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는 자이며, 임의계속가입 신청은 65세 전까지 가능함

# 4. 건강<sup>Ⅳ</sup>

# 4-1. 사망자수

(단위: 명, 십만명당 명)

			(ਹਸ. ਨ, ਪਹਿਨਨ ਨ)										
구분	여	성	남성										
TE	사망자수	사망률 <sup>1)</sup>	사망자수	사망률									
2019년	423	850.4	506	993.0									
2018년	464	923.4	530	1,029.4									
2017년	427	841.7	511	983.3									
2016년	437	854.6	501	957.1									
2015년	434	846.0	523	997.8									
2014년	409	796.2	560	1,067.8									
2013년	376	727.5	487	923.4									
2012년	389	747.0	498	938.4									

자료: 통계청「사망원인통계」

# 4-1-1. 주요 사망원인별 사망자수

(단위: 명, %, 십만명당 명)

					(E11: 0/	/0, 답단증증 증/	
		여성		남성			
구분	사망자수	구성비	사망률 <sup>2)</sup>	사망자수	구성비	사망률	
계	423	100.0	850.4	506	100.0	993.0	
암	76	18.0	152.8	143	28.3	280.6	
심장 질환	128	30.3	257.4	70	13.8	137.3	
뇌혈관 질환	32	7.6	64.3	24	4.7	47.1	
폐렴	36	8.5	72.4	36	7.1	70.6	
고혈압성 질환	12	2.8	24.1	*	   * 	5.9	
자살	11	2.6	22.1	29	5.7	56.9	
기타	128	30.3	257.3	201	39.7	394.6	

자료: 통계청「사망원인통계」

Ⅳ. 별도 표기가 없는 경우, 2019년 12월 31일 기준 자료임

<sup>1)</sup> 사망률(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 = 해당연도 사망자 수/해당연도 주민등록 연앙인구×100,000

<sup>2) 10</sup>만명당 사망률

# 4-2. 건강보험 적용인구1)

# 4-2-1. 가입구분별 건강보험 적용인구

(단위: 명, %)

	7	11	직장						TI	æ
구분	계		70		가입자		피부양자		지역	
		구성비								
계	76,860	100.0	48,467	100.0	25,793	100.0	22,674	100.0	28,393	100.0
여성	37,330	48.6	23,678	48.9	10,065	39.0	13,613	60.0	13,652	48.0
남성	39,530	51.4	24,789	51.1	15,728	61.0	9,061	40.0	14,741	52.0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등록자료」

# 4-2-2. 연령별 가입구분별 여성 건강보험 적용인구

(단위: 명, %)

					(DTI: 8; 70)
_	년분	계	직	장	지역
	ᆫ	71	가입자	피부양자	시작
7	계	37,330	10,065	13,613	13,652
	구성비	100.0	27.0	36.5	36.5
20-	29세	3,630	1,395	1,322	913
	구성비	100.0	38.4	36.4	25.2
30-	39세	4,161	1,721	1,034	1,406
	구성비	100.0	41.4	24.8	33.8
40-4	49세	5,843	2,543	1,125	2,175
	구성비	100.0	43.5	19.3	37.2
50-	59세	7,575	2,769	1,790	3,016
	구성비	100.0	36.6	23.6	39.8
60-	69세	7,502	1,424	3,157	2,921
	구성비	100.0	19.0	42.0	39.0
70세	이상	8,619	213	5,185	3,221
	구성비	100.0	2.5	60.1	37.4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등록자료」

<sup>1)</sup> 건강보험 적용인구 및 주민등록 거주지 기준이며, 의료급여 제외

# 4-3. 건강보험 요양급여실적1)

(단위: 백만원)

76	7-	11	입	원	외	래	약	국
구분	진료비	급여비	진료비	급여비	진료비	급여비	진료비	급여비
계	193,266	146,882	76,692	62,376	74,526	54,154	42,048	30,352
남성	89,219	68,089	35,644	29,361	33,762	24,411	19,813	14,317
여성	104,047	78,793	41,048	33,015	40,764	29,743	22,235	16,035
20-29세	2,950	2,200	982	834	1,563	1,080	405	286
30-39세	5,189	4,005	2,042	1,750	2,481	1,776	666	479
40-49세	6,954	5,153	2,130	1,764	3,508	2,447	1,316	942
50-59세	14,697	10,775	4,227	3,424	6,822	4,744	3,648	2,607
60-69세	23,807	17,891	7,233	5,908	10,512	7,610	6,062	4,373
70세 이상	50,450	38,769	24,434	19,335	15,878	12,086	10,138	7,348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등록자료」

# 4-4. 주요 만성질환2) 진료인원

(단위: 명)

구분	고혈압	당뇨	신경계질환	심장질환	정신질환	간질환
계	19,541	9,045	8,146	4,014	8,795	4,545
남성	9,129	4,780	3,212	2,156	3,322	2,595
여성	10,412	4,265	4,934	1,858	5,473	1,950
20-29세	8	20	154	12	238	84
30-39세	64	67	239	17	272	141
40-49세	456	220	484	50	411	257
50-59세	1,770	744	976	189	645	501
60-69세	2,887	1,302	1,212	479	1,071	568
70세 이상	5,227	1,912	1,869	1,111	2,836	399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등록자료」

<sup>1)</sup> 수진자 주소지 기준이며, 의료급여 및 비급여는 제외(2020년 6월 청구분까지 반영)

<sup>2)</sup> 주 질병통계자료는 요양기관에서 환자진료 중 진단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호소, 증세 등에 따라 일차 진단명을 부여하고 청구한 내역중 주 진단명 기준으로 발췌한 것이므로 최종 확정된 질병과는 다를 수 있음

# 4-5. 주요 만성질환 1인당 진료비<sup>1)</sup>

(단위: 명)

구분	고혈압	당뇨	신경계질환	심장질환	정신질환	간질환
계	545	825	859	1,862	1,154	544
남성	520	822	876	1,855	1,044	538
여성	567	828	847	1,870	1,220	551
20-29세	176	572	125	97	1,397	195
30-39세	253	1,258	190	2,208	946	479
40-49세	429	724	239	815	593	403
50-59세	487	731	397	1,298	635	633
60-69세	557	831	484	1,870	434	620
70세 이상	615	862	1,619	2,029	1,752	545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등록자료」

# 4-6. 주요 암 진료인원

(단위: 명)

						(킨用: 정)
구분	위암	간암	폐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계	492	194	311	422	379	69
20-29세	-	-	*	-	*	-
30-39세	*	*	-	5	17	*
40-49세	23	10	5	10	65	15
50-59세	75	38	33	70	112	15
60-69세	154	63	89	135	121	17
70세 이상	237	81	183	202	63	18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등록자료」

<sup>1) 1</sup>인당 진료비: 진료비/진료인원

# 4-7. 주요 암 1인당 진료비

(단위: 천원)

구분	위암	간암	폐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계	3,025	9,959	9,514	5,932	4,734	5,106
20-29세	-	-	3,190	-	356	-
30-39세	1,676	4,748	-	1,661	6,840	942
40-49세	3,056	21,591	4,211	5,377	4,842	6,187
50-59세	1,998	12,320	8,694	7,400	3,893	7,344
60-69세	3,316	9,435	10,521	7,294	5,133	3,442
70세 이상	3,175	7,952	9,352	4,647	4,854	4,837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등록자료」

# 지역생활 만족도<sup>∨</sup>

# 5-1. 의료시설 및 서비스 만족도1)

(단위: %)

							<u> </u>
구분	매우 만족 (A)	약간 만족 (B)	보통	약간 불만족 (C)	매우 불만족 (D)	만족 (A+B)	불만족 (C+D)
계	4.8	31.5	54.2	6.8	2.7	36.3	9.5
20-29세	8.0	16.0	56.0	8.0	12.0	24.0	20.0
30-39세	4.1	16.4	56.2	12.3	11.0	20.5	23.3
40-49세	3.0	32.0	53.0	8.0	4.0	35.0	12.0
50-59세	6.9	27.5	53.4	9.9	2.3	34.4	12.2
60세 이상	4.6	35.8	54.2	4.8	0.7	40.4	5.5

V. 「2019 충청남도 사회조사」는 표본조사라 여성인구 규모와 일치하지 않음

<sup>1)</sup> 의료시설의 서비스 및 접근성을 전반적으로 고려한 만족도임

# 5-2. 가족관계 만족도<sup>1)</sup>

(단위: %)

							(   110 707
구분	매우 만족 (A)	약간 만족 (B)	보통	약간 불만족 (C)	매우 불만족 (D)	만족 (A+B)	불만족 (C+D)
계	32.0	41.8	24.7	1.1	0.3	73.8	1.4
20-29세	42.9	46.4	10.7	0.0	0.0	89.3	0.0
30-39세	40.9	40.0	17.1	2.3	0.0	80.9	2.3
40-49세	34.8	41.7	22.6	0.0	0.9	76.5	0.9
50-59세	38.2	41.2	18.8	0.6	1.2	79.4	1.8
60세 이상	26.9	42.2	29.4	1.5	0.0	69.1	1.5

자료: 보령시·충청남도「2019 충청남도 사회조사」

# 5-3. 자녀 교육환경(공교육) 만족도2)

(단위: %)

							(단위. %)
구분	매우 만족 (A)	약간 만족 (B)	보통	약간 불만족 (C)	매우 불만족 (D)	만족 (A+B)	불만족 (C+D)
계 	6.1	22.5	46.9	20.5	4.0	28.6	24.5
20-29세	0.0	0.0	0.0	0.0	0.0	0.0	0.0
30-39세	0.0	37.6	43.6	18.8	0.0	37.6	18.8
40-49세	14.3	14.3	47.6	23.8	0.0	28.6	23.8
50-59세	0.0	0.0	71.4	14.3	14.3	0.0	28.6
60세 이상	0.0	40.5	19.6	20.3	19.6	40.5	39.9

<sup>1)</sup> 가족 구성원들과의 관계, 하루 중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의 충분성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한 만족도임

<sup>2)</sup> 초·중·고 학부모의 공교육에 대한 교육환경을 전반적으로 고려한 만족도임

# 5-4. 자녀 교육환경(사교육) 만족도1)

(단위: %)

							(L III / +/
구분	매우 만족 (A)	약간 만족 (B)	보통	약간 불만족 (C)	매우 불만족 (D)	만족 (A+B)	불만족 (C+D)
<b>계</b>	0.0	10.2	55.1	28.6	6.1	10.2	34.7
20-29세	0.0	0.0	0.0	0.0	0.0	0.0	0.0
30-39세	0.0	18.8	56.2	12.5	12.5	18.8	25.0
40-49세	0.0	4.8	57.1	38.1	0.0	4.8	38.1
50-59세	0.0	0.0	57.1	28.6	14.3	0.0	42.9
60세 이상	0.0	20.3	39.9	39.9	0.0	20.3	39.9

자료: 보령시·충청남도「2019 충청남도 사회조사」

# 5-5. 직장 만족도2)

(단위: %)

							(근귀. 70)
구분	매우 만족 (A)	약간 만족 (B)	보통	약간 불만족 (C)	매우 불만족 (D)	만족 (A+B)	불만족 (C+D)
계 	5.6	25.3	63.5	5.2	0.4	30.9	5.6
20-29세	11.8	29.4	47.1	11.8	0.0	41.2	11.8
30-39세	10.4	29.2	58.3	2.1	0.0	39.6	2.1
40-49세	3.2	33.3	58.1	5.4	0.0	36.5	5.4
50-59세	8.3	27.5	58.3	5.8	0.0	35.8	5.8
60세 이상	3.2	18.6	72.3	4.8	1.1	21.8	5.9

<sup>1)</sup> 초·중·고 학부모의 사교육에 대한 교육환경을 전반적으로 고려한 만족도임

<sup>2)</sup> 일의 내용, 업무량, 일의 성격, 임금, 복리후생 등 여러 사항을 전반적으로 고려한 만족도임

# 5-6. 주거환경 만족도<sup>1)</sup>

(단위: %)

							(2 11. 7.)
구분	매우 만족 (A)	약간 만족 (B)	보통	약간 불만족 (C)	매우 불만족 (D)	만족 (A+B)	불만족 (C+D)
계	2.8	33.3	51.0	12.5	0.4	36.1	12.9
20-29세	3.3	29.5	49.2	16.4	1.6	32.8	18.0
30-39세	2.5	32.5	46.2	17.5	1.3	35.0	18.8
40-49세	1.7	38.7	46.8	12.8	0.0	40.4	12.8
50-59세	5.9	31.8	47.7	13.6	1.0	37.7	14.6
60세 이상	2.0	32.8	54.3	10.9	0.0	34.8	10.9

자료: 보령시·충청남도「2019 충청남도 사회조사」

# 5-7. 환경 체감도<sup>2)</sup>

(단위: %)

							(271, 70)
구분	매우 좋다 (A)	약간 좋다 (B)	보통	약간 나쁘다 (C)	매우 나쁘다 (D)	좋다 (A+B)	나쁘다 (C+D)
계	6.0	26.6	58.6	8.0	0.8	32.6	8.8
20-29세	0.0	22.6	61.3	16.1	0.0	22.6	16.1
30-39세	6.7	13.5	62.9	16.9	0.0	20.2	16.9
40-49세	5.2	25.0	56.9	12.1	0.9	30.2	13.0
50-59세	9.7	25.5	54.6	8.5	1.8	35.2	10.3
60세 이상	5.2	30.0	59.4	4.8	0.6	35.2	5.4

<sup>1)</sup> 거주 주택, 쇼핑시설 이용, 의료시설 이용, 공공시설 이용 등 여러 사항을 전반적으로 고려한 만족도임

<sup>2)</sup> 대기, 수질, 토양 등 여러 사항을 전반적으로 고려한 체감도임

5-8.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1)

							(11, 70)
구분	매우 안전 (A)	약간 안전 (B)	보통	약간 불안 (C)	매우 불안 (D)	안전 (A+B)	불안 (C+D)
계 	0.9	17.4	67.9	12.0	1.8	18.3	13.8
20-29세	0.0	9.7	61.3	22.6	6.5	9.7	29.1
30-39세	1.1	12.4	71.9	13.5	1.1	13.5	14.6
40-49세	0.0	17.2	67.2	12.1	3.5	17.2	15.6
50-59세	1.8	20.6	60.0	15.2	2.4	22.4	17.6
60세 이상	0.8	17.8	70.3	9.9	1.0	18.6	10.9

자료: 보령시·충청남도「2019 충청남도 사회조사」

# 5-9. 문화 및 여가활동 만족도2)

(단위: %)

							(E:11:70)
구분	매우 만족 (A)	약간 만족 (B)	보통	약간 불만족 (C)	매우 불만족 (D)	만족 (A+B)	불만족 (C+D)
계	2.3	55.5	35.7	6.4	0.2	57.8	6.6
20-29세	0.0	64.5	29.0	6.5	0.0	64.5	6.5
30-39세	3.5	60.5	27.9	8.1	0.0	64.0	8.1
40-49세	1.7	59.5	31.9	6.9	0.0	61.2	6.9
50-59세	0.6	60.0	35.2	3.6	0.6	60.6	4.2
60세 이상	2.9	51.5	38.6	6.8	0.2	54.4	7.0

<sup>1)</sup> 국가 안보, 자연재해, 건축 및 시설물, 교통사고, 범죄위험 등 여러 사항을 전반적으로 고려한 체감도임

<sup>2)</sup> 영화 관람, 스포츠 활동, 친목도모 활동 등에 참여했을 경우 그에 대한 만족도임

5-10. 삶에 대한 만족감1)

							(E 11: 7%)
구분	매우 만족 (A)	약간 만족 (B)	보통	약간 불만족 (C)	매우 불만족 (D)	만족 (A+B)	불만족 (C+D)
계	3.1	49.1	38.8	8.7	0.3	52.2	9.0
20-29세	3.2	54.8	38.7	0.0	3.2	58.0	3.2
30-39세	6.7	58.4	27.0	6.7	1.1	65.1	7.8
40-49세	5.2	54.3	37.1	3.4	0.0	59.5	3.4
50-59세	3.6	49.1	37.6	9.7	0.0	52.7	9.7
60세 이상	1.7	45.8	41.8	10.6	0.2	47.5	10.8

자료: 보령시·충청남도「2019 충청남도 사회조사」

# 5-11. 주관적 귀속계층(경제)<sup>2)</sup>

(단위: %)

							(E11: 70)
구분	상위 (A)	중상 (B)	중위	중하 (C)	하위 (D)	중상 이상 (A+B)	중하 이하 (C+D)
계	1.1	26.2	27.9	29.7	15.1	27.3	44.8
20-29세	0.0	19.4	48.4	29.0	3.2	19.4	32.2
30-39세	3.4	37.1	41.6	12.4	5.6	40.5	18.0
40-49세	1.7	47.4	28.4	18.1	4.3	49.1	22.4
50-59세	0.6	32.7	33.3	23.6	9.7	33.3	33.3
60세 이상	0.8	17.4	22.2	37.7	21.9	18.2	59.6

<sup>1)「</sup>자신의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문항임

<sup>2)</sup> 응답자의 직업, 교육, 재산 등을 고려한 주관적인 소속 체감도임

5-12. 주관적 귀속계층(정치)<sup>1)</sup>

							( = 11, 1, 2)
구분	진보 (A)	비교적 진보 (B)	중도	비교적 보수 (C)	보수 (D)	진보 성향 (A+B)	보수 성향 (C+D)
계 	4.0	12.3	63.5	11.0	9.3	16.3	20.3
20-29세	6.5	22.6	67.7	3.2	0.0	29.1	3.2
30-39세	12.4	20.2	61.8	3.4	2.3	32.6	5.7
40-49세	3.5	22.4	62.1	4.3	7.8	25.9	12.1
50-59세	7.9	15.8	61.2	9.7	5.5	23.7	15.2
60세 이상	1.0	6.6	64.6	14.9	12.8	7.6	27.7

자료: 보령시·충청남도「2019 충청남도 사회조사」

# 5-13. 여성에 대한 인권의식2)

(단위: %)

							( - 11. / 9/
구분	매우 존중 (A)	약간 존중 (B)	보통	약간 존중 안 됨 (C)	전혀 존중 안 됨 (D)	존중됨 (A+B)	존중 안 됨 (C+D)
계 	0.7	4.2	43.9	45.9	5.3	4.9	51.2
20-29세	3.2	12.9	38.7	45.2	0.0	16.1	45.2
30-39세	3.4	9.0	39.3	40.4	7.9	12.4	48.3
40-49세	0.9	8.6	40.5	44.0	6.0	9.5	50.0
50-59세	0.6	4.2	41.2	47.9	6.1	4.8	54.0
60세 이상	0.0	1.6	46.8	46.8	4.8	1.6	51.6

<sup>1)</sup> 응답자의 정치 성향을 고려한 주관적인 소속 체감도임

<sup>2) 「</sup>거주하는 지역에서 여성을 차별하지 않고 존중하고 있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문항임

# 5-14. 지역 정주 의사<sup>1)</sup>

(단위: %)

구분	매우 그렇다 (A)	어느정도 그렇다 (B)	보통	별로 그렇지 않다 (C)	전혀 그렇지 않다 (D)	그렇다 (A+B)	그렇지 않다 (C+D)
계	39.3	45.4	9.5	4.3	1.6	84.7	5.9
20-29세	12.9	35.5	16.1	29.3	6.5	48.4	35.8
30-39세	11.2	51.7	23.6	11.2	2.3	62.9	13.5
40-49세	25.9	50.0	17.2	4.3	2.6	75.9	6.9
50-59세	30.9	52.1	9.7	5.5	1.8	83.0	7.3
60세 이상	52.2	41.4	4.6	1.0	0.8	93.6	1.8

자료: 보령시·충청남도「2019 충청남도 사회조사」

# 5-15. 보령해양머드박람회 활성화 방향2)

(단위: %)

구분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체험을 통한 사계절 머드체험센터 조성	박람회 임시주차장 조성	머드를 활용한 다양한 신산업 발굴	장항선 복선전철 조기 준공 및 열차 증편	한국수산업경 영인 전국대회 유치	체험, 놀이, 전시 등 보령머드 테마파크 조성	기타
계	12.3	10.8	24.4	23.6	4.8	23.9	0.3
20-29세	19.4	6.5	25.8	9.7	0.0	38.7	0.0
30-39세	14.6	10.1	20.2	18.0	5.6	30.3	1.1
40-49세	12.1	12.1	26.7	18.1	4.3	26.7	0.0
50-59세	14.6	9.7	24.2	24.9	4.9	21.8	0.0
60세 이상	10.8	11.2	24.5	26.4	5.0	21.8	0.4

<sup>1) 「</sup>향후 10년 이후에도 보령시에 계속 거주하고 싶은가」에 대한 응답문항임

<sup>2)</sup> 보령시 특성문항으로, 「2022년 보령해양머드박람회의 역점 추진 연계사업은 무엇인가」에 대한 응답문항임

5-16. 연육에 따른 해양관광 활성화 방향1)

구분	원산도 다기능 스마트항 개발	원산도 기반시설 (상하수도, 도로, 주차장 등)	원산도 복합 마리나항만 건설	해양 헬스케어 시범단지 조성	어촌 체험마을 및 글램핑 시설장 조성	원산도, 효자도간 명품 브릿지 조성	어촌 민속마을 조성	기타
계	17.1	30.8	12.8	6.7	16.4	5.2	9.6	1.5
20-29세	12.9	29.0	12.9	9.7	16.1	6.5	12.9	0.0
30-39세	22.5	22.5	13.5	4.5	20.2	6.7	9.0	1.1
40-49세	12.9	34.5	11.2	7.8	19.8	2.6	11.2	0.0
50-59세	14.0	32.3	11.0	9.1	18.3	4.9	10.4	0.0
60세 이상	18.4	31.0	13.6	5.9	14.2	5.7	8.8	2.5

자료: 보령시·충청남도「2019 충청남도 사회조사」

# 5-17. 안전도 제고 방안2)

(단위: %)

구분	재난대응 시민 안전교육 실시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인력 충원 및 전문 교육 이수 등 전문성 제고	재해취약지역 선정 및 정기점검	안전시설에 대한 점검 및 불법시설 단속 강화	재난·안전 관련 자발적 주민 조직 구성 및 지원	기타
계	11.0	15.3	16.9	35.9	18.9	2.0
20-29세	16.1	9.7	19.4	38.7	16.1	0.0
30-39세	9.0	19.1	14.7	34.8	21.3	1.1
40-49세	16.4	11.2	14.7	29.3	27.6	0.8
50-59세	10.9	11.5	14.0	41.2	20.6	1.8
60세 이상	9.7	17.4	18.6	35.6	16.0	2.7

<sup>1)</sup> 보령시 특성문항으로, 「보령시 연육에 따라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할 사항은 무엇인가」에 대한 응답문항임

<sup>2)</sup> 보령시 특성문항으로, 「안전한 보령을 위해 추진할 사항은 무엇인가」에 대한 응답문항임

5-18. 인구시책1)

구분	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	출산 장려 및 보육 지원	정주 생활 여건 개선	귀농어,귀촌 유입을 위한 지원 확대	명품 행정 도시 건설	기타
계	54.3	19.7	3.8	14.5	7.6	0.1
20-29세	54.8	12.9	6.5	9.7	16.1	0.0
30-39세	49.4	25.8	7.9	9.0	7.9	0.0
40-49세	53.5	22.4	1.7	13.8	8.6	0.0
50-59세	60.6	13.9	4.2	15.2	6.1	0.0
60세 이상	53.2	20.3	3.3	15.7	7.3	0.2

<sup>1)</sup> 보령시 특성문항으로, 「보령시 인구증가를 위해 추진할 사항은 무엇인가」에 대한 응답문항임

# TV 주요 용어 및 해설

# 주요 용어 및 해설

# 1. 「인구와 가족」 부문

### ○ 여성인구

- 보령시 주민등록에 등재된 만 20세 이상의 여성인구

### ○ 성비

- 여자 100명당 남자의 수 (남자인구/여자인구 x 100)

### ○ 가구

- 가구 :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 하는 생활단위

### ○ 인구이동

- (전입) 행정구역 경계(시도, 시군구, 읍면동)를 넘어 다른 지역에서 특정 지역으로 이동해 온 경우임
- 시군구 내 전입 : 이동 전후의 시군구는 같고 행정 읍면동이 다른 전입
- 시군구 외 전입 : 이동 전후의 시군구가 다른 전입
- 순이동자수 : 특정기간 동안 전입자 수에서 전출자 수를 뺀 수치
- 순이동률 : 순이동자수/주민등록 연앙인구 x 100
- (주민등록 연앙인구) 행정안전부에서 공표하는 연말 기준 주민등록인구를 기초로 연앙 (年央)개념으로 재작성하여 제공되는 자료. 평균인구의 개념으로 출산, 사망, 이동 등 각종 인구동태율 산출시 분모인구로 활용(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 ※ 예시: 2019년 주민등록 연앙인구 = 2019.1.1일과 2019.12.31.일의 주민등록인구의 산술평균

### ※ 전입사유

구분	세부사항
주택	주택 구입, 계약 만료, 집세, 재개발 등
가족	가족과 함께 거주, 결혼, 분가 등
직업	취업, 사업, 직장 이전 등
기타	교육, 교통, 건강, 귀농 등 그 밖의 사유

### ○ 인구동향

- 혼인율 : 특정기간 동안 신고한 총 혼인건수를 당해 년도의 연앙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율로 나타낸 것 (혼인건수/주민등록 연앙인구 x 1,000)

- 연령별 출산율 : 특정연도의 가임기(15~49세) 여성 인구 1,000명당 해당 연령별 모(母)의 출생아수 (산모의 해당 연령집단별 출생아 수/해당 연령집단의 여성인구 x 1,000)
- 이혼율 : 특정기간 동안 신고한 총 이혼건수를 당해 년도의 연앙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율로 나타낸 것 (이혼건수/주민등록 연앙인구 x 1,000)

# 2. 「경제 현황 및 일자리」 부문

### ○ 고용보험

-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실업보험사업 외에 적극적인 취업 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상호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험제도임
- (**피보험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근로자. 단,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자(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국가 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의 적용을 받는 자 등은 적용 제외됨
- (피보험자격취득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
- (피보험자격상실자) 이직 등으로 인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

○ **구직신청자료** : 공공고용서비스망인 워크넷(Work-Net)에 등록한 구직자

- 구직 : 일정한 직업을 찾음

- 희망임금 : 구직자가 구인업체에 희망하는 임금

# 3. 「주거와 복지」 부문

### ○ 재산세

-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 ○ 주택

- (**주택**)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으로 분류한다.
- ※ 주택의 요건 : ① 영구 또는 준영구 건물, ② 한 개 이상의 방과 부엌, ③ 독립된 출입구, ④ 관습상 소유 또는 매매의 한 단위
- 빈집 : 사람이 살지 않는 주택을 말하며, 신축되어 아직 입주하지 않은 주택도 포함(폐

가는 제외)

- (단독주택) 한 가구가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된 일반 단독주택과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설계된 다가구 단독주택을 말함.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으로서 구획마다 방, 부엌, 출입구, 화장실이 갖추어져 한 가구씩 독립하여 생활할 수 있으나, 각 구획을 분리하여 소유하거나 매매(분양)하는 것이 불가능한 '다가구용 주택'도 포함됨.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공동육아나눔터·작은도서관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을 포함

###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관련 [별표1] 단독주택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 종류

### 가. 단독주택

- 나. 다중주택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함
  -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
  - 3)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 (지하층 제외)가 3개 층 이하인 것
- 다. 다가구주택 : 다음의 요건을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
  -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 3)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함)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 라. 공관(公館)

- (공동주택)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 및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 · 공동생활가정 · 지역아동센터 · 공동육아나눔터 · 작은도서관 ·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

###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관련 [별표1] 공동주택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 종류

- 가. 아파트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 **라.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 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 복지주택을 포함한다)

###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받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제1항〉. 자신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만으 로는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계층

###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구분

- (일반수급자) 중위소득 이하, 근로 무능력자이고 흔히 말하는 수급자. 생계, 의료, 주 거, 교육급여 수급 가능
- (시설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32조(보장시설), 동법 시행령 제38조(보장시설),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의 2(보장시설)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에 입소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조건부수급자) 수급자의 선정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18세 이상 65세 이하로 근로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급자가 되어 생계급여 수급 가능
- (특례수급자) 수급자의 선정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일정 기간 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사람

### ○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종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급여별 선정 기준에 따라 7종의(생계급여, 주거급여(국토부 소 관), 교육급여(교육부 소관),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의료급여) 급여를 보장
-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 ▶ 기준 중위소득 30%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액을 지급

-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확산액\*\*\*
-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 기본재산액 부채 + 자동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 예시: 소득인정액이 150,000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
  - =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501,632원 소득인정액 150,000원 = 351,640원(원단위 올림)
-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 2종으로 구분하여 지급
- ▶ 질병, 부상, 출산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 부담으로 이용

### ※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

구분		1차(의원)	2차(병원)	3차(지정병원)	약국
1종 <sup>*</sup>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1 <u>-0</u>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입원	10%	10%	10%	-
2종**	외래	1,000원	15% ※만성질환자: 1,000원	15%	500원

<sup>\* 1</sup>종 : 근로무능력가구, 희귀난치성 · 중증질환 등록자, 시설수급자

-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
- ▶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
- ▶ 임차가구 :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 지원.

자가가구 :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 노후도를 평가(경・중・대 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 지원

구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4급지(그 외)
수선비용(주기)	378만 원(3년)	702만 원(5년)	1,026만 원(7년)

-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지급
- ※ 2018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 원)

<sup>\*\* 2</sup>종 :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가구규모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A)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7,027,359
생계급여 (A의 30% 이하)	501,632	854,129	1,104,945	1,355,761	1,606,576	1,857,392	2,108,208
의료급여 ((A)의 40% 이하)	668,842	1,138,839	1,473,260	1,807,681	2,142,102	2,476,523	2,810,944
주거급여 ((A)의 43% 이하)	719,005	1,224,252	1,583,755	1,943,257	2,302,759	2,662,262	3,021,765
교육급여 ((A)의 50% 이하)	836,053	1,423,549	1,841,575	2,259,601	2,677,627	3,095,654	3,513,680

자료: 보건복지부, 「201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17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 「희망사다리 2018 -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2018. 5.

- **장애인등록 인구**: 20. 4. 30. 기준 보령시 등록장애인<sup>\*</sup> 인구
  - \* 등록장애인: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기준에 해당되는 장애인이 동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시·군·구청에 등록을 한 자로, 등록하지 않은 장애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장애인 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제32조 제1항

-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 ②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 ③"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2조(장애인 등록) ①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 대리인등"이라 한다)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 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 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 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 ○ 장애인 인구 비율

- 주민등록인구 수 대비 장애인 인구 수(장애인 인구 수/주민등록인구 수 X 100)

### ○ 장애 유형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17호 「장애정도판정기준」에 따라 4개 중분류(외부 신체기 능 장애, 내부기관 장애, 발달장애, 정신장애)를 활용함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지체장애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뇌병변장애	뇌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외부	시각장애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신체기능의 장애	청각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신체적		언어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안면장애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장애		신장장애	투석치료중이거나 신장을 이식 받은 경우
		심장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희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내부기관의	간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기능 이상
	장애	호흡기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기기능 이상
		장루·요루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요루
		뇌전증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뇌전증
-1.1-1	ロトニトエトハリ	지적장애	지능지수가 70이하인 경우
정신적 장애	발달장애	자폐성장애	소아청소년 자폐 등 자폐성 장애
0 311	정신장애	정신장애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재발성우울장애

- 2종류 이상의 심하지 않은 장애(중복장애)를 가진 경우 심한 장애로의 장애정도 상향이 필요하므로 중복합산 대상이 되는 세부 장애상태 기준에 따름
- 2종류 이상의 중복장애가 있는 경우 주장애 또는 부장애 또는 주장애의 신체적·정신적 기능 등을 더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장애정도에 변화를 일으키는 신체적·정신적 손상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그 손상이 장애정도의 심화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애정도를 판정할 수 있음

### ○ 장애 정도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및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개정[시행, 2019.7.1.]에 따라, '장애 등급'용어를 '장애 정도'로 정비하고, 장애인을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구분함
- 의학적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3급)'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기존 4~6급)으로 구분함

### ○ 국민연금

- 가입자가 노령이나 질병·사망으로 인하여 소득 능력이 상실 또는 감퇴되었을 때 본인 이나 유족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운영하는 장기적인 소득 보장제도로 사회 보험의 일종인 공적 연금제도. 특별법에 의해 연금이 적용되는 공무원·군인·사립학 교 교직원은 제외

### ○ 국민연금 가입유형

- (사업장가입자)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근로자와 사업주가 가입함
- (지역가입자)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사업장 가입자와 반대개념으로 사업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이 의무가입 대상임
- (임의가입자) 「국민연금법」 적용을 받지 않거나 임의로 국민연금가입을 신청한자. 임의가입대상자는 가입자 또는 연금수급자의 무소득배우자,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기초수급자 등이며, 외국인, 이미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는 임의가입을 할 수 없음
- (임의계속가입자)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60세 이후에도 신청에 의하여 계속하여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는 자. 임의계속가입신청은 65세 전까지 가능하며, 60세에 도달하여 반환일시금을 수령하였거나 60세 이전의 가입기간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임의계속가입을 할 수 없음

# 4. 「건강」 부문

- (사망) 출생 후 생명의 증거(호흡, 심장/제대의 박동, 수의근의 명백한 움직임 등)가 영 구적으로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경우. 즉, 인공호흡의 가능성도 없는 출산 후에 나타나는 생 명력의 정지 상태
- (사망률)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 (해당연도 사망자 수/해당연도 주민등록 연앙인구 X 100,00)
- 연령별 사망률 : 특정연도의 연령별 연앙인구당 해당 연령별 총 사망자 수 (특정 연령별 연간 총 사망자 수/해당 연령별 연앙인구 x 100,000)

### ○ 국민건강보험 적용인구

- 연도말 기준, 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내국인 및 외국인)

###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유형

- (직장가입자)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군인·교직원 및 그 피부양자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가입자 중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

- (피부양자)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로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자를 의미하며,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를 포함함

### ○ 건강보험자료

- (요양급여) 건강보험을 통해 지급되는 가장 기본적인 급여로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요양기관을 이용하면서 받게되는 보험 혜택을 말함. 건강보험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진찰·검사,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및 그밖의 치료, 예방·재활 및 입원 등에 대해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음
- (진료비) 공단부담금(기관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더한 금액(요양급여비용 총액)
- ▶ 1인당 진료비 = 진료비/진료인원
- (급여비) 건강보험공단이 현물급여비 및 현금급여비로 지급한 총액으로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 상환제(사후환급액), 건강검진비, 임신·출산진료비 등을 포함
- ▶ 1인당 급여비 = 급여비/진료인원
- (진료인원) 건강보험 가입자 중 실제 진료받은 환자 수
- 요양기관 : 환자를 진료(투약)하는 기관으로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병원, 치과의원, 조산원, 보건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한방병원, 한의원, 약국을 총칭하며, 약국을 제외한 요양기관을 '의료기관'이라 함

### ○ 주요 만성질환(6종)

- 갑작스러운 증상이 없어 서서히 발병하여 치료와 치유에도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는 비감염성 질환. 고혈압, 당뇨, 만성호흡기 질환 등으로 구분하며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표」에 의한 다음의 질병코드를 사용함
- ▶ 질병코드 : (고혈압) I10-I15, (당뇨병) E10-E14, (신경계질환) G00-G37, (심장질환) I05-I09, I20-I27, I30-I52, (정신 및 행동장애) F00-F99, G40-G41, G43-G83, (간의질환) B18-B19, K70-K77

### ○ 주요 암(6종)

- 생체 조직 안에서 세포가 무제한으로 증식하여 악성 종양을 일으키는 병. 위암, 간암, 폐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으로 구분하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에 의한 다음의 질병코드를 사용함
  - ▶ 질병코드: (위암) C16, (간암) C22, (폐암) C33-C34, (대장암) C18-C20, (유방암) C50, (자궁경부암) C53

# 생정자료 생식

# 행정자료 서식

## 1. 전입신고서(세대 모두 이동)

주민등록법 시	나라면	「별지	제15 중서시 1	<개저	2017	1.1	28 >
구민등국답 1	122		세 10 오시 각 1	~/11 8	2017.		40.0

### 전입신고서(세대 모두 이동)

※ 이 신고서는 세대가 모두 이동하며, 세대주 변경이 없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접수 번호		신고일	년	월	일
전입자 (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전에 살던 곳	(시・도) (시・군	• 구)		, 시 · 군 · 구. 주소는 작성하	까지만 작성 지 않아도 됩니다.)
54 TII	세대주 성명(※ 세대주가 신고할 때	에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서명 또는 '	연락처 <sup>인)</sup>		
현재 사는 곳 (이사한 곳)	주소				
	다가구주택 명칭 통		등기가 되어 있 리궁화발라, 1동		구주택인 경우 작성
전입 사유 (※주된 1가지)	[ ] 직업 (취업, 사업, 직장 이전 등 [ ] 가족 (가족과 함께 거주, 결혼, [ ] 주택 (주택 구입, 계약 만료, 질 [ ] 그 밖의 사유 (	분가 등) [ ] 주거	(진학, 학업, 2 환경 (교통, 5 환경 (건강, 8	문화 · 편의 시	설 등) 남 등)

### 읍 • 면 • 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 유의사항

- 1. 전입신고는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현 거주지에서 해야 하며, 전입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는 통장·이장이 사후 에 확인하며, 거짓으로 신고한 것이 확인되면 처벌을 받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며,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주민등록법」 제37조 및 제40조)
- 2. 거짓 전입 및 무단 전출을 하면 신고한 최종 주소지에 '거주불명 등록' 될 수 있고, '거주불명 등록' 후 1년 내에 실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않으면 최종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3. 전입 사유 칸은 「통계법」에 따라 인구 이동 통계 작성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성실하게 응답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호되고, 전입 사유 칸의 내용은 통계 작성의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 작성 방법

- 1. '연락처'는 도로명주소 등 신고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알리고 도우려는 목적으로만 이용되니 연락처가 바뀔 때에는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알려 주시기 바라며, 희망하는 사람만 연락처를 쓰기 바랍니다.
- 2. 전입 주소가 다가구주택인 경우에 '주택 명칭·총·호수'는 주민등록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원하는 사람만 작성하면 되고, 공법상 주소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공무상 필요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이를 작성하지 않아 우편물 등이 송달되지 않는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times$  다만, 「도로명주소법」에 의한 상세 주소(동·총·호)가 부여된 경우 공법상 주소로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 ₩ 우편물 전입지 전송 서비스를 신청하는 사람만 작성합니다.

우편물 전입지 전송(전입신고 3일 후부터 3개월) 서비스 신청서 및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이 서비스는 전에 살던 주소지로 배달되던 우편물을 전입신고한 주소로 배달하는 서비스로서 세대주 및 세대원의 개인 정보가 우체국으로 제공되므로 신청인의 등의가 필요합니다.(전입지 전송 서비스 신청 후 새로운 곳으로 다시 전입신고한 경우 기존 에 신청한 건은 자동으로 삭제되며, 직전 주소지에서 새로 전입신고한 주소지로만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제공 항목: 동의하는 세대주 및 세대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 번호)
- 우편물 전송을 받으려 하는 세대주 및 세대원 성명 작성:
- 신청인 전화번호: ☞ - (휴대전화: - )
- [ ] 위의 사항을 확인하였고 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210mm× 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

(서명 또는 인)

# 2. 전입신고서(세대 일부 이동)

■ 주민등록법 시	행령 [별지 제 <mark>1</mark> 5	호의2서식] <개정 20	17. 11. 2	8.>		
[ ]	전입(세다	l 일부 이동,	편입,	합가, 위임	임용) [ ] 재	등록신고서
፠ 뒤쪽의 유의	기사항과 작성병	t법을 <mark>읽</mark> 고 작성하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 번호				신고일	년	월 일
-	구분	[ ] 세대 모두 이	576 - 1519 - 151,			이포함 일부 이동
전에 살던 곳	세대주	성명	13	주민등록번호	남은 세 세대주 (연락)	대의 성명 터)
	주소 (행정상 관리주소)	(시・도)	(시ㆍ군	•구)		시·군·구까지만 작성 소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분	The Table Contraction of	] 다른 세	대로 편입 []	Francis (Basel Agent) - Belline	F가 하나의 세대 구성)
현재_	세대주	성명		(서명	또는 인) 연락처	
사는 곳 (이사한 곳)	주소					
	다가구주택	명칭 동	층		'분 등기가 되어 있지 ( 예: 무궁화빌라, 1통 1	않은 다가구주택인 경우 작성 총 2호)
* 신고 대상자	다 (총 명	)	1)			
전입자 (재등록자)	세대주와의 공	관계 성명		전입자 (재등록자)	세대주와의 관계	성명
1				5		
2				6		
3				7		
4				8		
	※ 전입자가 0	나닌 사람이 신고하는	경우에만 직	작성합니다.		
전입자, 전 세대주	전입자(대표	E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세대주가 변	경되는 경우 또는 미성	성년자를 전	입신고 하는 경우	에만 작성합니다.	3
	전(前) 세대	대주 성명		(서명 또는 인)		10
전입 사유 (※주된1가지)	[ ] 직업 (취 [ ] 가족 (기 [ ] 주택 (취 [ ] 그 밖의	비업, 사업, 직장 이전 바족과 함께 거주, 결혼 <sup>5</sup> 택 구입, 계약 만료,   사유 (	등) , 분가 등) 집세, 재개별	[ ] 교 [ ] 주 ( ] 자 )	육 (진학, 학업, 자녀 거 환경 (교통, 문화 연 환경 (건강, 공해,	교옥 등) • 편의 시설 등) 전원생활 등)
「주민등록법 2제1항에 따	d」 제6조제 라 ([ ]전입	1항, 제16조제1힘   []재등록) (	t과 같은 신고를 힙	법 시행령 제 나다.	23조제1항, 제32	조제1항 및 제32조의 년 월 일
N = 01	성명		(서명 또	는 인) 주민등	록번호	
신고인	연락처			세대주의	와의 관계	
읍•면•	동장 및 취	출 <b>장소장</b> 귀하			210mm × 202mm	백상지 80g/m·(재활용품)]

(뒤쪽) ※ 위입장은 위임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위임장 「주민등록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전입신고를 위 신고인에게 위임합니다. 년 주민등록변호 성명 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 (현재 사는 곳 세대주) 유의사항

- 1. 말소자, 거주불명 등록자 재등록 신고는 현 거주지에서 해야 합니다.
- 2. 전입신고를 할 때에는 전입한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오셔서 주소지 변경 정리를 해야 합니다.(주민등록증 소지자만 해당 됩니다.)
- 3. 위임장을 거짓으로 작성할 때에는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 4.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 전입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는 통장 이장이 사후에 확인 하며, 거짓으로 신고한 것이 확인되면 처벌을 받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며,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년 이 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주민등록법」 제37조 및 제40조)
- 5. 거짓 전입 및 무단 전출을 하면 신고한 최종 주소지에 '거주불명 등록'될 수 있고, '거주불명 등록' 후 1년 내에 실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않으면 최종 주소지 관할 읍 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6. 국내에서 주민등록을 하였던 재외국민 말소자가 영주귀국하여 재등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영주귀국 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7. 전입 사유 칸은 「통계법」에 따라 인구 이동 통계 작성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성실하게 응답해 야 할 의무가 있으며,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호되고, 전입 사유 칸의 내용은 통계 작성의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 8. 우편물 전입지 전송(배달) 및 전입지 주소 정보 제공에 동의할 경우 우정사업본부가 전입신고 3일후부터 3개월까지 전입지로 우 편물을 전송(배달)하거나, 현재 전입자에게 우편물을 발송하고 있는 업체 중 전입지로 우편물 발송을 희망하는 업체에 전 입지 주소 정보 등을 제공합니다.
  - 우편물 발송 업체 명단과 업체 추가·변경 사실 및 정보 제공 방법 등은 우정사업본부 누리집(www.koreapost.go.kr)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의하신 후 언제든지 우정사업본부 누리집이나 가까운 우체국에서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작성방법

- 1. 신고인은 '신고인' 칸에 도장을 찍는 대신 한글 서명을 해도 되며, '세대주'의 '성명' 칸에는 세대주의 확인(세대주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세대주의 위임을 받아 신고하는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위임장' 칸에 세대주의 위임을 받고, 세대주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 2. 세대주를 포함해 세대 일부 또는 전부가 전입하면서 전(前) 세대주를 세대원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전 세대주의 확인(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하며, 미성년자를 전입신고하는 경우에는 전 세대주 또는 전 세대의 세대원 중에서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 의 확인(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 3. 전 세대주나 전입자(본인)의 확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읍·면·동장 및 출장소장의 사실조사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4. 세대주와 함께 세대 일부가 전출한 경우에는 남은 세대의 세대주 성명과 연락처를 작성합니다.
- 5. '전입자 또는 재등록자' 칸의 '세대주와의 관계' 칸에는 전입지(재등록지)의 세대주와 전입(재등록)하는 사람의 관계를 작성합니다.
- 6. '연락처'는 도로명주소 등 신고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알리고 도우려는 목적으로만 이용되니 연락처가 바뀔 때에는 관할 읍 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알려 주시기 바라며, 희망하는 사람만 연락처를 쓰기 바랍니다.
- 7. 전입 주소가 다가구주택인 경우에 '주택 명칭ㆍ총ㆍ호수'는 주민등록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원하는 사람만 작성하면 되고, 공법상 주소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공무상 필요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이를 작성하지 않아 우편물 등이 송달되지 않는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 다만, 「도로명주소법」에 의한 상세 주소(동, 총, 호)가 부여된 경우 공법상 주소로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 우편물 전입지 전송(전입신고 3일 후부터 3개월) 서비스 신청서 및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이 서비스는 전에 살던 주소지로 배달되던 우편물을 전입신고한 주소로 배달하는 서비스로서 세대주 및 세대원의 개인 정보가 우체국으로 제공되므로 신청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전입지 전송 서비스 신청 후 새로운 곳으로 다시 전입신고한 경우 기존에 신청한 건은 자동으로 삭제되며, 직전 주소지에서 새로 전입신고한 주소지로만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 수수료 등은 우편법에 따라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제공 항목: 동의하는 세대주 및 세대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 번호)
- 우편물 전송을 받으려 하는 세대주 및 세대원 성명 작성:
- 신청인 전화번호: 霫 49 747 (휴대전화:
- [ ] 위의 사항을 확인하였고 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신고서 접수증

\* 신고서 및 접수증은 전산 교부를 원칙으로 하며, 전산으로 교부할 수 없을 때에는 별도로 작성해 교부합니다.

# 3. 혼인신고서

[양식 제10호]

Lσ.	3 8	AT T	0.4	-1					- 2												
	혼		인		신	卫	ノ	4		፠ 신고		*22.Thu							-	7,	선택
	(	20		<u> </u>	월		일)				에는	'영	丑(〇	))'로					ł. <u> </u>		
	구	2 <u>1</u>	분				남		편(브	루)					아	25	내	(처)			
1	성명	a L	한	글	* [2]	J	(평)			(D) H	느괴	ᆲᅵ	*(-3)		/ (動				രി	шъ	서명
④회인당	0 0	3	한	자	(원)	/ (명				W .1	^1	0	송	7.0	8)				. ك	+-	~10
당	- t	로(축	한자	)			전.	화		**		-	본(힌	자)			전호	F			
사 자	출	생약	견월	일																	
~	*주	민등	등록	번호				55									elegi				
진 고 인	*등	록	기준	기																	
인		*-7	스소																		
2	1	부	성명																		
부	주민	민등	록빈	보호				ŧ.	<del>-</del>								u <del>nu</del>				
	등	록기	기준	지																	
모〈쌍뿌모	_1	兄	성명																		
물 [	주민	·l등	록반	보호				9	=8								9 <del>/-</del>				
)	등	록기	기준	지				107													
③외	국빙	;식	에 의	의한	혼인	성립	일지	<u>-</u> 23			년		<u> </u>	칄		일					
④성	·본의	्र ह	혈의	100	자녀	의	성·본	을 1	모의	성·본의	2로 (	하는	- 협	의를	하였	đ습L	니까'	? 예 :	<b>□</b> 0}	니요	20
⑤근	친혼	<u> </u>	부		혼인	당사	자들	0] 8	3촌이	내의	혈족	사이	이에	해당	됩니	까?		예 [	]0}1	니요	
<b>⑥</b> 기	타시	항	ŧ								1509				v						
@\		-/	성 명	Ħ					<b>®</b> .	또는 서	명 주	민공	등록박	번호				S-0-1			
⑦ 증		9857	주 그	ř.							98										
인 인		1	성 명	ĦΩ					<b>1</b>	또는 서	명 주	민	등록	번호				S. <del></del>			
2		36 36 3	주 3	스	100																
8		남	200	성명					<b>9</b> 4	는 서명	후	성	명					1.2	<b>1</b>	또는	서명
동		편		성명					<b>9</b> 4	는 서명	! 견	주	민등	록번	호						
의	33	아	0.000	성명					100010	는 서명	01	1000	명						<b>1</b>	王는	서명
자	f	내	모	성명					0.000	는 서명	X9=52	주	민등	록번	호						
⑨신	고인	] {	출석(	겨부					1 1	남편(브	∤)			2	I 아	내(	村)				
@제	출인	l		성명							7	즈민	등록	번호				==	1		
W ELC	TOT Y	I CH	CC I	OLTE		LO IT	=1010	M 41	7.73	제속하다	in t	-IOI		=104	71.25	21.20.5		MIT SERVE	THO I		LEAT

### 인구동향조사

① 실제 결	혼 생	활 시작일		The 105 55501	년	윌		일부터	동거	5503 100 5004000	
<ul><li>환인종류</li></ul>			재혼 ③이	혼 후 재혼			II초혼		후 재혼 ③이	혼 후 재혼	
④ 최종	남편	I 학력 없음 2	초등학교	③ 중학교		아내	I 학력	없음	2 초등학교	③ 중학교	
졸업학교	(부)	4 고등학교 5	대학(교)	6 대학원	이상	(처)	4 고등	학교	5 대학(교)	6 대학원	이상
환 직업		<ul> <li>과라직</li> <li>사무직</li> <li>판매직</li> <li>기능직</li> <li>단순노무직</li> <li>학생·가사·무직</li> </ul>	2 전문직 4 서비스 6 능림어 8 장치·기 10 군인	직	조립	아내 (처)	1 관리 3 사무 5 판매 7 기능 9 단순 11 학생	직 직	10 군인	느즤	조립

<sup>♥</sup> 다인의 서명 또는 인상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실제와 나는 사일 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u>형법에 의하여 처벌</u>받을 수 있습니다. <u>눈표(\*)로 표시한 자료</u>는 국가통계작성을 위해 통계청에 서도 수집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sup>※</sup> 아래 사항은 「동계법」 제24조의2에 의하여 동계청에서 실시하는 인구동향조사입니다. 「통계법」제32조 및 제33조에 의하여 성실용답의무가 있으며 개인의 비밀사항이 철저히 보호되므로 사실대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sup>※</sup> 첨부서류 및 혼인당사자의 국적과 혼인종류는 국가통계작성을 위해 통계청에서도 수집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 작 성 방 법

- ※ 등록기준지: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 ※ 주민등록번호 :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 일)를 기재합니다.
- ※①,②란 및 ⑤,⑦란은 신고인 모두가 기재하며, 나머지 란(③,④,⑥,⑥)은 해당되는 사람만 기재합니 다
- ※ 주민등록전입신고는 본 가족관계등록신고와는 따로 하여야 합니다.
- ②란 : 혼인당사자가 양자인 경우 양부모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 ③란:외국방식에 의한 혼인증서등본제출의 경우 혼인성립일을 기재합니다.
- ④란:「민법」제781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러한 사실을 표시합니다
- ⑤란:혼인당사자들이「민법」제809조제1항에 따른 근친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실[8촌이내의 혈족 (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을 표시합니다
- ®란: 아래의 사항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재판에 의한 혼인신고(양 당사자가 생존한 경우에 소제기자만 신고 가 능)의 경우에는 재판법원 및 확정일자
  - 부모의 혼인으로 인하여 혼인중의 자의 신분을 취득한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그 자녀의 성명, 등록 기준지
- ⑦란 : 증인은 성년자이어야 합니다.
- ⑧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2018, 6, 30,까지는 금치산자 포함)이 혼인하는 경우에 동의내용을 기재 합니다.
- ⑩란: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 호를 기재합니다.[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 ※ 아래 사항은 「통계법」 제24조의2에 의하여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인구동향조사입니다.
- ⑩란: 결혼일자와 관계없이 실제 부부가 결혼(동거)생활을 시작한 날을 기입합니다.
- ⊕란: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모든 정규교육기관을 기준으로 기재하되 각급 학교의 재학 또는 중퇴자는 최종 졸업한 학교의 해당번호에 '영표(○)'로 표시합니다. 〈예시〉 대학교 3학년 재학(중퇴) → ④ 고등학교에 '영표(○)'로 표시
- ●란:결혼할 당시의 주된 직업을 기준으로 기재합니다.
- 관리자: 정부, 기업, 단체 또는 그 내부 부서의 정책과 활동을 기획, 지휘 및 조정(공공 및 기업고위직 등)
-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 전문지식을 활용한 기술적 업무(과학, 의료, 복지, 교육, 종교, 법률, 금융, 예술, 스포츠 등)
- ③ 사무종사자 :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를 보조하여 업무 추진(행정, 경영, 보험, 감사, 상담 안내 통계 등)
- ④ 서비스종사자: 공공안전, 신변보호, 돌봄, 의료보조, 미용, 혼례 및 장례, 운송, 여가, 조리와 관련된 업무 ⑤ 판매종사자: 영업활동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판매(인터넷, 상점, 공공장소등), 상품의 광고·홍보, 계산·정산 등
-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 작물의 재배·수확, 동물의 번식·사육, 산림의 경작·개발, 수생 동·식물 번식 및 양식 등
-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광업, 제조업, 건설업에서 손과 수공구를 사용하여 기계 설치 및 정비, 제품 가공
- 기용권 보는 기용 증시가 중입시에보입, 언급입에서 문과 구승포를 가용하여 기계 결심 및 용이, 제임 기용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 기계를 조작하여 제품 생산·조립, 산업용 기계·장비조작, 운송장비의 운전 등 단순노무 종사자 : 주로 간단한 수공구의 사용과 단순하고 일상적이며 육체적 노력이 요구되는 업무 |군인 : 의무복무를 포함하여, 현재 군인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국방분야에 고용된 민간인과 예비군은 제외)
- 학생·가사·무직: 교육기관에 재학하며 학습에만 전념하거나, 전업주부이거나, 특정한 직업이 없는 경우

### 첚 부 서 류

### ※ 아래 1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 1. 혼인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2. 혼인동의서[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2018. 6. 30.까지는 금치산자 포함)이 혼인하는 경우, 단 신고 서 동의란에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는 예외] 및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피성년 후견인의 혼인에 성년후견인이 동의하는 경우만)
- 3.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재판이 확정되어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그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 각 1부[조정, 화해성립의 경우 조정(화해)조서 및 송달증명서 각 1부].
- 4. 혼인신고특례법에 의한 혼인의 경우 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1부.
- 5.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
  - · 한국방식에 의한 혼인의 경우:외국인의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중국인인 경우 미혼증명서) 원본 및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각 1부. 외국 방식에 의해 혼인한 경우: 혼인증서등본 1부 및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 사본 1부
- 6. 「민법」제781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를 한 경우에는 협의사 실을 증명하는 혼인당사자의 협의서(가족관계등록예규 제414호 별지1 양식) 1부.
-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3호에 의함]
  - ① 일반적인 혼인신고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신고인 불출석, 제출인 출석의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 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없이 신고서에 신고인이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신고서 에 인감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 모두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서에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인감 을 날인한 경우는 인감증명서)
  - ② 보고적인 혼인신고(증서등본에 의한 혼인신고)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7항의 ②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 께 첨부해야 합니다
- ※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재판이 확정되어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신고인(소제기자)의 신분확인으로 불출석한 신고인의 신분확인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 4. 이혼신고서

	-	_
101-21	-111	1
I O L A	ALL	
[양식	- / YII I	- Y-

	1500	존( {	친권자	- 3		35 A	]			100 to 10	70 TO 80	면의 작성 ))'로 표시	0. 0.0		
		구 분	년	울 	1	일) 남 ∓	<b>년</b> (부)		107	1112 0	, 111/		내(처)	-1 = -1	-1.
		 성명	한글	* (	형)	/ (명)	70207-8		는 서명	* (전)		/ (명)	2131 1030	கொ	- 11π <b>:</b>
		2 2	한자	(정)	1	(명)		W ±	근시병	(설)	/ (Pg	D		① 王 <del>·</del>	그시망
① 이 ~ 호스	ī	본(*	L 한자)			전 화	Ī			본(한	자)		 전화		
이 - 혼 당고 사인 자	<u> </u>	*주민공	등록번호			85							ii S		
자 -	1	출생역	연 윌 일												
		*등록	기준지												
		*주	소												
_		부(양-	부)성명												
② í 부입	] 	주민 등	록번호			超						<u>(2.0</u>	Ş.		
- 투 모5		모(양.	모)성명												
500		주민등	목번 호			<del>=</del>						75	%		
75 <del>0</del> 2771040	-2-201 32	사 항							- 1						
④개 <sup>:</sup> (	판퐉	정일자	)			년	윌	일	ţ	법원명				법원	
	este Fill assess	9-24000	아래 친권	자란	은 협	의이혼 시에	는 법	[원의 학	협의이	혼의사회	†인 :	후에 기재힙	니다.		
	astata		<sup>사의</sup> 성명												
_	- 2	주민 등	록번 호		-	=					-	=			
⑤ 친		친권	자	1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b>②</b> 모	효력발생일		년 윌		1 学 2	1	효력발생일		년 윌	일
권		200723000	95 BV BVVa	③부	工	원인	1	협의 ②	재판	3부모		원인	I 협º	의 ② 재	<u> </u>
자 지	미	성년인 2	사의 성명 												
정	-	주민 등	록번호		- 64						- P	===	i .		
1000		친권	자		2모	효력발생일		년 윌	일	I 부 [2	-1	효력발생일	ા	년 윌	일
				3 부	모	원인	1	협의 🗵	재판	3부모		원인	II 협의	의 🖸 재	<u> </u>
⑥신.	고인	출석이	부				I	남편(투	<u>.</u> )		2	아내(처)			
⑦제-	출인		성 명						주민등	록번호			5 <del>11</del> 5		
을 선	기록 도 <u>수</u>	하게 ㅎ 집하고	)는 경우에 있는 자료(	는 <u>형</u> 입니다	변에 9	허위의 신고서 <b>계하여 처벌</b> 받 	을 수 	있습니다	斗. <u>世</u> 丑	(*)로 표	시한	<b>자료</b> 는 국가	통계작성	을 위해	통계청(

- 아래 사항은 「동계번」 제24조의2에 의하여 동계청에서 실시하는 인구동향조사입니다. 「통계번」제32조 및 제33조0 의하여 성실용단의무가 있으며 개인의 비밀사항이 철저히 보호되므로 사실대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첨부서류 및 미혼당사자의 국적은 국가통계작성을 위해 통계청에서도 수집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인구동향조	스사	025						
A TOTAL CONTRACTOR	ALC: The control of the	활 시작일 월일	년 년	월 월	일부터 일부터	⊕ 19⁄	세 미만 자녀	수		명
(명절제 이 (환최종 졸업학교	는 신 남편 (부)	1 학력 없음 4 고등학교	<u>고</u> 초등학교 5 대학(교)	3 중학 <b>6 대학</b>	<u> </u>	아내 (처)	① 학력 없음 ④ 고등학교	2 초등학3 5 대학(교		(66
☞ 직업	남편 (부)	① 관리직 ③ 사무직 ⑤ 판매직 ⑦ 기능직 ⑨ 단순노무직 Ⅲ 학생·가사·무	2 전문직 ④ 서비스 ⑤ 농림어 ⑧ 장치·기 10 군인	직 업		아내 (처)	① 관리직 ③ 사무직 ⑤ 판매직 ⑦ 기능직 ⑨ 단순노무지 Ⅲ 학생·가사·		문직 비스직 팀어업 비기계 조작 및	

### 작성 방법

- ※ 등록기준지: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주민등록번호: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 ①란:협의이혼신교의 경우 반드시 당사자 쌍방이 서명(또는 기명날인) 하여야 하나, 재판상 이혼신교의 경우에는 일 방이 서명(또는 기명날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②란:이혼당사자의 부모가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본적)를 기재합니다. 이혼당사자가 양자인 경
- 우 양부모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며, 이혼당사자의 부모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란에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출생연월일) 및 국적을 기재합니다.
- ③란: 이래의 사항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 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 신고사건으로 인하여 신분의 변경이 있게 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그 사람의 성명, 출생연월일, 등록기준지 및 신분변경의 사유
  - 피성년후견인(2018. 6. 30.까지는 금치산자 포함)이 협의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동의자의 성명, 서명(또는 날 인) 및 출생연월일
- ④란:이혼판결(회해, 조정)의 경우에만 기재하고,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 :조정성립,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화해성립이나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이혼신고의 경우에는 "재판확정일자"아래 ) 아에 "조정성림",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확정" 또는 "화해성림", "화해권고결정"이라고 기재하고, "연월 일"란에 그 성립(확정)일을 기재합니다.
- ®란: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시에는 기재하지 아니하며, 법원의 이혼의사확인 후에 정하여진 친권자를 기재합니다.

지정효력발생일은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신고일, 재판상이혼의 경우에는 재판 확정일을 기재합니다.

원인은 당사자의 협의에 의해 지정한 때에는 "[T]협의"에,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법원이 결정한 때에는 "[고재 판"에 '형표(○)'로 표시하고,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자녀가 5명 이상인 경우 별지 기재 후 간인하여 첨부합니다. 임신 중인 자의 경우에는 출생신고 시 친권자 지 정 신고를 합니다.

- ⑥란:출석한 신교인의 해당번호에 '영표(○)'로 표시합니다.
- ⑦란: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 다.[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 ※ 아래 사항은 「통계법」 제24조의2에 의하여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인구동향조사**입니다.
- ⑩란, ⑪란: 가족관계등록부상 신고일이나 재판확정일과는 관계없이 실제로 결혼(동거)생활을 시작한 날과 사실상 이혼 (별거)생활을 시작한 날을 기재합니다.
- ⑩란: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모든 정규교육기관을 기준으로 기재하되 각급 학교의 재학 또는 중퇴자는 최종 졸업한 학교의 해당번호에 '영표(○)'로 표시 합니다. <예시> 대학교 3학년 재학(중퇴) → ④ 고등학교에 '영표(○)'로 표시 ⑩란:이혼할 당시의 주된 직업을 기준으로 기재합니다.
- 관리자 : 정부, 기업, 단체 또는 그 내부 부서의 정책과 활동을 기획, 지휘 및 조정(공공 및 기업고위직 등)
- 고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 전문지식을 활용한 기술적 업무(과학, 의료, 복지, 교육, 종교, 법률, 금융, 예술, 스포츠 등)
- ③ 사무종사자: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를 보조하여 업무 추진(행정, 경영, 보험, 감사, 상담 안내 통계 등)
- ④ 서비스종사자: 공공안전, 신변보호, 돌봄, 의료보조, 미용, 혼례 및 장례, 운송, 여가, 조리와 관련된 업무
- ⑤ 판매종사자 : 영업활동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판매(인터넷, 상점, 공공장소 등), 상품의 광고·홍보, 계산·정산 등
- 농림 어업 숙련 종사자 : 작물의 재배 수확, 동물의 번식 사육, 산림의 경작 개발, 수생 동식물 번식 및 양식 등
- 🖸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 광업, 제조업, 건설업에서 손과 수공구를 사용하여 기계 설치 및 정비, 제품 가공 图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 기계를 조작하여 제품 생산·조립, 산업용 기계·장비조작, 운송장비의 운전 등
- ⑨ 단순노무 종사자 : 주로 간단한 수공구의 사용과 단순하고 일상적이며 육체적 노력이 요구되는 업무
- 군인 : 의무복무를 포함하여, 현재 군인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국방분야에 고용된 민간인과 예비군은 제외)
- Ⅲ 학생 가사 무직: 교육기관에 재학하며 학습에만 전념하거나, 전업주부이거나, 특정한 직업이 없는 경우

### 처 부 서 류

- 1. 협의이혼: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 1부
- 2. 재판이횬: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조정·화해 성립의 경우는 조서등본 및 송달증명서),
- 3.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의한 재판상 이혼
  - 이혼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과 판결확정증명서 각 1부
  - 패소한 피고가 우리나라 국민인 경우에 그 피고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의 개시에 필요한 소환 또는 명령의 송달을 받았거나 또는 이를 받지 아니하고도 응소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1부(판결에 의하여 이점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 위 각 서류의 번역문 1부
- ※ 이래 4항은 기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 4. 이혼 당사자 각각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 5.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
  - 한국 방식에 의한 이혼:사건본인 쌍방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사본 첨부
  - 외국 방식에 의한 이혼: 이혼증서 등본 및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각 1부
- 6. 친권자지정과 관련한 소명자료
  - 협의에 의한 경우 친권자지정 협의서등본 1부.
  - 법원이 결정한 경우 심판서 정본 및 확정 증명서 1부.
- 7.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3호에 의함]
- ① 재판상 이혼신고(증서등본에 의한 이혼신고 포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7항의 ①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 ② 협의이혼신고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고인 일방의 신분증명서
- 신고인 불출석, 제출인 출석의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 일방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공증 또는 인감 증명서(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없이 신고서에 신고인이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신고서에 인감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 일방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서에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인감을 날인한 경우 는 인감증명서)

# 5.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신고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9. 7. 16.>	시행규칙[발	지 제5	호서식] <	대정 2019.	7. 16.>			8	3		32	2	55	2	6	8		
	를 되 한 한 한 한	는 다 다 다		구	사업장가입자 피보험 자격 <sup>추</sup>	100000 00	자격취득 신고서 득 신고서	마 장	년 전	건 상 재 표	一 一		직장가 다 R 자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2 2 3 3 3 3	사 스	도격취득 신고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근로자 고용 신고서	<del>포</del>	
***	야니함	작성 방법 설비는 공연 4대 수현	대학교 (교 대학 (교	%을 참고: :사를 합t. 각의 자격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색상 를 합니다. 자격취득일 또는 윌 소득 <sup>9</sup>			이 사 10 일 의 기	AL LP	않습니다. 수액)이 서로 다	H0 0개	· · · · · · · · · · · · · · · · · · ·	정 한민 그	200				(제1쪽)	ρĺε
					¥1	ľ	I	1				i		기간: 3일(교	고용보험은	2일)			, i
		사업장관리	한리번호	أمار			云0 田0			다	위사업장 밀	云0 云0		80 원교 식	표0 전0				ſ
	사업상	소재지								- 2					아	년 년 (	_		1
		전화번호	del	5,						乱	스번								120
340000	보험사무 대행기관	대 어					품0 목0			수수	ਨੂ	관리번호(건설공사	설공사 등의	미승인	하수급인만	· 幸哈中			T
		,	r H		-	-		뀨	국민연금		건강5	[강보험			둳井용단	고용보험·산재보험	盃		ľ
Т		ro.	T H	文用古			207	ग्र	(H	Ŕ	교 교	바마	티지	K			면 면 면 면 면 면 면 면 면 면 면 면 면 면 면 면 면 면 면	일자리	10079
戼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대대 기계대 기계대한	型 式 型 型	<u>바</u> ਲ		애·왈평균보수액) (원)	(YYYY. MM,DD)	<u>*</u> - 메디어 - 보니마	(전) 하 (전) 하 (전) 하 (전) 하	- KF 과는	대마 에떠	는 지 하 하	본 사 전 카 묘 이 어	소마 위에어 선미고≺	스타아 각무여 종합씨 생활	· 回	장자 장성) 호 사유	- 27	
-				[ Jack D   1   1   1   1   1   1   1   1   1	<u></u> બ		9	(1 1취득 활	대 대 변망	[] [] [] [] []		([]피부양자 신청)		[]DB	]고용보험(예약적 여부:[ ]산재 보험		]예, [ 기사요)	를 기 어디어	924
0				- 1 년 - 1 년	<u> </u>			[ ] 국단 ([ ]취득 월	면 대대 변명	[ ]건강보험	를 	무양자 신청)		[]D85	변함(계약적 ( 보험			1 Ja 2 Ja	10
ď				1.000					는 다음 다 다 다 다	[ ]건강보험	= =		)	[] [] [] []	] 고용보험(계약적 여부: [ ] 사재 보험		(5 1 1 1 1 1 1 1	[ ]a	.  25
×					<u>어</u>				; S.	7. 7. 7. 7. 7. 7.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声	(9,716)		34
4				다. 10g 다. 10g c. 10g c	어		<u> </u>	- UIT -	음 태 - 대 - 대 - 대		([]] ([]] ([]] ([]] ([]] ([]] ([]] ([]]	(양자 신청) -		[] [] []				- 1 Ject 2 - 1 - 1 - 1 - 1 - 1 - 1 - 1 - 1 - 1 -	721000
아	얼 같이	자격취 등	조기	고합니다.					- E		7						וב	제	500
				신고인	신고인(사용자・대표자)	・ 引用 不)			医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대행기관	무대행기관	힌!				(서명 또는 인	<u>=</u>
1F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광단 이	꺗	-/국민	건강보흗	33 <u>5</u> 00	사장/근	로복자	원	이사장/근로복지공단 OO지역본부(지시)장	 본부(자	(사)장	귀하						
														297mm×2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상지(809	3.5	중질지(809/㎡)]	<b> </b> =

	꾸민연마	
사 하 수 하 나 이 아니?	건강보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신청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얻으려는 사람이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 가, 재외국민: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 1부 나,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증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또는 국내거소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만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해당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 등을 기재한 서류
		유의사항
건강보험	1, 피부양자가 있 2, 건강보험증은 7입	피부양자가 있을 때에는 제5쪽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증은 기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하는 경우 발급됩니다. 신청절차는 가까운 지사방문, 고객센터(점1577~1000), 홈페이지(www.nhis.or.kn), 모바일앱 "M건강보함" 등에서 가능합니다.
면 면 대	임의가입대상 외국인근로자는	국인근로자는 "고용보험 외국인 가입·가입탈퇴·피보험자격 취득신청서"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신청	100	일자리안정자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만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이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及这种的
다 주 사 아	1. 신교대상 가입자 또는 2.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5 신교번호)를 적습니다. 3. 자격취득일란에는 해당	신고대상 가입자 또는 근로자별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취득 및 고용 여부에 관하여 해당되는 "[]"에 "4" 표시를 합니다.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 신고번호)를 적습니다. 자격취득일란에는 해당 사업장의 채용일 등을 적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자격취득 사유가 사업장 전입인 때에는 상대 사업장에서의 전출일과 같은 일자를
	적습니다. 4.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	에는 국적 및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기재내역)을 적습니다.
구 면 면	1. 특수직종부호는 하 중 어선에서 직접 2. 국민연금의 경우 3. 취득일이 1일인 경 4. 「공무원연금법」, 를 얻은 자는 사업	1당 근: 어로착 18세 미 3수를 기 7구인
건강보험	공무원· 교직원의	의 경우에만 회계명, 회계부호, 직종명, 직종부호를 적습니다.
다 가 사 사 보 가 보 보 다	1. 산재보험 관리 2. "왤평균 보수약 3. "1주 소정 근로 4. 피보험자의 계 정해져 있다면 것으로 계약을 5. 보험료 부과부	(1970) DE L S22/207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3쪽)
						자격취득 부호 등					
사 면 라	[자격취류 [주수 경종 [지역연급	전 전 전 미 에 에	에 에 에 비 바 바 바	01, 18k 03, 18kk 시기 바랍 1, 광원 1, 작역· 2, 직역	레 이상   미만   발나다)   2. 부   연라( 「	연취득(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1호 가목,나목 특 09. 전입(사업장 통·폐합) 11. 대학시간강사 12 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 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	및 제4호 2. 60시간 결금법」, 연금법」,	4호 가목, 1간 미만· , 「별정속	가목, 나목, 다목을 - 미만 신청 취득(근 - [발정우체국법」에	다목의 경우  독(근로자 th 합」에 따른 법」에 따른	, 다목의 경우를 포함한다) 취득(근로자 본인이 원하고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적으 합」에 따른 연금) 가입자 감비」에 따른 연금) 수급권자
건 강 보함	(자 추 는 무 는 무 는 무 는 무 는 무 는 무 는 무 는 무 는 무 는 무	파 파 고 구	[ 전 파		최초취득 04. 13. 기타 14 11. 해외근무(( 가) 41. 섬	00. 최초취득 04. 의료급여 수급권자등에서 제외 05. 직장가입자 변경 06. 직장피부신청 13. 기타 14. 거주불명 등록 후 재등록 29. 직장가입자 이중가입 1 11. 해외근무(전액) 12. 해외근무(반액) 21. 현역 군 입대 22. 상근예비역(현역 타) 41. 섬 ·벽지(사업장) 42. 섬 ·벽지(거주지) 81. 휴직	경 66. 가입 간근예비		'양자 상실 입대) 24.	일 07. 지 . 상근예!	07. 지역가입자에서 변경 10. 유공자 등 건강보험 적용 상근예비역(근무) 31.시설수용(교도소) 32. 시설수용(기
	전 전 <b>레</b>	ᆘᇜᅵ	부호] 제4쪽의 별 로 <b>부과구분 부호</b> ]	를 <mark>를 </mark>	[한국고용	별지[한국고용직업분류(KECO ′18) 중 소분류(136개) 직종현황]를 한]	I	참고하여 적습니다	구.		
			습	과범위				급	부과범위		
	11-	샾	산재보험	더	- 8 1 9 1 9 1			산재보험	면	80 보고	F N C 7 2
년 여0 퍼	ю	면 다 교	임마 부마마 나마마	था पा राष	고 고 요 라 라 라 라 라	어 바 - - - - - - - - - - - - - - - - - -	어 선 퍼 판 쩐	마 대 대 마 마	전 전 전 전 전	고 다 일 명 요 로 매 마 다 를 내 대 장	文 내 네 1 1 2 5 5 5
· 산재보험	51	0	0	×	×	09.고용보험미가입.외국인근로자 10.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11.항운노조원(임금체권부담금 부과대상)	×	×	0	0	05.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06. 1선원법, 및 '머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적용자 07.해외파견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 지 않는 자)
	52	0	×	×	×	03.현장실습생(「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3조제1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 13.항운노조원(임금채권부담금 소송승소)	×	×	0	×	01.별정적·임기제(일반, 전문, 시간선택제, 한시)공무 원 16.노조전임자(노동조합 등 금품 지급)
	54	0	×	0	0	22.자활근로종사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4조의 2에 따른 급여의 특례에 해당하는 자, 차상위계층, 58 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0	×	×	0	21.자찰근로종사자(생계급여 수급자)
										297	297mm×210mm[백상지(80g/mʰ) 또는 중질지(80g/mʰ)]

[별지]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18) 중 소분류(136개)	) 직종현황		(계4쪽)
0.경영·사무·금융·보험적	158 소방 방재 산업안전·비파괴 기술자 150 제도간 및 기단 이제 목개 독 교학 기숙자 및 1현의	52, 여행·숙바·오락 서비스직	82, 금속·계료·설치·경비·생산직
01.관리직(임원·부서장)	아무기 하는 하는 하는 이 아니는 이 아이를 가지 않는데 하는데 하는데 하는데 하는데 하는데 하는데 하는데 하는데 하는데 하	여행 서비스원	Table select
일학의원교	472	522 항공기·선박·열차 객실승무원 523 숙박시설 서비스원	
양상 성영 마양 보업 전무성비스 보인수	21. 교육직	오락시절 서비스	다. 사사 안안 안안 되었으면 되었으면 되었으면 되었으면 되었으면 되었으면 되었으면 되었으면
014 미용 여행 숙탁 음식 경비 청소 관리자 015 여억 파매 숙소 되기가	211 대학 교수 및 강사 212 학교 교사	53, 음식 서비스직	825 도작한 및 도금원 825 비스소에 제 개시기에 조자의
2월 채굴 제조·생신	213 유치원 교사 214 문리 기술 예능 강사	531 주방작 및 조리사 532 식당 서비스원	88. 전기·전자
02. 경영·행정·사무직	장학관 및 기타 교육 종시	54. 경호·경비직	· 유
주0 <b>곳</b>	1000	541 경호 보안 종사자 549 경희의	전기·전자 기기 반자 표저 가기
0.2. 3 의 에서 감조 건문가 0.2. 화계 세구 감조 건문가 0.2. 화기 조사 산폭기회 해사기회 저무가	222 법률지국가 222 법률자무원	6	834 전기·전자 설비 조작원 835 전기·전자 부품·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사람 나는 있어요? 1.1 전 상부 하라 해정 사무원 요요한 같아?	23. 사회복지·종교직	550 돌봄 서비스 종사자	전기전자 부품 제품 조립원
한 20년 소구한 연계·경리 소무원 11년 20년 소무원	지사 및 상담사	56. 청소 및 기타 개인서비스직	84. 정보동신 설치·정비직
마위	요작파수 및 기단수업을 성격자 및 기타 종교 등	562 철술,발명,뭔 가사 서비스원 562 철침,후차관리 및 기타 저비스 단순 종사자	841 정보통신기기 설치 수리원 842 방송통신장비 설치 수리원
03. 금융·보혁적	24. 78.	6. 영업·판매·운전·운송지	85. 화학·환경 설치·정비·생산직
급응 보험 건	7-	61. 영업·판매직	석유·화학물 기공장치 조작원
032 급광 보험 사무원 033 급광 보험 영업원	ı	611 부동산 건설턴트 및 중개인 612 영영의 및 산품주개이	1852 고무 플라스틱 및 화학제품 생신기계 조작원 및 조립원 1853 환경관련 장치 조작원
1.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	23	. T	86 설유·의복세사고
11. 인문·사회과학 연구직	3, 보건·의료직	사 보는 사 이 이 에 비를 다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서오 제조.가고 기
110 인문 사회과학 연구원		bib 매성 계산원 및 매표원 617 판촉 및 기타 판매 단순 종사자	862 피타 실내 사용사 등 18 명은 회원 시간 및 개봉사 등 18 명은 의원 시간 및 개봉사 등 18 명은 의원 시간 등 18 명은 의원 시간 등 18 명은 기간 등 18 명은 기간 등 18 명은 기간 등 18 명은 18
12. 자연·생명과학 연구직	의 수,일 수,학	62. 운전·운송과	시학 시간원 원 제학원, 기타 설
121 자연과학 연구원 및 시험원 122 새벽과하 여그의 및 시험의	[303 약사 및 한약사 [304 간호사	쀖	87. 식품가공·생산직
13. 정보통신 연구개	305 영양사 306 실입기사치료사재활사 507 비의 이글 초1171	623 물품이동2대 조작원(크레인·호이스트·지계차) 624 택배원 및 기타 운송 종사자	871 제과 제행원 및 딱제조원 872 식품 기공 기능원
등	H H	7. 건설·제굴직	식품 가공 기계
32. 심퓨터시기를 입자수 33. 소마트웨어 개발자 24. 당한 말하고 하고 말 6.소.	41 예속·디자인·병	70. 건설·제굴직	88. 인쇄·목계·공예 및 기타설치·경비·생산직
134 네이터·네트워크 및 시스템 군영 선군가 135 절보보안 전문가 136 절보보안 전문가	작가통번역가	701 것설구조 기능원 960 것싳따가 기는원	881 인쇄기계·사진현상기 조작원 882 모재·평프·조이 재사기혜 조자의
하 공산이라공들 성미 기사	기자 및 언론 전문가 한예사사사기로문과기	(皇) (内) (中)	가구 되게 되었습니다.
14, 건설·제굴 연구개발식 및 강학 기술식	414 창작공연 천문가(작가, 연극 제외) 415 디자이너	704. 건설채를 기계 군선원 705. 기타 건설 기능원(채굴포함)	िं
140 건축 토목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416 연극 영화방송 전문가 417 문화예술 기획자 및 매니저	건을·재重	89. 제조 단순직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 E	890 제조 단순 종사자
15. 제조 연구개발식 명	에이션 종사자	81, 기계 결지·경비·생산식	9. 농림어업직
52 교수 도롱하인 52 교수 작품하인 24 조롱 조롱 27	5. nl \$-od off	811 기계정비 설치·정비원(운송장비·제외) 812 운송장비 전비원	90. 농렬서업직
소스라의 기록수 및 시험 한학 기술자 및 시험원 전.회격교학 기속자 및 시	51. म <del>ीड</del> ़ि	813 금형원 및 공작기계 조작원 814 냉난방 설비 조작원	901 작물재배 종사자 902 낙동·시육 홍사자
56 설문과학기술자 및 시험원 57 설품용학기술자 및 시험원	511 미용 서비스원 512 결혼강례 등 예식 서비스원	815 사동소립대인·산업용도못 소식원 815 기계 조립원(군송장비 제외) 817 운송장비 조립원	903 임업 출시자 904 어업 총시자 905 농림어업 단순 총시자
57 직품공학 기줄지	일은 상태 등 예식 서비스	010 기계 꼬립전(군중당의 예과) 817 운송장비 조립원	

		KI	직장가입자 자격	자격취득 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可早 発 水 ア	있는 경우)		
※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에 작성합			) -	)   		(제5쪽)
개입자	50 品			주민등록번호(외국인동	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호)		
	3	S- 200	주민등록번호	장애니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보훈보상대상지	상대상자	이 가 이	리
	市	품0 ₹0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었0 포매 파	(MWYYMM,DD)	<b>भ</b> स्र	체류자격	체류기간
可早양环	لِي ا							
March Colon Colons	000	Control of the second s	100 March 100 Ma					
위와 같이	이 직장가입자 자격	J자 자격 취득사항을	: 신교합니다.	ğ	S)	2	<u>ə</u>	와N SN
국민간	[강보험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신고인(사용자)	용자)		(서명 또는 인)
전 전 과 마	1. 가짜관계 2. 「장애인 전110411 상이하다 의을 하면 가. 보인되 다. 외국인 만 제출	1.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1부(주민등록표 등본으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과 「보훈보상대상자 지 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장애인, 국가유공자 3. 피부양자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재외국민 가, 재외국민: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 나,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동포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또는 국내거소신고 만 제출합니다) 1부	60년 (1) 10년 (	로 제2조제1항 각 호의 요건 총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가 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등본 1부 상 국내거소신고증 사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 사실증명(「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 사실증명(「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	요건 총족 여부를 확인할 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제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곱자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다짐의 구분에 따른 서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율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실을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실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조세73조 및 제74조에 따른 3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4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 5 1 1 1 1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 1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	출합니다) 전세 같은 법 제6조의4에 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	아 등 이 등 이 등 이 등 이 등 이 등 이 등 이 등 이 등 이 등
				유의사항	ф0			
※ 건강보험	증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하는	: 경우 발급됩니다. 신청절차는	가까운 지사방문,	고객센터(121577-1000), 홈페	홈페이지(www.nhis.or.kr), 모	모바일앱 'M건강보험' 등에서	서 가능합니다.

# なるのは

- ※ 가입자 신고는 "건강보험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에 적어야 합니다.
- 1. "관계"는 가입자와의 관계를 적습니다. (예 : 배우자,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손녀 이하, 형제자매, 처부모, 시부모, 사위, 며느리, 증조부모 등) 2.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는 피부양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는 국내 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 3. 장매인, 국가유공자 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인 경우에는 종별 부호 및 등록일을 적습니다. [종별 부호] 1, 지체장매인 2. 뇌병변장매인 3. 시각장매인 4. 청각장매인 5. 언어장매인 6. 지적장매인 7. 자폐성장매인 8. 정신장매인 9. 신장장매인 10. 심장장매인
  - 11. 호흡기장매인 12. 간 장매인 13. 안면장매인 14. 장루·요루장매인 15. 뇌전증장매인 19. 국가유공자 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피부양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기재내용) 및 체류기간(외국인등록증 발급일부터 출국 예정일까지)을 적습니다. 4. R
    - 첨부서류가 있는 경우 첨부서류 유무란에 "이"표시를 합니다.

297m m×210m m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6. 구인신청서(상용)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8, 12	, 28,>		ttp://www.work.go.kr)에서도 는 있습니다
		구인신경	형서(상용		
   ※ 2쪽의 유의	사항과 작성방법을	■ <b>■— ■— ●</b> +>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J다
※ 색상이 어드	무운 난은 신청인이	이 작성하지 아니하며,[]에는	를 해당하는 곳에 ﴿	√ 표시를 합니다.	(15)
구인인증번호		접수일		140	처리기간: 1일
	①사업체명(*)			지사	
	②사업자등록변			홈페이지 대표자(*)	
업체현황	소재지(*) (의	Uniconstitute consist.		-11-11-11-11	
	업종(*)	20.000.000.0000	③사업내용(*	)	
	④근로자 수(*)	총	명 ⑤자본금	백만원	연 매출액 백만원
	기타 회사소가			190	
	⑥채용제목(*	)			
33	모집직종(*)			모집인원(*)	명
	직무내용(*)				
3	학력(*)	[ ]	이상	[ ]관계없음	
N	경력(*)	[ ]신입 [ ]경		개월 이상)	[ ]관계 없음
구인사함		[ ]사업체 본사	h업체 지사 [	]소재지와 동일	[ ]그 밖의 다른 사업
	근무예정지(*)	주소 (우편번호 :	)		
		소속산업단지			
	고용형태(*)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			는 근로계약(기간 개월) 로 후 상용직 전환 검토)
	(복수	[]파견근로 [	]대체인력	[ ]M=710 Ex	· 후 88기 인천 업포/
-	선택가능)	[ ]시간제 ※위의 고용	형태를 시간제로	. 고용하기를 희망	방하는 경우
	임금지급형태 및 금액(*)	[ ]연봉 [ ]월급 [ ]일 ( )원~(		상여금 별도( [ ]총액 [ ]기년	)% [ ] 면접 후 혐의 가 력급 능
-	식사(비) 제공	116	3식 [ ]중식비 2	지급 [ ]없음	
근로조건	근무시간	: ~ : ([]시간협의 가능)[]21	704 30 JONES CO.	1주당 소정	근로시간 ( ) 시간
	및 형태		]격일 근무		
	퇴직금 형태(*)	[ ]퇴직금 [ ]퇴직연금	금 []해당사힝	없음(근로계약기	간 1년 미만 등)
	사회 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험 []건강보험	[ ]국민연금	*
	접수마감일(*)		얼 일)		용 시까지(2개월 이내)
4	접수방법 전형방법	[ ]방문 [ ]우편 [ ]서류 [ ]면접	The state of the s	]전자우편 [ ] ]기타(	]기타( )
	제출서류				]경력증명서 [ ]기타(
전형사항	"LEWIT	) 성명	채용담	다보셔	32
	채용	전화번호		화번호	
	담당자(*)	전자우편	팩스번		// 1410 / 141 <del>7</del>   010\
	2	휴대전화 문자서비스([ ]받음	ANTE TRANSPORT STREET TO SEE	전자우편 서비스	
구인정보	제공 동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  체 등 공공기관 제공 동의		성새로일하기센터 이용기관* 제공 동	5 N 3 1 7 7 7 1 1 1 1 7 7 1 1 1 1 1 1 1 1 1
여-	부(*)	※ 워크넷 구인정보를 이용하여			
「직업안정법	법 시행령」 제5			A STATE OF THE PROPERTY OF THE	위와 같이 구인신청합니
다.					(H) 00
	사업체	명	대표자 또는 신	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직업안계	정기관의 장		귀하		, — L L/
			CORPORATION CONTRACTOR OF THE	nm×297mm[백상지(8	: (Og/m²) 또는 중질지(80g/m²)]

(2쪽)

1.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서 1부(고용형태가 파견근로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파견근무지, 파견 예정업무, 임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 간에 체결 없음 예정인 근로계약서 1부(고용형태가 파견근로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표자 또는 신청

(서명 또는 인)

#### 유의사항

- 1. 구인신청 시 상담 담당자에게 신분증, 재직증명서, 사원증 등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2. 모집직종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직종별로 구인신청서를 각각 작성하셔야 합니다.
- 3. 구인신청 후 채용 또는 사정변경 등으로 구인신청을 취소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구인신청을 한 직업안정기관에 즉시 해당 내용을 알려 구인신청과 관련된 사항을 수정 또는 변경하여야 합니다.
- 4. 구인신청의 유효기간(15일 이상 2개월 이내) 중에 구인신청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같은 직종에 대한 구인 신청을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5.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직업안정법」 제4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작성방법

- 1. 아래의 항목은 해당 작성방법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사업체명: 출장소·공장·영업소·지점 등 지사인 경우에는 지사의 명칭까지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②사업자등록번호: 본사와 다른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한 지사인 경우에는 해당 지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③사업내용: 생산품목(제조업인 경우), 대표상품(상업 및 무역업인 경우), 용역의 종류(서비스업인 경우) 등을 적습니다.
  - ④근로자 수: 지사로 표시한 경우 근로자 수는 해당 지사의 근로자 수를 적습니다.
  - ⑤자본금: 업체 전체의 자본금을 적되, 지사인 경우에는 본사 및 다른 지사를 포함한 전체 자본금을 적습니다.
  - ⑥채용제목: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자세히 기술하되,성별,학력 등 차별적인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작성하셔야 합니다.

(예시: "00년도 하반기 신입사원 공채" 또는 "유치부 초등부 영어 선생님 모집" 등)

- 2. 구직자가 워크넷을 통하여 근무예정지의 위치를 지도에서 검색할 수 있으므로 근무예정지의 주소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 근무예정지와 사업장 소재지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무예정지를 확인하여 정확하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3. 고용형태 중 "파견근로"는 파견사업주가 고용하여 별도의 사용사업주를 위하여 근로하게 하는 고용형태를 말하며, 파견업체가 구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③사업내용란에 "근로자 파견업체"임을 적어야 하고, 파견근로자를 모집하는 경우 구직신청자 중에서 파견근로를 희망하는 사람에 한정하여 해당 구인정보가 공유됩니다.
  - 고용형태 중 "대체인력"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발생한 인력 총원을 위하여 고용하는 형태를 말하며, "시간제"는 그 사업장에 근무하는 통상의 근로자보다 짧은 시간을 근로하게 하는 고용형태를 말합니다.
- 4. 구인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근로조건(임금, 상여금, 근로시간, 식사 또는 식비 제공 여부, 퇴직금 형태)을 정확히 적습니다.
- 5.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를 선택하시면 구인알선정보와 그 밖의 취업지원 정보가 휴대전화문자로 제공됩니다.
- 6. 채용 시 우대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3쪽의 우대조건에 해당 사항을 표시하셔야 합니다.
  - ※ 병역특례대상자는 정부가 지정한 연구기관, 기간산업체 및 방위산업체에 해당되는 구인업체의 경우에만 표시합니다.
- 7. 구인신청의 유효기간은 15일 이상 2개월 이내이며, 신청연장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다시 구인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아래의 난원	은 상담 덤	남당자가 <sup>조</sup>	넉습니다.				
상담 담당자							\$
상담사항							
			업	[무처리 절:	차		
신청서 작성	・제출	<b>→</b>	접수	<b>→</b>	검토	<b>→</b>	구인신청 수리
대표자 또는	신청인		직업안정기관		직업안정기관		직업안정기관
					210mm×297mm[백·	상지(80g/m²	) 또는 중질지(80g/m²)]

	f은 만드시 작성하며 머 구인에 유리할 수		하시면 보다 많은 정보가 구직자에	1	(3쪽)
		추가 정보	1 입력 사항		
	[ ]특정 전공자 [ ]컴퓨터 활용 [ ]회계 프로그	능력 우수자 [ ]문서	작성	53	)
	[ ]해외 연수자	[ ]학점 우수자	[ ]공모전 입상자		
	[ ]외국어 가능	자(외국어명:	, 수준 [ ]	상 [ ]충 [ ]하)	
우대조건	[ ]인근 거주자	[ ]차량 소지자	[ ]운전 가능자 [	]사회봉사 활동 경험	자
	[ ]청년 [ ]북한이탈주민	[ ]여성 [ ]고 [ ]군 전역 간부 [ ]고	1령자 1용촉진지원금 대상자 [ ]보호	흔취업지원대상자 [ ]오	나국인
	(장애인고용 희망	방 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h) [ ]장여 난 등 장애인취업지원기관과 정 낫자 [ ]사회복무요원 소집대	정보가 공유됩니다)	록무요
	  - 1=	- 1-1011 F 1-1-1-6			
복리후생	[ ]주택자금 지 [ ]장애인용주	기원 [ ]직원대출제도 차장 [ ]장애인용승경		]자녀 학자금 지원 ) ]장애인용화장실	
	[ ]기타(	)			
77.	작업장소 [	]실내	[ ]실내・외	[ ]실외	
	드는 힘 [	]5Kg 이내의 물건을 다툼	[ ]5kg 이상 20Kg 이내의 물 건을 다룸	[ ]20Kg 이상의 물건을	다룸
	서거나 걷기 [음	]서거나 걷는 작업 거의 없	[ ]일부 서서 하는 작업	[ ]오랫동 <u>안</u> 서 <mark>거</mark> 나 걷 업	는 작
작업환경	듣고 말하기 [음	]듣고 말하는 작업 거의 없	[ ]간단한 듣고 말하기 필요	[ ]듣고 말하기 중요	
		]일상적인 활동이 가능한 도 필요	[ ]비교적 큰 인쇄물을 읽 을 수 있는 정도 필요	[ ]아주 작은 글씨를 수 있는 정도 필요	읽을
	손 작업 [	]큰 물품의 조립작업	[ ]작은 물품의 조립작업	[ ]정밀한 조립작업	
8:	양손사용 [	]한손으로 작업	[ ]한손으로 보조하는 작업	[ ]양손으로 작업	
	구인신청서의 tp://www.work.g 공개 여부	go.kr) [ ]공개 [	]비공개(비공개 사유:		)
그 밖의 희정	사항				

# 7. 구인신청서(일용)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	l 1호의2서식] 〈개정 2018, 12, 28,〉		3녯(http://www.work.go.kr)에서도 정할 수 있습니다		
		구인신청서(일용	N .			
× ი∞ol ⊝ol	사하고 자서 바버 유	위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는 반드시 작성하		011 Irt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구인인증번호	A CONTRACT C	접수일	T	처리기간: 1일		
	①사업체명(*)		지사			
			홈페이지			
	②사업자등록반		대표자(*)			
업체현황	소재지(*) (유	5 SECTION 18 10 SECTION 18	·			
	업종(*)	③사업내용(*				
	④근로자 수(*)	사회 보험 * 명	[ ]고용보험 [ ]건강보험	무슨 이 경기 아이지를 가지는 것이 가게 있어 때가요? 그 때에서		
	기타 회사소개					
3.	채용제목(*)					
	모집직종(*)		모집인원(*)	명		
	직무내용(*)					
	학력(*)	[ ] 이상	[	]관계없음		
	채용기간	일	경력	년 개월		
	자격면허	il a	2.			
구인사항	기술 · 기능 정도(*)	[ ]미숙련 [ ]반숙련 [ ]숙련	[ ]관계없음			
-	근무예정지(*)	(우편번호 : )				
	근무시간	1 E	임금액(*)	[ ]시급 [ ]일급 원		
	식사제공	[ ]1식 [ ]2식 [ ]3식 [ ]없음	임금지급일			
	접수 마감일(*)	[ ]마감일( 년 월 일)	C.	]채용 시까지(2개월 이내)		
	접수방법	[ ]방문 [ ]우편 [ ]팩스 [ ]전	선자우편 [	] 기타( )		
전형사항	제출서류	[ ]이력서 [ ]자기소개서 [ ]자 )	 자격증 사본 [ ]경력증명서 [ ]기타(			
20/10			담당부서 -			
	채용	전화번호 휴대전				
	담당자(*)	전자우편 백스번 휴대전화 문자서비스([ ]받음 [ ]받지 않 않음)	Charles and the control of the contr	P편 서비스([ ]받음 [ ]받지		
ar ar	362 654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공 동의 [ ]여성	석새 로일 하기센터	서 제공 동의 [ ]지방자치단체		
	제공 동의	등 공공기관 제공 동의 [ ]일자리정보 이용				
여브	부(*)	  ※ 워크넷 구인정보를 이용하여 일자리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 기과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5	조제1항 및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				
다.						
				년 월 일		
	사업체당	명 대표자 또는 신	청인	(서명 또는 인)		
직업안정	정기관의 장	귀하				
		210	mm× 297mm[백산:	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2쪽)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표자 또는 신청

(서명 또는 인)

## 유의사항

- 1. 구인신청 시 상담 담당자에게 신분증, 재직증명서, 사원증 등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2. 모집직종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직종별로 구인신청서를 각각 작성하셔야 합니다.
- 3. 구인신청 후 채용 또는 사정변경 등으로 구인신청을 취소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구인신청을 한 직업안정기관에 즉시 해당 내용을 알려 구인신청과 관련된 사항을 수정 또는 변경하여야 합니다.
- 4. 구인신청의 유효기간(15일 이상 2개월 이내) 중에 구인신청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같은 직종에 대한 구인 신청을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5.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직업안정법」 제 4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작성방법

1. 아래의 항목은 해당 작성방법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ADMINISTRATION AND ADMINISTRATIO

- ①사업체명: 출장소·공장·영업소·지점 등 지사인 경우에는 지사의 명창까지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②사업자등록번호: 본사와 다른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한 지사인 경우에는 해당 지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③사업내용: 생산품목(제조업인 경우), 대표상품(상업 및 무역업인 경우), 용역의 종류(서비스업인 경우) 등을 적습니다.
- ④근로자 수: 지사로 표시한 경우 근로자 수는 해당 지사의 근로자 수를 적습니다.
- 2. 구직자가 워크넷을 통하여 근무예정지의 위치를 지도에서 검색할 수 있으므로 근무예정지의 주소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 근무예정지와 사업장 소재지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무예정지를 확인하여 정확하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5.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를 선택하시면 구인알선정보와 그 밖의 취업지원 정보가 휴대전화문자로 제공됩니다.

상담 담당자 상담사항
상담사항
업무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제출 → 접수 → 검토 → 구인신청 수리 대표자 또는 신청인 직업안정기관 직업안정기관 직업안정기관 210mm× 297mm[백산지(80a/㎡) 또는 좆꼭지(80a/㎡)

작업장소 [ ]실내 [ ]실내 의 [ ]실의  드는 햄 [ ]SKG 이내의 물건을 다른 [ ]SKG 이내의 물 [ ]20KG 이상의 물건을 다른  전거나 걷기 [ ] M가나 같는 작업 기의 없 [ ]일부 서서 하는 작업 [ ]20KG 이상의 물건을 다른  전거나 걷기 [ ] N는고 말하는 작업 기의 없 [ ]일부 서서 하는 작업 [ ]20KG 이상의 물건을 다른  문고 말하기 [ ] 의상적인 활동이 가능한 [ ] 비교적 큰 인쇄물을 뭐 [ ]이주 작은 글씨를 위을  설도 필요			성하여야 하는 사항은 아니나, 작성 비할 수 있습니다.	성하시면 보다 많은 정보가 구직지	(3쪽)
작업환경     [ ] 35kg 이내의 물건을 다름     [ ] 15kg 이상 20kg 이내의 물     [ ] 120kg 이상의 물건을 다름       사거나 건기     [ ] 시서가나 건는 작업 거의 없음     [ ] 12부 서서 하는 작업     [ ] 12랫동안 서거나 건는 작업       등고 말하기     [ ] 1등고 말하는 작업 거의 없음     [ ] 12만한 등고 말하기 필요     [ ] 1등고 말하기 중요       시력     [ ] 1일상적인 활동이 가능한 음을 수 있는 정도 필요     [ ] 10주 작은 글씨를 위을 수 있는 정도 필요       수 작업     [ ] 1를 물품의 조립작업     [ ] 1학은 물품의 조립작업     [ ] 3정밀한 조립작업       양손사용     [ ] 1한손으로 작업     [ ] 1한손으로 보조하는 작업     [ ] 1양손으로 작업       우리넷(http://www.work.go.kr) 공개 여부     [ ] 1 임공개     [ ] 1비공개(비공개 사유:     )			추가 정보	입력 사항	
작업환경 [ ] JMJ나 건는 작업 거의 없 [ ] 일부 서서 하는 작업 [ ] J으랫동안 서거나 건는 작 업 기의 없 [ ] 기간단한 듣고 말하기 필요 [ ] 든고 말하기 중요  시력 [ ] 일상적인 활동이 가능한 전도 필요 수 있는 정도 필요 수 있는		작업장소	[ ]실내	[ ]실내·외	[ ]실외
자업환경 [ ]서거나 걷는 작업 거의 없 [ ]일부 서서 하는 작업 [ ]으랫동안 서거나 걷는 작 업환경 듣고 말하기 [ ]등고 말하는 작업 거의 없 [ ]간단한 듣고 말하기 필요 [ ]등고 말하기 중요 임원 기능한 임원 기능한 임원 기능한 임원 기능 정도 필요 [ ]이주 작은 글씨를 읽을 수 있는 정도 필요 [ ]한손으로 작업 [ ]작은 물품의 조립작업 [ ]장민한 조립작업 [ ]정민한 조립작업 [ ]장인신청서의 위크넷(http://www.work.go.kr) 임원 기공개 [ ]비공개(비공개 사유: 의 기용기 이부 [ ]공개 [ ]비공기(비공개 사유: 의 기용기 이부 [ ]공기 ( ] 비공기(비공기 사유: 의 기용기 이부 [ ] 기공기 ( ] 기용기 ( 의공기 사유: 의 기용기 이부 [ ] 기공기 ( 의공기 사유: 의 기용기 사유: 의 기용기 이부 [ ] 기공기 ( 의공기 사유: 의 기용기 사유: 의 기용기 이부 [ ] 기공기 ( 의공기 ( 의공기 사유: 의 기용기 기용기 기용기 기용기 기용기 기용기 기용기 기용기 기용기 기		드는 힘	[ ]5Kg 이내의 물건을 다름		[ ]20Kg 이상의 물건을 다룸
작업환경 듣고 말하기 [ ] 등고 말하는 작업 거의 없 [ ]간단한 듣고 말하기 필요 [ ] 등고 말하기 중요  시력 [ ]일상적인 활동이 가능한 [ ]비교적 큰 인쇄물을 위 [ ]아주 작은 글씨를 위을 수 있는 정도 필요  손 작업 [ ]큰 물품의 조립작업 [ ]작은 물품의 조립작업 [ ]정밀한 조립작업  양손사용 [ ]한손으로 작업 [ ]한손으로 보조하는 작업 [ ]양손으로 작업  구인신청서의 워크넷(http://www.work.go.kr) 공개 여부		서거나 걷기		Albert State Co. 1979 Help Company (Sec. 2014)	
지덕 정도 필요 을 수 있는 정도 필요 수 있는 정도 필요  손 작업 [ ]큰 물품의 조립작업 [ ]작은 물품의 조립작업 [ ]정밀한 조립작업  양손사용 [ ]한손으로 작업 [ ]한손으로 보조하는 작업 [ ]양손으로 작업  구인신청서의 워크넷(http://www.work.go.kr) 공개 여부 [ ]공개 [ ]비공개(비공개 사유:	작업환경	듣고 말하기	[ ]듣고 말하는 작업 거의 없	[ ]간단한 듣고 말하기 필요	AS CHARLEST MARKET PROPERTY
양손사용 [ ]한손으로 작업 [ ]한손으로 보조하는 작업 [ ]양손으로 작업  구인신청서의 워크넷(http://www.work.go.kr) 공개 여부 [ ]임공개 [ ]비공개(비공개 사유: )		시력			
구인신청서의 워크넷(http://www.work.go.kr) [ ]공개 [ ]비공개(비공개 사유: ) 공개 여부		손 작업	[ ]큰 물품의 조립작업	[ ]작은 물품의 조립작업	[ ]정밀한 조립작업
워크넷(http://www.work.go.kr) [ ]공개 [ ]비공개(비공개 사유: ) 공개 여부		양손사용	[ ]한손으로 작업	[ ]한손으로 보조하는 작업	[ ]양손으로 작업
그 밖의 희망사항		tp://www.wo		]비공개(비공개 사유:	X

# 8. 재산세(주택)과세대장

■ 지병	·세 법	시행	규칙	[별지 제69호	호서식]										
괸	리번			V -7	W.			¥			T	지내시.	태)		
	វ세의	무7	· 면 동 나 ?	1	본번	부번	1	동	<b>호</b> フ	시		배 <u>산세(주</u> 과 <mark>세</mark> 대경		∤성 !호	
	건 달	205	인명	) 주	소				지 분	특일기	1	변동일자	변동사유	н	<b>고</b>
나.	토	1		Ç.		-			e l'			î i	ñ		
납 세 의 무 자	성 명	(법 (	인명	) 주	소	77 50			지 취·	득일지	1	변동일자	변동사유	비	고 
2. ?	물 현	현횡	Ē						2000	00 00		1000	***		2000 000
.ul =1	구조	신 축	취득	본 면	면 ? ! 적	덕(m²		대피소	-	3	가].	증 과 과 감 면 표	과 세 특 례	지역자 시설시	
배 치 번 호	용도	면	축   그   연  일   도   자	지하	00 30		701 - 7	·차고	_ 복층 면적 -	층 수	구	가 코드 코드 명 감	코드 명	72 5	명 고
				공유	면 석		시 ᅙ	사고		1		면적	면적	면적	155.555
		3								1					******
3. <u>!</u>	토지	현	황	7.01 /28 St 17.03	1 10 80 12010		w. e-sx	98 80 Menu 10.	300	7,2	110	776	32	,	40 30
일련 번호	시군-		통리 로번	특 문번 보번 보	지목 공부 현횡	개 별 공 시	적 용 비	면적	중과 코드	감면 코드망	#	과세 특례 코드 코드명	취득일	자	비고
	행정동	E 5	E	호수		지 가	율			적	73.5 V.S	면적	<b>33</b> 73		
										0.0000000	XX 1.00		2.3		
								2		~~~~					
												210 m m × 29	7 m m(보존용	지(1종)	70 g/m²)

4. 변동사항 관	관리					
가. 납세의무?	자 변동					
①건 물						124
성명(법인명)	주소	주민(법인)등록번의	호 지분	취득일자	변동일자 변동	사유 비고
	1		-		\$1 \$1	
②토 지	95 2	0	75 75		225	-20 100
성명(법인명)	주소	주민(법인)등록번:	호 지분	취득일자	변동일자 변동	사유 비고
나. 건물 변동	E	900 (900 Mer) 400 (900 )	ws 00	547 JOH 100 403		00
구조		면적(m²)			중과 과세	지역자원
<u></u> 신	취 본면적	지하대피.		1 17/-	각면 특례 	시설세 변 변
배치 축 번호 _ 연	독 <u>지하면적</u> 일	지상차고	<u>·</u> 복층 면적	과 가 표 코 수 가 드	코드 코드 명	지절제 면 변 코드 동 동 명 일 사 자 유
용도도	자 공유면적	지하차고		<sup> 수</sup>  감		SPERMINE
		97702407364036 F To	37	[	면적 면적	면적
				/		
				/		
<u> </u>	<u>                                     </u>					
Postporae Visio	5 통리 특	3847324	Ť	중과감면	과세특례	i i i
The same of the sa	2003000	지목 개별	적	177	7 7 7	변동 변동
민보	<sup>로번</sup> 부번 <sup>순</sup> 번	공부 현황 지가	용 D 면적 률	프트 명	_   포느   명	일자 사유
행정돔 -	동 호수			면적	면적	
<u> </u>						<u> </u>
ŠS ŠS						
51 65						
8 8						
 라. 주택공시:	<u> </u> 가격 변동		)÷			 (단위: 천원)
연도		7. E			12. E	
 가격	0					7
(주) 본 서식 <u>9</u>	그 의 점선부분은 시	┴─────┴ 장・군수・구청장	이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W Leading Address of the	a may a man	4 2000 2		50800 B 103	

# 9.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人	회보장	급여 관련	련 공통서식	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개정2019.7.1>	1			73	[1 면]
			J	사회보장급	여 신	청(변경)	서				처리기간 별도안내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전화반	호		
신 청			10.					휴대전	화		
인	주소	(실거	주지		주소1)		1.0	전자우	편		
	세대주	) (190	88 88	주민등록번호	동거여부	학력·재학여부	거가사태	취	업상태		전화번호
7	관계		성 명	(외국인등록번호 등)	(미동 <mark>거</mark> 사유)	(학교명/학년반)		직업	직장	낭명	(집/직장)
5 <u>2.</u> 40											
가 족			,								
사 항											
Î.	a utl	0 71	ələli2) ( r	1000 1 1				1707	A T.	-In-3).	
8			관계 <sup>2)</sup> ( [	]법률혼 [ ]		[ ]사실상 이침	롤 ) 2. S	리국여권	소시시	4명~:	т
	3. 국의	기출생:	자명 <sup>4)</sup> :	1 2	4. 복수	├국적지명 <sup>6</sup> :					
ш	수급자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기구	원수	진	선화번호
부흥금	의										
의무	의										
자 6)	의										
	의										
	신청인 <i>관</i> 2		성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н	고(사	유) <sup>7)</sup>
좌		-									
	통지방법	#	[]서	면 [ ] 전자우편	(E-mail)	[ ] 문자메시	지서비스(8	SMS)	[ ] =	기타 (	)
2), 3 4), 5	3) 해당자 5) 아동수	하에 한 수당, 임	함 양육수당 신청	거주지의 주소가 다른 청대상에 한함							
E	배우자,	다만 시	사망한 1촌의	배당자에 한함(부양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마닐 경우 사유를 반드	= 제외)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2 면]					
보장구분	사회보장급여 내용						
기초생활보장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자가 [ ]임차 <sup>8)</sup> [ ]기타 <sup>9)</sup> ) [ ]교육급여	1					
영유아	[ ]양육수당(대상자 이름 : ), ([ ]가정양육수당 [ ]장애아동양육수당 [ ]농어촌양육수당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대상자 이름 : ), [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대상자 이름 : )	<b>!</b> )					
아동수당	[ ]지급대상아동이름: ① ② ③ )						
아돔 · 청소년	①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② 급식(중식)비 ③ 고교학비지원 ④ 교육정보화지원(PC, 인터넷통신비+유해차단서비스) [PC 신청 여부 : [ ]신청 [ ]미신청] [통신사 [ ]KT [ ]SK브로드밴드 [ ]LG U+ [ ]SK 텔레콤 [ ]기타( [인터넷 가입(예정)자 성명 : , 주민번호 : ] * (필수) 본인 관련 정보를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지정 기관(PC * 인터넷통신회사)에 제공 동의[ ]						
 노 인	[ ]기초연금([ ]배우자 동시신청)						
장 애 인	[ ]장애인연금([ ]배우자 동시신청 [ ]차상위 부가급여) [ ]장애수당 [ ]장애아가족양육지원 [ ]장애아동수당 [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한부모 가족	[ ]한부모 가족지원(급여지급, 증명서 발급)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급여지급, 증명서 발급	<del>}</del> )					
기 타 [ ]차상위계층 확인 [ ]차상위 본인부담경갑 [ ]차상위 자활급여 [ ]시설이용·입소 [ ]희망키움통장(II) [ ]타법 의료급여 <sup>10)</sup> ( ) [ ]개발제한구역 거주민 생활비용보조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서비스 의뢰 및 연계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자녀생활서비스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확 인 (√ 체크)					
조 및 제193 2. 활용할 개인경 인적사항 및 의 수혜이력이 관계등록전신 가족은 본인 세, 토지· 등 자료 또는 함)을 통해 3 3. 개인정보 보역 같은 법 제3	접수한 보장기관의 장이「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7 문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정보와 동의요청 범위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재산·근로능력·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정보, 그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 전보(기초생활보장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정보, 영유아 및 한부모, 배우자 및 직계비속 정보, 노인 및 장애인은 본인 및 배우자 정보), 금융·국세·지방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 등 정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 문회 및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유 의 사 항		확 (√ 체	
<ol> <li>장애인연금의 차상위 부가급여를 신청하여 차상위 자격이 확인되었으나, 위탁 심사결과 장시행령 제2조에 해당되지 않는 등록장애인일 경우, 장애인연금 신청일을 장애수당 신청일로 처리하는데다.</li> </ol>		[	]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및 관계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급여 지급 사유가 소 멸한 경우 등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급하여 소	[	]
3.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여부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관계 법률에 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되고,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되거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		[	]
4. 이 신청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으면 거주지, 세대원, 소득·재산상태, 근로능력, 수급연국적발생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해당 급여는 환역으며, 관계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5.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
6.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서비스연계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을 대행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정보소, 연락처, 자격정보 등)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성명, 주	[	]
7. 교육급여를 신청한 경우,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의2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6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 기준 미적용 요건이 향후 변경되는 경우(부양의무자 또는 그 가구원의 기초연금·장애인연금 멸·상실 또는 지급 정지, 장애정도 하향조정 등)에는 같은 법에 따른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 으며, 부양의무자 조사를 위한 서류('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등)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수급권 소  될 수 있	[	]
9.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한 경우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차상위계층 확인, 차상위 본인부담경공 자활급여)을 신청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조사 결과 부적합한 경우, 기초생활보장급여가 전부 증지된 경 련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지원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안내 받는 것니다.	우에는 관	[	]
10.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수급 중 소득이나 재산 등이 변동된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2항에 따라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하는 것에 동의하며, 이 경우 관련 개인정보(수급기양의무자 가구의 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개인정보 활용 동의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합니다. 년	당 <b>공무원으</b> 월 일		부터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_ 0	1)
(배우자 동시신청 시) 배우자 :	(서명 또:		2000
	X 10 - 1		.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교육감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3 면
		안 내 사 항
처 리 기 한	장애 인	학비 생활보장(면장시 60일), 아이돌봄서비스지원(연장시 60일), 기초연금(연장시 60일), [연금(연장시 60일), 청소년특별지원, 아동수당(연장시 60일), 한부모가족(연장시 60일) 등 고 학생 교육비 지원(연장시 90일)
<b>보장구분</b> 기초생활보장		분 해당 법률
		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초·중등교육법, 주거급여법
	영유아	영유아보육법, 아이돌봄지원법
관 계	아동 · 청 <u>·</u>	소년 초·중등교육법, 학교 밖 청소년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아동수당법
법 률	노인	기초연금법
	장애인	장애인연금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한부모가	족 한부모가족지원법
	기타	기초생활보장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개발제한구역법
신	청시 구비서식	추가제출서류
기초생활보징 연금, 초· 학생 교육비 인, 장애인연 부모가족, 7 법의료급여 <sup>1</sup> 발제한구역 용 보조, 차 확인)	증・고 , 장애 소득·재 i급, 한 (별지제1 기타(타 <sup>2)</sup> , 개 금융정보5 생활비 (별지제1	1.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하며,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3. 소득재산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임대차 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4. 건강 진단서(해당자에 한함) 5. 통장계좌번호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6. 수업료 등 납입고지서(학비지원 신청자의 경우에 한함) - 1/4분기 : 수업료납입고지서(신입생인 경우 입학금고지서) - 2/4분기 이후 : 해당학교 재학조회 또는 당해 분기 납입고지서(신규신청) 1호의3서식) - 학원학습비 및 직원훈련비 등 납입고지서 7. 특별청소년지원 신청의 경우, 선정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 밖의 자료(보호자 부재・연락 두절, 학업 증단 등) 8.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대상자 중 자립촉진수당 신청자 - 취업훈련확인서, 취업확인서, 검정고시학원등록증빙자료, 재학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서류 중 하나이상 제출
노인, 아동 기타(차상 <sup>5</sup> 부담 경갑, 키움통장(II)	위본인 소득・재희망 (별지제)	9. 노숙인 확인서 등(해당자에 한함) 10.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의 경우 취업증빙 서류 11. 농어촌양육수당 신청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농업인확인서 12. 희망키움통장(II) 신청의 경우 별지 제13호서식 희망·내일키움통정참여(변경) 신청서 13.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등 임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consistent of the second of th	7 <del>15</del>	레르트바리 제국은 제소속에 레르틱장 연극 구성은 바구된 원드 소급적인
12) 「의료급여	1법」 제3조제 1항제	제5호부터 제7호, 제9호에 해당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

# 10.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 장애인복기	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의2서식] 〈개정 2020, 9, 11,>					
	2	당애인 등록 및 서비	스 신청	ᄉᄉ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고, []이			(4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별도안내			
	성명	여권상 영문성명	-7				
장애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성별 []남 []여				
(본인)	사회보장		휴대 <mark>전화</mark>				
()	[]수급자 []차상위계층	[ ]기타					
	(현)주소		전화번호				
통지방법	□ 서면 □ 전자우편(	) 🗆 문재	에시지서비스(S	MS) □ 기타( )			
법정대리인	성명	장애인(본인)과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보호자	주소	<u> </u>	전화번호				
복지욕구	[ ]직접적 소득(장애인연금 [ ]보육 및 교육		[ ]간접적 소득(감면 등) [ ]건강 및 의료 [ ]고 [ ]문화 및 여가 [ ]안전 및 권익				
국가유공자, 보	훈보상 • 지원대상자로서 상이등	급(1~7급)을 받은 자: [ ]해당 [ ]비해당					
[서비스 신	청]						
	서비스 종류	신청 구분		비고			
[]장애인등록	신청	[]신규 []조정 []재판정					
[]장애인등록	증 발급 신청	[]신규 []재발급		•재발급 사유			
[ ]장애인통합 발급 신청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2 특지카드 [ ] 포함 [ ] 미포 [ ]신용기능[]직불 2	E함 []신규 []재발급 []정보변경	명 [ ]반납	[]기간만료 []훼손 []분실 []기재사항 변경 []신용카드등과 통합된 등록증교부신청			
[](구)고속도	로 통행료 할인 카드	[]정보변경 []반납		- []카드전환( - ) _[]기타			
[]시각장애인	용 점자 스티커	[]신규 []재발급		・반납사유 - [ ]사망 [ ]앙도·증여 [ ]폐차 [ ]등록및			
[]장애인사용	자동차등표지 발급 신청	[ ]신규 [ ]재발급		[]7F			
[]장애인보조	기구 교부(대여·수리) 신청	[]교부 []대여 []수리					
[]장애인활동	지원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 서를 추가로 작성해야 합니다.			
[]거주시설 (	입소	[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 ]장애유	형별 거주시설				
[]저소득 장이	개인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 ] 진단서 발급비 [ ] 검사비					
[감면서비스	느 (대행)신청]			.n. Y			
[ ]휴대전화요금 [ ]초고속인터년		Miles II Italia kanalisi wanazara a	면허세, 등록세	[ ]지역난방비 , 취득세)			
[타기관 서	비스 의뢰]						
[]고용 서비스		[ ]실업급여 [ ]취업성공패키지 [ ]직임 [ ]직업생활 지원(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		업진로상담 [ ]취업지원 및 상담			
[ ]의료 서비스		지역사회중심재활 사업					
		No.	210mm × 29	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4쪽 중 제2쪽)	
[신용카드ㆍ직	불카드와	통합된 장애	인등록증을 발급	라받으려	는 경우]				
카드구분	[]신	용카드 []직불키	년 -						
신청인	[ ]본	인 []법정대	H리인 또는 보호자(본	인과의 관	계:	)			
직 장	직 장	명			부서명				
※직장이 있는	직장주	소				직장	전화번호		
경우만 기자				e e					
대금결제	대금창		[]직장 []전자우편	TOP		)			
3	대금결		U(1일~27일 중에서 (	선택)	- 0717L		시그즈		
자동이체	계좌반	<u>  Y</u>			금융기관		예금주		
신청	직불키	느 신청시 신한은	행 또는 우체국 기재	-	1				
 [장애인등록증	2000	1000 00	20 250 25 2505						
		(		3	첨부				
종전등록증 발급	기판			(동기	l 우편료)				
장애인등록증 수	령방법 [	]신청기관 방문	[ ]주민등록기관 등	방문 [ ]	개인 등기우편	re-			
등기우편 수령 주	우) 소	)							
[장애인사용자	동차표지	발급(재발급	) 및 고속도로	통행료	할민 신청	Ī			
ê .	성명				주민등록번.	호(외국인등록번:	호 또는 국내거소	선고번호)	
운전자	주소				전화번호				
223	ul=inito	ı÷			TIANOTRAL TIAN				
	운전면허번	!오			장애인과의	전세			
	단체 • 시설	!B			사업자등록번호				
단체	소재지			7					
·	(전화번호:	)							
시설	500	10	시설 []노인의료복	지시설					
	대표자 성당	3			주민등록번.	호(외국인등록번:	호 또는 국내거소	신고번호)	
	500 10000	200		-	주민등론비	하(외국이동론버	하 또는 군내거소	시구버ㅎ)	
	소유자 성당	병	- Hele Iolelollotz /	V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자동차			(장애인과의 관계:	1	1.				
	자동차등록	The state of the s	100		차종/차명   용도				
[자네이버지기	No. Company	해기량/승차정원/최대적재량 용도 · 교부(대여·수리) 신청]							
- [공해 근로고기 주거형타		The second second	전세, 월세) []사	설인소	그 밖의 형	태			
희망보조기	No.	[]장애인보조			)				
수리가 필요한 부위 교부(대여 • 수리)상 특별히 회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		
가장 최근에 교부	가장 최근에 교부받은실적 교부년도 종류 교부기					교부년도	종류	교부기관	
 [저소득 장애인	민 진단서	발급비 및 검	사비]	I.		I.	L	R	
신청금액 (지원금액)		Vine VIII		- 120 H 100 H 100 H 100 H	호/금융기관/ 주(관계)				
	제32조제13	항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3조제1항		- 11 W.,	위와 같이 장아	인 등록 및 서	비스를 신청합니다.	
시장•군수•			**************************************				신청인	녀 웜 일	

	(4쪽 중 제3쪽)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진(3.5cm×4.5cm) 1장 ※ 장애인등록증 발급을 위한 사진자료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17세 이상인 경우). (서명 또는 인)					
O Timeles us	2. 장애 정도 심사 시 「국민연금법」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 심사자료,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장애연금의 수급권자 심사자료, 같은 법 제70조에 따른 장애연금액의 변경 등 심사자료를 열람(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서명 또는 인)					
① 장애인등록 신청	3. 국가유공자, 보훈보상·지원대상자로서 상이등급(1~7급)을 받은 경우 국민연금공단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보훈처를 통하여 장애인등 록 등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서명 또는 인)					
	4. 고속도로 할인가능이 있는 복지카드 중 신용(직불)기능이 없는 카드 발급시 발급수수료 4,000원					
	답당 공무원 확인사항 국내거소신고,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혼인신고 증빙서류(재의동포나 외국인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② 장애인등록증 제발급 신청	1. 장애인등록증(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2. 고속도로 할인기능이 있는 복지카드 중 신용(직물)기능이 없는 카드 발급시 발급수수로 4,000원					
③ 장애인사용자동차등 표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재외동포나 외국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시설대여계약서 또는 임차계약서 사본 1부(자동차를 시설대여 받거나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자 발급 신청	답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자동차등록증 2. 국내거소신고,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혼인신고 증명서류(재외동포나 외국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④ 장애인사용자동차등 표 지 재벌급 신청	1. 장애인사용자동차등 표지(잃어버린 경우에는 제외하며, 회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 또는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③ 저소득 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신청	1. 수급자의 복지계좌 동장사본 1부 2. 진단서 발급비·검사비 영수증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항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서비스 수급희망 이력제 사전신청

본인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8조의 2항, 「장애인연금」제10조의2에 따라 장애인 복지 서비스 수급 회망자로서 서비스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확인 받기 위한 서비스 이력관리를 사전 신청합니다.

시청이

(서명 또는 인)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 요청 동의서

본인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장애 정도 확인 등을 위하여 심사자로 보완 등 필요한 경우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본인에 대한 진료기록 자료, 검사결과 자료 등 진료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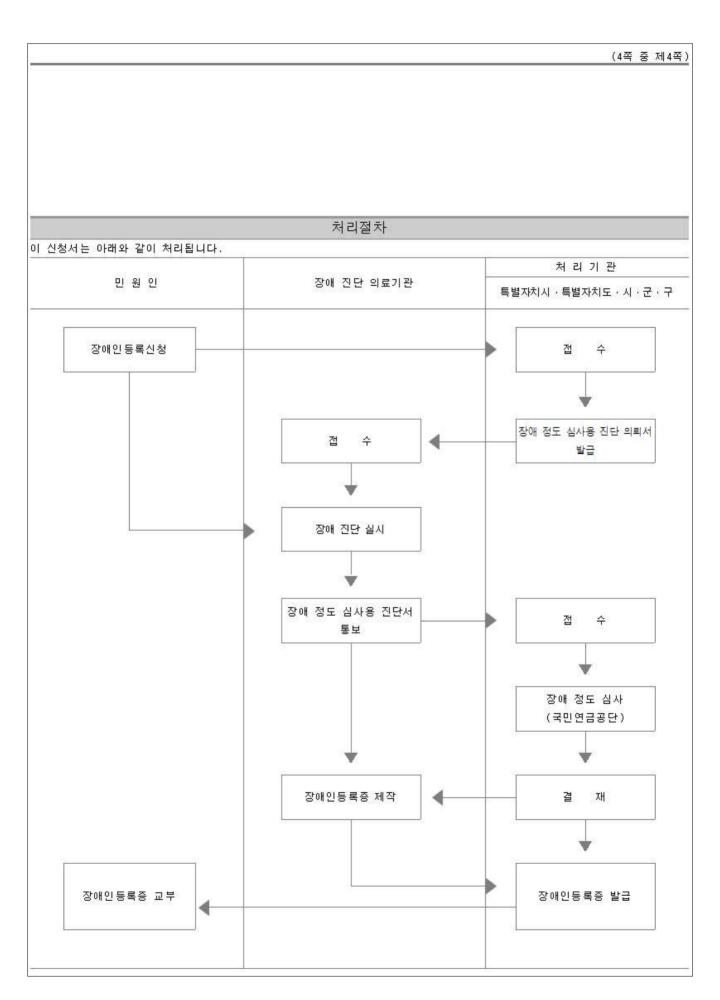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 안내 및 동의사항

- 1. 처리기간은 신청한 서비스에 따라 상이합니다
- 2. 장애인등록 신청 또는 장애인등록증 재벌급 신청시 자동이체를 신청하는 경우 자동이체 금융기관의 계작번호가 표시된 통장의 사본을 제출하기 바랍니다.
- 3. 차량교체 시 재발급사유 중 기재사항 변경 란에 √표시하고 자동차 기재란에 새로 취득한 차량정보를 기재합니다.
- 4. 장애인등록증 수령방법 관련
  - 가. "방문 수령"을 선택한 경우에는 신청 후 2개월 이내 장애인등록증을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 나. "동기우편 수령"을 선택한 경우에는 신청시 동기우편료를 납부해야 하며, 반송 처리되는 경우 이에 대한 우편료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지자체별 상이)
  - 다. "통기우편 수렴"을 선택한 경우에는 "통기우편 수렴 주소"란에 적은 주소로 발송한 장애인등록증을 신청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대리 수렴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발급 기관은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5. 정애인등록증 재발급 신청 및 처리에 관하여 등기발송을 신청한 경우에는 등기우편료를 납부하고 기존 장애인등록증을 반납(분실 재발급의 경우는 제외합니다)해야 가능하며, 등기 발송시 반송지는 신청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 6. 장애인등록증 전국재발급 처리를 위해 신청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본인의 장애인 등록정보 등 장애인등록증 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7. 본인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이 복지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감면서비스 등의 신청을 접수(대형)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8. 본인은 장기이식을 받은 경우 담당 공무원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를 통하여 장기이식 관련정보(이식장기, 이식일, 이식기관 등 장애 정도 조정 에 필요한 정보)를 조희·제공·이용 및 장애 정도 조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11. 사망신고서

[이날시]	٦٦) ٦	$\cap$	-E-
- F231	ALI I	м.	0

[상:	끡 제19.	요.]					9									
(	사도	ያ <del>}</del> Έ	10.000	고 월	서 일	!)	1.52			시 뒷 표(○)'트	Commission of the	1-100-700			하고,	선택항
	,1 ml	800	*한글	(3)	/ (명)				성	별	*주5	민 <del>등록</del>				Ï
	성명		한자	(4)	/ (명)			į	1남	<b>2</b> 여	번	호		Ĭ.	5:35	
WEST S	등록기준	지								,						
① 사	- l *스스 - l							세대주-관계 의								
망 자	*사망일/	시 년 월 일 시 분(사망지 시각: 24시각제로 기재)														
^r		8	장소													
	*사망장 <u>-</u>		구분	1 3 4 3 7 4 10기	공공시 : 산업장	설(학:	길 의. 교, 운 ⑧ 농	동장	등)	5 도	로 [	6 상임	너 사비	강로원,  스시설( 병원 이	(상점, 3	호텔 등)
207	타사항								5			63.				
	*성명		®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③ 신	*자격	1	1동거친족 21비동거친족 31동거자 *관계													
③신고인	7.01-3	4	4]기타(보호시설장/사망장소관리자 등)													
,,,,,,,,,,,,,,,,,,,,,,,,,,,,,,,,,,,,,,,	주소									*전회			0]	메일		
<b>④</b> ۶	세출인	샹	성 명							주민.	등록	번호	Ñ.A.	58	8	Ŷ
※ 타인	FD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실제와 다른 사실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실제와 다른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u>형법에 의하여 처벌</u>받을 수 있습니다. <u>눈표(\*)로 표시한 자료</u>는 국가통계작성을 위해 통계청에 서도 수집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 아래 사항은 「동계법」 제24조의2에 의하여 동계청에서 하는 인구동향조사입니다. 「통계법」제32조 및 제33조에 의하여 성실응답의무가 있으며 개인의 비밀사항이 철저히 보호되므로 사실대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서류 및 시망자의 국적과 혼인상태는 국가통계작성을 위해 통계청에서도 수집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 인구동향조사

		□ 학력 없음	2 초등학교	<u>3</u> 중학교	④ 고등학교	5 대학(교)	⑤ 대학원	이상
④ 혼인상	태	<u>미</u> 미혼	② 배우자 있	음 3	이혼 4	] 사별		

※ 아래사항은 신고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읍면동접수	가족관계등록관서 송부	가족관계등록관서 접수 및 처리
	년 월 일(인)	

## 작 성 방 법

※ 사망신고서는 1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사 망 자

- · 등록기준지: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 · 주민등록번호: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 일)를 기재합니다.
- ·사망일시 : <예시> 오후 2시 30분(×) → 14시 30분(○), 밤 12시 30분(×) → 다음날 0시 30분(○)
-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 현지 사망시각을 서기 및 태양력으로 기재하되, 서머타임 실시기간 중 사망하였다면 사망지 시간 옆에 "(서머타임 책용)"이라고 표시합니다.
- ·사망장소 구분 : ① 주택은 사망장소가 사망자의 집이거나 부모친척 등의 집에서 사망한 경우를 포함 ⑩ 기타는 예시 외에 비행기, 선박, 기차 등 기타 장소에 해당되는 경우
- ·사망장소의 기재는 최소 행정구역의 명칭(시·구의 '동', 읍면의 '리') 또는 도로명주소의 '도로명' 까지만 기재하여도 됩니다.
- ② 기타사항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미첨부시 그 사유 등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히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 ③ 신 고인
- · 자격란에는 해당항목에 '영표(○)'로 표시하되 ④ 기타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자 등이 포함됩니다.
- ④ 제출인
- ·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 ※ 아래 사항은 「통계법」 제24조의2에 의하여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인구동향조사**입니다.
- ① 최 종졸업학교
- ·사망자의 최종 졸업학교는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모든 정규기관을 기준으로 기재하되, 각급 학교의 재학(중퇴)자는 졸업한 최종학교의 해당 번호에 '영표(○)'로 표시를 합니다. 〈예시〉 대학교 3학년 재학(중퇴) → ④ 고등학교에 '영표(○)'로 표시

## 첨 부 서 류

- 1. 사망자에 대한 진단서나 검안서 1부.
- 2. 사망의 자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을 때): 아래 중 1부.
  - ①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 예시 : 관공서의 사망증명서 또는 매장인허증,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문, 정부기록보관소 보존중인 재무부 작성의 피수용자사망자연명부, 외국 관공서 등에서 발행한 그 나라 방식에 의해 사망신고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 ② 군인이 전투 그 밖의 사변으로 사망한 경우에 부대장 등이 사망 사실을 확인하여 그 명의로 작성한 전사확인서
  - ③ 기타 : 증명서(가족관계등록예규 제505호 별지 양식)
  - 증명인이 동·리·통장일 경우 : 1명의 증명으로 족하고, 원칙적으로 동·리·통장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 부하여야 합니다.
  - 증명인이 인우인일 경우 : 2명 이상의 증명이 있어야 하고, 증명인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사본, 운전면허증사본, 여권사본, 공무원증사본 중 1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 아래 3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 3.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1통.
- 4.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3호에 의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4항의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 야 합니다.
- 5. 사망자가 외국인인 경우 :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 ※재산상속 한정승인, 포기 안내

- \*이 안내는 사망신고와는 관계가 없는 내용 입니다. 자세한 내용 은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민원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 의 의 : 한정승인 상속인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을 승인하는 것.
  - : 포기 상속재산에 속한 모든 권리의무의 승계를 포기하는 것.
- 2. 방 식 : 한정승인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
  - : 포기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합니다.
- 3. 신고기간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민법 제1019조제1항)
  - :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민법 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 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 4. 관 할 : 상속개시지[피상속인의 (최후)주소지]관할 법원